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1. 강화도조약과 개항
- 2. 개항 초기의 조청관계
- 3. 조미조약의 체결
- 4. 유럽 각국과의 조약체결
- 5. 개항의 역사적 의의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1. 강화도조약과 개항

19세기 중엽 동아시아지역에서 자본주의 열강들의 시장개방 요구는 무력 전쟁으로 이어졌고, 청국과 일본은 각기 1842년과 1854년 이에 굴복하여 통 상조약을 체결하고 국내시장을 개방하였다. 1866년과 1871년 프랑스와 미국 은 포함과 상륙부대를 앞세워 수도 서울의 관문인 강화도를 점령하고 조선 에 대해서도 개방을 요구하였다. 조선정부는 프랑스와 미국의 무력도발로 다 수의 사상자와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오히려 자본주의 세력의 막강한 힘을 전쟁에서 뼈저리게 겪은 직후 "서양 오랑캐의 침략에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은 화의하는 것이며, 화의 를 주장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척화비를 전국 군현 에 건립함으로써 정부의 반개방의지를 천명하였다. 그 결과 조선은 그때까지 지구상에서 자본주의 시장권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지 않았던 유일한 지역이 되었다.

최근의 연구들은 조선이 개항을 결정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메이지유신 (明治維新) 이후 일본의 조선에 대한 개방압력과 조선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외교적인 후원자였던 청의 권고 등 외부의 영향과 함께 이후 고종 친정 이후 집권관료층 가운데 주체적으로 개항을 주장하였던 세력의 존재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 글은 조선정부가 대외정책을 쇄국에서 개방으로 전환하기까지의 시기에 집권세력의 대외인식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와 그들의 집권세력화과정이 어떻게 맞물리면서 실제 대외정책의 변화로 연결되는가 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1)

¹⁾ 이 글을 쓰는 데 참고하였던 주요 연구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서구 열강의 문호개방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였던 조선을 우회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체제에 편입시켰던 세력은 동일 문명권의 인접국가 일본이었다. 또한 조선은 자본주의 시장체제에 편입된 뒤에도 개방의 양상이 청국과 일본과는 다른 경로를 밟았다. 즉 청국과 일본이 서구 열강들 가운데 특정의 국가와의 조약을 체결한 뒤 곧 바로 다른 국가와도 이에 준하는 조약체제를 수용하여 국내시장을 전면적인 개방하였던 사실과 달리 조선은 상당기간 문호개방을 거부하였다. 조선이 서구자본주의 열강에 대한 개방을 시도한 것은 일본과 조약을 맺은 지 6년이 지난 다음이었고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은 이후에도 서구 각국에 대하여 전면적인 개방을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후반 선진자본주의 세력들이 이미 동아시아 지역에 진출하여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들의 세력권확장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였던 상황에서 조선의 이와 같은 외교적인 자세는 기존의 세력판도 변화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다.

1) 조약체결 전의 국내외정세

19세기 후반 조선에 대한 서구세력의 개방 압력은 주체와 계기, 그리고 시기적으로 동아시아지역의 청국·일본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아울러 상이한점이 있었다. 조선 연근해에 서양 선박들이 출현했던 시기는 인접국가와 동일한 시기였다. 18세기 중엽 이후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상인들은 중국의 廣東지역과 일본의 나가사키(長崎)에 교역근거지를 확보한 이래 교역활동을 계속하였으나, 조선왕조는 이들과의 접촉을 금지하였다. 조선에 대한 서

田保橋潔、《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下(朝鮮總督府 中樞院, 1940).

李瑄根、《韓國史》最近世篇(震檀學會, 乙酉文化社, 1961).

彭澤周、《明治初期日韓淸關係の研究》(塙書房、1969).

Martina Deuchler, 《Confucian Gentlemen and Barbarian Envoys》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7).

崔永禧,〈江華島條約의 締結과 그 影響〉(《한국사》16, 국사편찬위원회, 1981).

李光麟、《韓國史講座》V 近代篇(一潮閣. 1981).

金基赫,〈江華島條約의 歷史的 背景과 國際的 環境〉(《國史館論叢》25, 國史編纂委員會, 1991).

金敬泰,《근대한국의 민족운동과 그 사상》(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原田環,《朝鮮の開國と近代化》(溪水社, 1997).

구의 직접적인 통상개방 요구는 1832년 영국의 동인도회사 소속 상선 로오드 앰허스트(Lord Amherst)호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로오드 앰허스트호가 조선에 대하여 통상을 요구하였던 1832년이라는 시점은 영국정부가 동인도회사의 대중국무역 독점권을 폐지하고 중국시장의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던 시기였다. 이 시기 영국산업자본주의 세력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전개하였던 시장개방 압력의 대상에 조선도 예외일 수는 없던 것이다. 즉 조선에 대한 자본주의 열강의 개방요구는 중국 및 일본시장에 대한 개방요구와 동일한 시기에 시도되었다.

그러나 청국과 일본이 이들의 무력행사에 굴복하여 각기 1842년과 1854년 불평등조약체제를 수용함으로써 국내 시장을 개방하였으나 조선은 다른 경로를 밟기 시작하였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인접지역의 국가와 달리조선에 대한 서양의 결정적인 개방 압력은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1866년과 1871년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선에 대한 개방요구는 병인·신미년(1866~1871) 간의 미국과 프랑스의 무력도발로 시작되었으나, 실제 개항은 조일수호조규(1876) 이후에도 공식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과 1883년 조영수호조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구미자본주의 열강에 대해 조선시장을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조선에 대해 개항과 통상을 요구하였던 세력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로 이 지역에서 세계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영국이 아니라, 1830년대 내지 1840년대 국내산업혁명을 경험하였던 후발자본주의 국가 프 랑스와 미국이었고, 조선을 자본주의 시장체제에 강제적으로 편입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동일문명권내의 인접국 일본이었다.

조선이 강화도조약체결을 통해 개항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는 첫째, 청정부의 권고 및 운요호(雲揚號)사건 이후 일본의 개항 요구 등 외부로부터의 요구와 둘째,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경험하면서 국내 지식인과 관료 가운데 개항과 통상을 주장하는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개항의 배경으로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대조선정책을 먼저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선내 이른바 개항론자들의 대외인식의 변화과정과 조선정부의 대응을 다루고자 한다.

(1) 메이지유신과 일본의 조선정책

메이지유신 이후 강화도조약 체결까지 조·일간의 외교관계의 전개과정은 대체로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조일간의 외교창구가 전통적인 통로 즉 쓰시마번(對馬蕃)을 매개로 이루어지던 시기(1868~1870), 두 번째로는 메이지정부가 국내체제의 정비과정에서 조선과의 교섭사무를 중앙의외무성 관할로 흡수하면서 외무성의 관료가 파견되어 교섭을 추진하였던 시기(1870~1873), 끝으로 조선에서 대원군이 물러나고, 운요호사건을 거쳐 조약을 체결하였던 시기(1874~1876)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토쿠가와(德川)막부는 열강의 무력시위에 굴복하여 1854년 화친조약을, 1858년에는 미국·네덜란드·러시아·영국·프랑스와 각기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의 주요내용은 영사·공사의 교환과 내지여행권, 카나카와(神奈川)·나가사키·니이카타(新潟)·효고(兵庫)·시모타(下田) 등 5개 항구의 개방, 도쿄(東京)·오사카(大阪) 지역에서 외국인의 상업활동 허용, 외국인 거주권·임차권인정, 개항장에서의 자유무역과 협정관세, 아편무역금지, 화폐교환규정 등을 설정하고, 외국인의 유보규정 폐지와 영사재판권 등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열강은 일본에서의 자유무역을 규제하는 조항을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종속적으로 편입되었던 것이었다.2)

이와 같이 막부가 열강의 무력시위에 굴복하여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자 굴욕외교를 비판하면서 막부와 대립해왔던 사츠마(薩摩)·쵸슈(長州) 연합세력은 攘夷를 기치로 그들의 세력기반을 확장해 나갔다. 막부의 지방영주에 대한 통제력 약화와 국내 불안을 계기로 반막부세력은 마침내 1867년 12월 23일 尊王攘夷를 내걸고 쿠데타로 왕정복고(메이지유신)를 선언하였다. '洋夷'를 내세운 유신정변에 대하여 막부는 1868년 1월 10일 영국·프랑스·미국·네덜란드·이탈리아·프러시아 6개국 대표와의 회담에서 정변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기존의 조약체제 준수를 약속하면서 열강의 지지를 호소하였으며,이에 각국 대표 또한 막부가 정통정권임을 인정하였다. 이어 17일 막부는 미

²⁾ 宮地正人,《國際政治下の近代日本》(山川出版社, 1987), 20~26\.

국 공사관원 포트만에게 에도(江戶)-요코하마(橫浜)간 철도부설권을 주었다. 막부와 천황정권의 대립은 곧 전국적인 내전으로 확대되었다(戊辰戰爭).

내전 초기 양이를 기치로 봉기하였던 유신정권은 열강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1월 17일 불평등조약체제의 유지를 보장함으로써 외국과의 화친을 국내외에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열강은 자국민의 보호와 내전 이후자국의 이익 확보를 위해 국외중립을 선언하여 불간섭의 자세를 취하였다.

이 시기 구미열강은 과격한 수단에 의한 개국과 자유무역의 강제가 상대 국 국내의 혼란과 기존정권의 약체화를 초래하여 무역의 확대를 저해하는 무정부상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세계 각 지역에서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열강이 취한 외교정책의 기본방침은 국내세력 중 대 외강경파의 반발이 강할 때에는 압도적인 무력으로 강경 대처하되,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존정권에 대해서는 정권의 존립을 지원하는 것이 었다. 만약 기존 정권의 유지가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정권을 비폭 력적으로 위로부터 조기에 수립시키도록 하는 것이었다.

내전에서 천황세력이 전세를 유리하게 끌어가는 가운데 신정부는 1868년 3월 막부체제 하에서 조선외교를 담당하던 쓰시마번의 특별한 권익과 지위를 인정하고 신정부 하에서도 조선외교를 위임할 것임을 통고하였다. 신정부는 쓰시마번으로 하여금 일차적으로 조선정부에 대하여 천황정권의 성립과신정부가 외교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통고하도록 명령하였다. 쓰시마번으로서는 신정부의 명령이 도착하기 이전부터 조선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쓰시마번은 왕정복고 통고가 조·일간의새로운 외교관계의 시작이라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외교담당관과상의하여 왕정복고를 알리는 외교문서의 원안을 작성하였다.

쓰시마번으로서는 특히 조선정부로부터 받아 사용하였던 圖書의 변경 등을 조선정부가 승인하리라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쓰시마번은 조선국 담당관리의 양해를 얻기 위하여 정식 사절(大修大差使)의 파견에 앞서 선발관원(幹事裁判)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간사재 판이 전달할 외교문서는 신정부와 협의하여 작성하였던 大修大差使 서계의 원안에 덧붙여 가까운 시일내 정식 사절을 파견하여 왕정복고를 통지한다는

사실과 외교문서에는 신정부가 수여한 新印을 사용한다는 점을 미리 알리는 것이었다.

간사관 가와모토 큐자에몬(川本九左衛門)가 1868년 9월 29일 조선을 향해출발하였다. 정식 사절 히구치 테츠시로(樋口鐵四郎) 일행은 12월 19일 초량 왜관에 도착하였고, 이에 앞서 문정을 위해 입관한 동래부 왜학훈도 安東晙에게 가와모토는 재판서계 등본을 제시하고 왕정복고와 이에 대한 통지를 위한 대수대차사의 파견, 그리고 신인 날인의 이유 등을 설명하였다. 서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日本國 左近衛小將對馬守 平朝臣義達

呈書 朝鮮國 禮曹參議公 閤下

아뢰을 바는 우리 나라의 시세가 크게 바뀌어서 정권이 황실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귀국과의 隣宜를 굳게 하는 데에도 크게 기뻐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머지않아 別使를 보내어 그 전말을 具陳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갖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토(京都)에서 조정으로부터 勅命을 받아 특별히상을 받고 작위를 올려 받아 좌근위소장으로 進官하였습니다. 거기에 또한 교 린의 직을 영원토록 담당하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證明印記를 받았으니, 요컨대 양국 교제는 더욱 誠信을 두터이 하고 영원히 변함이 없도록 하라는 叡慮(천황의 뜻)이니 은혜가 지극합니다. 이번 서한에는 특히 신인을 찍어 조정에 성의를 표합니다. 귀국 역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圖書를 받아 (교제를 해) 온 것은 후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특명이니 어찌 以私害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 뜻이 이와 같습니다. 귀조가 다행이 이를 체량하시길 깊이 바라는 바입니다(《日本外交文書》1권, 690쪽).3)

조선측 접대관인 동래부 왜학훈도 안동준은 '황실'·'봉칙' 등 종래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와 함께, 전통적으로 교역에 사용하였던 조선으로부터 받은 도서를 무단으로 폐지한 것 등은 외교 격식에 어긋나는 사실임을 들어 접수를 거부하였다. 왜관의 관수와 간사관은 거듭하여 일본국내의 정치상황을 설명하고 서계의 접수을 요청하였으나 훈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³⁾ 玄明喆, 〈개항전 한·일 관계의 변화에 대한 고찰〉(《國史館論叢》72, 國史編纂 委員會, 1996)에서 재인용.

간사재판이 왜학훈도를 면접하였던 다음날 대수대차사가 왜관에 도착하였다. 같은 달 21일 대수대차사 히구치는 간사관이 언급하였던 일본국내의 사정을 설명하고 선례에 따라 대수대차사를 위한 접위관과 차비역관의 파견과 연향설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훈도는 대수대차사는 규외의 것이며, 또 서계 내용 중 위격의 문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즉각 귀환을 요구하였다.4)

동래부의 외교문서 접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은 외교문서의 접수와 회답을 거듭 요청하였다. 쓰시마번주의 거듭되는 서계접수 요청에 2월 7일 훈도 안동준은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대개 귀국과 폐방이 교호한 이래 義理가 형제의 孔懷와 같고 信義가 강산이 帶礪한 것과 같아서 왜관을 설치하여 서로 交隣하는 데 힘쓰니. 진실로 이는 大經이요 大法이다. 이후 300년 간 어찌 조금이라도 경법상에 소홀한 점이 있 었는가. 이는 비단 위에서 행했을 뿐만 아니라 밑에서 본받는 것도 역시 그러 하여, 양국에서 主幹하고 斡施하는 사람들이 經法을 服膺하여 전에 닦은 것에 서 어긋남이 없으니. 오늘날 그 직을 맡고 그 일을 장악하는 사람이 이를 버리 고 무엇을 구하겠는가. 그런데 지금 순부된 서계가 왜관에 도착한 후 여러 달 동안 수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자면 서계의 왕복은 매우 소 중한 일이며, 대격식에 非違하지 않는다면 왜 지체하여 봉납하지 않겠는가. 貴 船이 온 것을 조정에 전달하고 또 가져온 서계도 역시 당연히 南宮(예조)에 올려보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먼저 살펴보았는데, 외면상 직함이 전과 다르고, 비록 승진하였다는 것을 안다고 하여도 姓字 밑에 朝臣이라는 두 글자를 붙이는 것은 무슨 格例인가, 이를 따라서 회답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 지만, 아마 각국에서 듣고 조롱할 것이다. 이는 오히려 두 번째 문제이다. 또 서계 문자에 격외의 단어가 많고. 심지어는 以私害公이라는 말과 그리고 우리 나라가 鑄送한 圖書를 還納한다는 說에 이르러서는 不覺 중에 입이 열려서 다 물어지지 않고 혀가 올라가서 내려 오지를 않는다. 당초에 주송해 주기를 청한 것은 貴方이며 우리 나라가 총애하여 내려준 것인데 갑자기 변개하여 새로 주 조한 新印을 찍도록 요구하는 것이 과연 舊章을 따르고 隣好를 두텁게 하는 뜻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모두 봉출할 수 없는 大旨이다. 그러므로 일찍 이 동래부와 부산 양 사또께 이미 아뢰어 來船 啓聞 중에 거론한바, 回下한 것 을 삼가 보니 '퇴각시킴이 가하다'는 가르치심 말씀 뿐만 아니라 다시 번거롭

⁴⁾ 田保橋潔, 앞의 책, 상, 150~156쪽.

게 하지 말라는 책망이 있었다. 우리들은 정상이 황공하여 대죄하여도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왜관의 여러분께 말하니 마땅히 이 사정을 費州(대마주)에 통고하여 갑자기 新印을 찍어서 무한한 공한을 만들어 다만 事面을 손상하는 일이 없기를 깊이 바라는 바이다. 1869년 2월 후도.5)

전통적으로 조선의 대일외교 창구였던 동래부와 왜학훈도의 입장에서는 구래의 예를 벗어나는 서계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왜학훈도의 회답에서 드러난 것처럼 조선의 입장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쓰시마 영주의 직함이 다른 점,'朝臣'·'皇'·'勅'등 일본왕을 황제의 예로 전제한 용어, 그리고 종래 일본측의 요구에 의하여 무역과 외교에 사용하였던 확인 인장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점 등이었다.

메이지유신 이후 강화조약 체결시까지 양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었던 이른바 '서계문제'는 서계의 내용과 표현 가운데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때때로 외교적 분쟁의 핵심부분이 달라질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위와 같은 점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쓰시마의 거듭되는 서계접수 요청에 동래부는 조정에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고, 동래부의 장계를 받은 조정은 중신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고 종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하고 처리하였다.

의정부가 아뢰기를 "방금 동래부사 정현덕의 장계를 접해보니, '훈도와 별제 등의 수본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말하기를, 대마도주 평의달의 서계 가운데, 좌근위소장이라고 써서 보낸 것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끌어댈 만한 사례가 있다고 하겠으나, 평자 아래 조신이라는 두 글자는 일찍이 없었던 일로 격례에 크게 어긋난다. 통역을 맡고 있는 무리들로 하여금 책임있게 타일러서 다시 수정하여 올리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관직의 명칭이 이전과 다르니 이미 일정한 법식과 예가 아닙니다. 3백년 간이나 약속해 온 본래의 취지가 어찌 일찍이이와 같은 것이었겠습니까. 특별히 말로 타일러서 깨우쳐 주어 서계를 다시 수정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承政院日記》, 고종 6년 12월 3일).

1869년의 시점에서 메이지 신정권의 외교문서에 대한 동래부와 왜학훈도

⁵⁾ 玄明喆, 앞의 글, 250쪽에서 재인용.

의 입장과 의정부를 비롯한 집권세력, 그리고 국왕 고종의 대일외교자세는 서계의 접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사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 한 채 장기화되고 있었다.

1869년 6월 27일 천황정부군이 하코다테(箱館)를 점령함으로써 천황정부에 의한 일본의 정치적 통일은 일단 완성되었다. 7월 25일 천황은 제번의 版籍奉還을 받아들여, 藩主를 藩知事에 임명하고 정부에 의한 권력집중을 한층 강화시켰다.6) 태정관은 10월 28일 이즈하라(嚴原)번지사 소 요시아키라(宗義達)에게 이후 조선교제는 외무성이 직접 관할하므로, 쓰시마번이 조선에 사절을 파견하지 않도록 명령하였다. 이로써 쓰시마가 가지고 있었던 대조선외교의 특권은 박탈되었고, 외교는 중앙정부의 관할로 들어갔다.

천황정부는 1870년 1월 7일 外務省出任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外務少錄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등을 조선에 파견하였다. 유신정부의 외무성 관리로 서는 처음으로 조선에 파견된 이들은 부산에 도착한 뒤 자신들을 서계수리 를 독촉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관리라고 설명하고 그간의 경위에 대한 설명 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동래부 왜학훈도 안동준은 동래부사와 협의하여 대수 대차사 척퇴가 조정의 뜻임을 확실히 하였다. 이리하여 이들은 1868년 12월 에 쓰시마주를 통해 파견한 사신에 대하여 조선정부가 최종적으로 거절한 것을 확인하고 외무대신에게 보고하였다.7) 조선정부의 서계거부에 대하여 일본 조야에서는 이른바 征韓論이 비등하였다. 사다와 모리야마는 귀국 후 복명서에서 천황정부가 무력을 배경으로 직접 사절을 파견할 것을 건의하였 다. 특히 사다는 50일만에 약 30개 대대 병력으로 조선정복이 가능하다고 주 장함으로써 幕末과 유신내전(戊辰戰爭)기의 정한론이 일본정부 내외에서 다시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다.

⁶⁾ 메이지정부는 8월 15일 '정부령'을 공부하여 중앙정부 관제를 혁신하였다. 그것 은 겉으로는 복고적이고 신권적인 색채를 따는 것으로 백관의 위에 신기관을 두고 별도로 대정을 통리하는 태정관을 설치하였다. 태정관의 밑에 민부・대 장・병부・형부・궁내・외무의 6성을 두었다. 이 때 처음으로 외무성이란 명칭 이 생겼다.

^{7)《}日本外交文書》3권〈朝鮮國交際始末〉동 88호 부속서 1·2·3, 131~143쪽 참조.

사절단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외무성은 교착 상태에 빠진 조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안을 마련하였다. 즉 제1안은 조선과 단교하여 사태를 방임한다는 斷交論이었다. 그러나 이 안을 실행에 옮길경우의 문제점은 러시아가 조선을 합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제2안은 '皇使'를 파견하여 '開港開市兩國往來自由'를 보장하는 조약 체결을 요구하며, 조선측이 거절할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한다는 안, 제3안은 對淸交涉先行論으로, 조선과의 수교에 앞서 청국과 대등한 관계를 구축한 다음 조선과 교섭한다는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안이었다. 8) 청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체결한 다음 일본이 조선에 대하여 개항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 거절하면 전쟁을 일으켜도 청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메이지 정부 성립 초기의 대조선정책은 위와 같은 이른바 사절과견을 통한 직접교섭론과 무력정한론, 그리고 청국과의 교섭을 선행시키는 우회안 등이 각 시기 정부내 여러 세력의 정치적 위상과 맞물리면서 시도되었다.

위의 세 가지 정책안 가운데 특히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1871년 당시에 이미 조선과의 교섭 목적이 국교 재개라는 한정된 것이 아니었고, 개항과 개시 및 일본인의 자유 왕래를 요구하는 조약이었다는 점이다. 서계를 문제삼던 당시 조선의 입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외교문서의 형식과 격식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던 조선의 태도와 비교하면, 일본의 대조선외교의 목표와 해결방안은 대단히 구체적이었고 다양한 접근방법을 구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73년 일본정부는 외무성 7등 出仕 히로츠 히로유키(廣津弘信)를 조선주재 외교관으로 임명하고, 부산의 왜관을 일본공관으로 이름을 바꾸어 조선외교를 완전히 외무성 관할 하에 두었다. 쓰시마번 소속의 관원과 한정된 상인의 근거지였던 왜관을 중앙정부가 관할하게 되면서 쓰시마상인이 아닌 도쿄의 상인이 공공연히 무역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정부는 쓰시마상인이아닌 상인의 불법적인 상행위와 밀무역을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통고하였

^{8)《}日本外交文書》3권 89호, 144~145쪽.

⁹⁾ 高橋秀直、〈維新政府の朝鮮政策と木戸孝允〉(《人文論集》, 26-1·2, 神戸商科大學, 1990), 93~94\,

다. 일본정부는 동래부가 왜관 앞에 게시한 방문의 내용 중 일본을 '무법지 국'으로 표현한 점 등을 들어 강경한 대응책을 모색하였다.10)

일본정부내에서는 이를 기회로 무력으로 조선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강경론이 비등하였다. 각의에서 太政大臣 산죠 사네도미(三條實美)는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파병을 제안하였는데, 參義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는 먼저사절을 파견하여 교섭하되, 교섭이 결렬될 경우 곧바로 개전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만약 파견된 사절이 조선에서 '폭살'이라도 당한다면 천하의 인심이 이에 집중하여 유신정부에 대한 국내 사족과 농민의 반감을 밖으로 돌릴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이라고 파악하였다.11)

각의는 8월 17일 사이고를 조선에 파견할 대사로 결정하여 천황의 재가를 얻었다. 다만 출발은 당시 메이지정부의 중심 세력이었던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등이 서구열강들과의 불평등조약 개정의 예비교섭 및 문물제도 시찰을 위해 구미에 파견 중이었던 관계로 이들의 귀국 이후로 미루었다. 9월 13일 1년 10개월 만에 귀국한 이와쿠라・오쿠보 등은 사이고의 征韓策이 성공할 경우 자파의 정치적 위상 약화를 우려하여 정한책에 제동을 걸었다. 外遊派의 중심인물이었던 이와쿠라는 樺太優先解決論을, 오쿠보는 內治優先論을 내세워 사이고의 조선파견에 반대하였다. 이와쿠라와・오쿠보 등은 정치 공작 끝에 천황의 동의를 얻어 정한책을 물리쳤고, 이에 정한론을 주장하였던 사이고 이하 참의 소에지마(副島種臣)・이타카키(板垣退助)・에토(江藤新平)・고토(後藤象二郎) 등은 일제히 사직하였다. 조선문제는 정부 내의 파벌 대립과 얽혀, 마침내 메이지정부의 정변으로 비화하였던 것이다.12)

^{10)《}日本外交文書》6권 282-283〈일본상인 조선무역에 대한 취체방법에 관한 초량 공관수문장에 대한 전령서〉. 이른바 정한론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이 '전령서' 의 실재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측 관련사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의 문이 제기되고 있다.

李瑄根, 앞의 책, 332~334쪽.

^{11) 《}大西郷全集》 2권 754~756쪽, 1873년 8월 17일자 板垣退助 앞 西郷隆盛 서간 (田村貞雄、〈「征韓論」政變の史料批判〉(《歷史學研究》 615, 1991, 19쪽 재인용).

¹²⁾ 藤村道生、〈征韓論爭における外因と內因〉(《國際政治》37, 1967. 日本外交史の諸 問題3;毛利敏彦、《明治六年の政變研究》 일본정부가 征韓 정책 대신 주장된 화

(2) 고종친정과 대외정책

정한론을 둘러싼 메이지정부의 분열이 있은 지 약 한 달 후. 조선에서도 집권세력이 교체되는 큰 정치적 변동이 있었다. 고종은 1873년 10월 崔益鉉 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임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익혀은 동부승지를 사직하 는 상소에서 "현재 나라 일이 페단 없는 곳이 없으니. 명분이 바르지 못한 것과 말의 순하지 못한 것을 글쓰는 사람을 번갈아 기록하더라도 다하지 못 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대원군의 치세 전반에 대해 총체적으로 비판하였다. 그는 대표적인 실정의 사례로 만동묘철거, 서원폐쇄, 國賊의 伸寃, 청전의 사 용 등을 들었다. 최익현은 상소의 끝에서 "친친의 열에 속한 사람은 다만 그 지위를 높히고. 나라 정사에는 간여하지 말도록 할 것"을 되풀이 하여 주장 함으로써 대원군의 하야와 고종의 친정을 요구하였다.13) 고종은 최익혀의 동 부승지 사직상소를 물리침과 동시에 그를 호조참판으로 승진시키라는 지시 를 내림으로써 최익현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그러나 11월 15일과 16일 좌의 정 姜狫와 우의정 韓啓源. 영돈영사 洪淳穆 등 고위관료들이. 17일에는 호 조・예조・공조・병조판서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나아가 성균관의 유생 들이 이른바 捲堂(맹휴)으로 고위관료들의 최익혀 규탄에 가담하였다. 이어 12월 16일에는 승정원의 구성원과 홍문관·사헌부·사간원의 대간들이 동시 에 사임함으로써 최익현상소를 둘러싼 정치문제는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다.

고위관료들의 반발에 부딪쳐 고종은 최익현을 일시 관직에서 해임하였으나, 최익현을 비판하는 세력들은 상소가 인륜을 그르치는 내용이라며 강경한

대 문제 해결에 착수할 즈음 일본국내에서는 사족의 반정부운동이 점차 강해지고 있었다. 사이고를 제외한 사직 참의들은 이타카키를 중심으로 민선의원설립 건백서를 제출하여 '자유민권운동'을 개시하였고, 또 조선의 무례를 심문한다는 명분으로 사가(佐賀)지방에서 무장봉기하였다. 충격을 받은 정부는 정한파의 불만을 국외로 돌릴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고 마침 표류한 유구인을 대만원주민이살해한 사건을 이유로 대만침공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사이고의 난이 3월 1일 진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만출병을 서둘러 5월 2일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였다.

¹³⁾ 李瑄根, 앞의 책, 338~340쪽.

처벌을 요구하였다. 마침내 11월 24일 의정부와 비변사의 상층관료 57명이 연명한 賓啓를 접하여 고종은 최익현에 대한 심리를 집행하라고 명령하여 이들의 반대를 수용하였으나, 동시에 최익현을 반대한 세 명의 하위관리에 대해서도 유배를 명령하여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다.14)

의금부는 최익현을 대역죄로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으나, 고종은 최익현이 단지 시골의 몰지각한 인물에 불과하며 섭정 조대비가 최익현을 가볍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제주도 유배를 명하였다. 승정원에서는 이 결정에 항의했으나, 고종은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11월 28일 의금부의주요 관리 중 홍순목·강로·한계원·金世均·朴珪壽 등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고종은 홍순목·강로·한계원 등을 해임함으로써 자신의 결정을 공식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최익현의 상소 이후 한 달여 안에 조정내 대원군 지지세력이 축출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대원군의 실각 소식을 접한 일본정부도 즉각 外務6等 出仕 모리야마를 재차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 정정의 변화를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던 사실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다. 이 시기 정치세력의 교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원군파 홍순목의 축출과 李裕元·박규수의 중용, 그리고 군사권의 장악이었다. 고종은 이와 같이 조정내 집권세력을 교체하고 1874년에 접어들면서 각지방에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자하였다.15)

이 시기 암행어사 파견의 정치적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상좌도 암행어사로 파견되었던 朴定陽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박정양의 주요 활동은 크게 경상도관찰사 金世鎬, 동래부사 鄭顯德, 왜학훈도 안동준 등 대일외교를 담당했던 관료들에 대한 조사와 다른 하나는 부산에 설치되어 있었던 왜관주재 일본관리와의 접촉이었다. 박정양 활동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신정권이 중앙과 지방에서 대원군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¹⁴⁾ James B. Palais, 李勛相 譯,《傳統韓國의 政治와 政策》(신원문화사, 1993), 29 5~332쪽.

¹⁵⁾ 한철호, 〈고종 친정초(1874) 암행어사 파견과 그 활동〉(《사학지》31, 1998), 193~244쪽.

대외적으로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급속히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 선정부의 방침은 공식적인 접촉 또는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그리고 지방세 력들 사이에서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조선정부가 이 시기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나섰던 것은 대략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일본의 대만침공에 관한 소식과 대만사태에 뒤이은 청국 자문의 영향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조선정부는 신임 왜학훈도 玄普運에게 일본과의 교섭을 지시하였다. 1874년 9월 3일 현석운과 모리야마는 국교재개 문제에 대해 회담하였다. 이것은 메이지유신 이후 조선과일본 양국 관리간에 이뤄진 최초의 공식회담이었다. 회의에서는 국교 재개를위해 조선국 예조판서에게 일본 외무성의 외무경이 예조참판 앞으로, 또한舊쓰시마번주가 예조참판에게 각각 새로 서계를 보낼 것을 합의하였다.

모리야마는 10월 하순 東京에 도착하여 조선에 관한 상세히 보고를 하였다. 그는 일본정부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선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외무성은 그 건의를 채택하여 이미 결정되었던 舊쓰시마 번주의 파견을 철회하고, 12월에 가서 모리야마를 外務少丞으로 승진시킨 되다시 부산에 파견하여 국교재개 교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대만문제를 성공적으로 종결지은 오쿠보 정권의 대외적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좀더 직접적인 요인은 상술한 바와 같이대원군 실각 후 조선정부의 대일외교 변화를 틈탄 일본정부의 적극정책이라 할 것이다.16)

앞의 합의에 따라 모리야마는 1875년 2월 하순에 부산에 도착하여 서계를 제출하고 현지 조선 당국자들과 교섭을 시작하였다. 동래부의 보고에 대해 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상이 이르기를, '올라온 서계를 끝까지 받아 보지 않는다면 자못 誠信의 도리가 아닌 듯하다. 또한 저 왜인이 받아 본 뒤에 만일 따르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비록 백 번을 물리치더라도 마땅히 도로 받아서 가겠다고 약조를 하였으니. 이번에는 가져와 보게 해서 실로 격식을 어긴 점이 있으면 다시 물리치는

¹⁶⁾ 金基赫, 앞의 글, 25~26쪽.

것이 불가하지 않을 듯하다. …' 김병국이 아뢰기를, '倭情이 본래 교활하니, 전의 말을 準據해 믿거나 서계에 眞書와 諺書가 서로 섞여 있는 것은 전에 없던일입니다만, 한번 자세히 살펴본 뒤에 과연 격식에 어긋난 점이 있으면 사리에의거해 물리치는 것이 실로 일의 체모에 합당할 듯합니다'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狀啓가 올라온 지 이미 여러 날 되었으니 즉시 품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인의 실정은 별로 의심할 만한 것이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겠다'(《承政院日記》, 고종 12년 2월 5일).

이용우가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 '彼國의 官制가 변경되었다고 핑계대고는 있지만 도서를 만들어 주는 것은 서로 믿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만이아니라 이미 바꿀 수 없는 법규가 되었는데, 당초 두 나라가 講定하지도 않고이제 와서 새로 행하고자 한단 말입니까. 비록 노인으로 말한다 해도 정식을고치는 것 또한 격식에 어긋나는 것이니 모두 좋은 말로 효유하여 다시는 시끄럽게 하지 말도록 하고 형세를 속히 馳聞하도록 알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承政院日記》, 고종 12년 2월 9일).

위의 기록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대략 두 가지 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하나는 전통적인 조일외교의 형식을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서계의 접수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1868년 서계접수 거부 시기의 논의와 다른 점은 외교문서를 일 단은 접수하여 검토해보자는 입장이 새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사실 은 이와 같이 서계를 접수하여 적극적으로 대일외교를 풀어가자는 입장의 선두에 고종이 있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고종은 서계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서계접수 자체의 거부는 "誠信에 어긋난다", "왜인의 실정은 별로 의심할 만한 것이 없음을 분명히 알수 있겠다", "이번의 서계는 개수한 곳이 있다"라고 함으로써 서계 접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 대신 이용우와 시원임대신들은 고종의 태도와달리 동래부 장계의 회답을 지연시키고 있었고, 여전히 '皇'·'大' 등의 용어와 新印의 사용 등을 들어 거부하고 있었다. 고종은 개인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였으나, 조정대신들의 여론은 여전히 서계 접수를 거부하는쪽이 다수였다고 하겠다.

2) 강화도조약의 체결

(1) 운요호사건과 조선정부의 대응

조선정부는 결과적으로 1875년 2월의 서계에 대해서 여전히 '大日本'・ '皇上' 등의 용어와 그 本文이 日本語로 된 점, 그리고 조선에서 쓰시마에 주었던 圖書의 還納, 사신접대를 위한 연회석상의 양복 착용 등을 들어 접수 를 거부하였다. 조선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모리야마 일행은 그동안의 협상결 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4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군함을 파견하여 쓰시마 근해를 측량케 하면서 조선의 내홍에 편승하여 우 리들의 협상에 대한 후원을 해 줄 것을 청하는 일〉

조선국에 파견된 우리들 모리야마 시계루와 히로츠 노부히로 두 사람은 2월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이의 협상 진전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 나라는 정치싸움 때문에 지난 9월 우리에게 약속한 조건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동래 훈도 현석운은 상경하여 돌아올 날짜를 연기한다고 전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와도 그가 내놓을 제안이란 또 어리석은 내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해서 훈령을 바라는 몇 통의 글은 저희들이 이미 보낸 바 있고, 그 중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각하의 검토를 거쳐서내려진 결정을 통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모리야마가 진작에 청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를 지원해 줄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전광석화와 같이 행동할 때이므로, 어째서 그러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히로츠가 지금 이 나라의 정황을 탐지하건대, 재상은 횡사하고 대원군이 입성하여 바야흐로 두 세력이 생사를 다투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 쪽은 재기를 꿈꾸고, 다른 쪽은 이를 저지하고자 서로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나라의 백성은 거의 반이 대원군의 가렴, 폭정에 원한을 품고 있는 까닭에갑자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적절히 행동하기만 한다면 암암리에 개화의 기세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일 훗날 대원군이 득세하여 전에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도 부득이크게 힘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올 것입니다. 정황이 그러한 즉, 지금 저들이 서로 싸우고, 쇄국파가 아직 그 기세를 되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힘을 사용한다면 가벼운 힘의 과시로써도 목적을 이루기는 용이하다고 판단합니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함 한두 척을 급파하여 쓰시마와 이 나라 사이를 드나들게 하고, 숨었다 나타났다 하면서 해로를 측량하는 체하여 저들로 하여금 우리가 의도하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가끔 우리 정부가우리들 사신의 협상 처리의 지연을 힐책하는 듯한 표시를 보임으로써 저들에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질 언사를 쓴다면, 안팎으로부터의 성원을 방패삼아 일처리를 다그칠 뿐 아니라, 국교 체결상 웬만큼의 권리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는 것도 틀림없는 일입니다. 미리미리 저들의 바다를 측량해 두는 것은 홋날에 일이 있건 없건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을 저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처럼 무력 시위를 요청하는 이유는 오늘 한두 척의 작은 출동으로 능히 훗날 대규모의 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경솔하게 이웃 나라를 흉기로 농락하려는 생각에서는 아닙니다. 삼가 이상과 같이 상신하오며, 지체없이 영단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8년 4월 외무성 6등 출사 히로츠 노부히로(《日本外交文書》8권, 71~72쪽).

이것은 무력을 동원한 현상타개를 주장한 것으로, 서구 열강의 포함외교에 의해 개항하였던 일본의 경험을 조선에 적용한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모리야마와 히로츠의 보고를 수용하여 조선정책을 추진하였다. 외무경 데라시마(寺島宗則)는 정부의 수반인 태정대신 산죠와 우대신 이와쿠라의 승인을 얻어해군 군함을 조선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4월 20일 운요호가 부산에 입항하였다. 동래부는 역관 현석운을 보내어 예고 없는 군함의 입항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일본측은 모리야마 등 일본 외교사절을 보호하기 위해 입항한 것이라하여 조선측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5월 9일에는 군함 제2테이묘호(第二丁卯號)가 부산항으로 들어와 운요호와 합류하였다. 이에 대해 동래부는 현석운을 다시 파견하여 항의하였으나 이것 역시 거부당하였다. 또한 현석운 일행이 군함에 승선하였을때 두 군함이 연습을 핑계로 동시에 함포사격을 감행함으로써 부산과 동래부민들로 하여금 위기감을 갖게 하였다.

일본측의 군함파견으로 조야에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정에서 서계문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부산에서 일본군함이 무력시위를 감행한다음날인 5월 10일 고종은 시원임대신과 6조의 3품 이상 고위관직자 전원을 불러 외무성 서계문제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倭館 서계의 回啓에 관한 일로 널리 물어 결단해야 하겠는데, 邊情에 관계된 일이라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 이렇게 모이라는 명을 내린 것이다'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왜관에 관한 일이 여전히 결말나지 않고 있는 지가 이미 한 해도 넘게 되었습니다. 신이 이 일로 여러 차례 아뢰어 큰 거조가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현재의 방법은 오직 서계를 받느냐 하는 데 달려 있는데, 외간에서는 이 일로 논의가 한결같지 않습니다. 正道를 지키자는 논의를 따르자면 權宜의 정사가 물리쳐지고, 권의의 정사를 따르자면 정도를 지키자는 논의가 물리쳐지니, 邊釁의 완급이 실로 이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서계를 받는다면 임기응변의 방법이야 될 수 있겠지만 장래의 무궁한 근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매우 어렵고 신중히 해야 하는데, 신처럼 용렬한 사람은 이미 원대한 사려가 모자라므로 가까운 근심을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하께서 십분 헤아려 결단하여 처분을 내리소서'하고,

김병학은 아뢰기를, '영부사가 이미 아뢴 바 있습니다만, 서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서너 구절의 말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춘추 시대에 吳나라와 楚나라가 왕을 僭稱하였으나 자기 나라에서만 왕을 칭하였을 뿐 列國에 사신을 보냄에 미쳐서는 '왕'이라 하지 않고 '寡君'이라고 하였으며 '大國'이라 하지 않고 '蔽邑'이라 하였습니다. 이번의 서계의 호칭은 놀랍고 망녕되며 300년 동안 없던 일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書牒에도 없던 바이니, 이 때문에 한 해넘게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연향 때에 저들이 만약 전에 입던 옷을입지 않는다면 실로 뒷 페단에 크게 관계가 있을 것이니, 이것이 더욱 십분 삼가고 살피지 않으면 안되는 점입니다. 신의 얕은 견해는 대개 이와 같습니다'하고,

홍순목은 아뢰기를, "서계의 일은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데 관한 설이 달라 질질 끌어온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으니, 어렵고 조심스럽기가 이미 이와 같습니다. 받아야 한다는 논의는 '예로부터 중국이 오랑캐를 대하던 방법은 다스리지 않는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었는데, 트집거리를 만들지 않고자 해서였다. 이번의 이 일은 이웃 나라끼리 강화를 닦자는 것이니 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굳이 우리가 먼저 트집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받지 말아야 한다는 논의는 이 문자는 크게 격식을 어겼으니 갑자기 받아들이기를 허락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또한 저들이 만든 조항에 구애되어 연향을 베풀 수 없었으니 실로 전례를 살펴 서계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혹서계를 받는다고 답한다면 다시 다른 일이 없을 줄을 어찌 알겠는가. 변정에 관계된 일이니 가볍게 하지 말고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의 얕은 견해로는 감히 지적하여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 오직 깊이 생각하여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하고,

박규수는 아뢰기를, '일본의 서계에 관해 이렇게 버틴 것이 지금 이미 일 년 이 되어 가니 먼 나라 사람이 체류하는 번거로움과 시끄러움이 실로 작은 근 심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하문하시니 여러 대신들이 아룀에 있어 깊이 생각 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저들의 서계에 칭호를 참람하고 망녕되게 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만, 과군이니 폐읍이니 하는 禮讓하고 謙恭하는 말은 저 섬 오 랑캐에게 갖추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일인 듯합니다. 그 나라에서 황제라고 칭 한 것은 周나라 平王 시대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미 수천여 년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서계에서 본국이 칭하는 대로 따른 것도 신하로서 부득이하여 그렇게 한 것이니, 이는 오직 성상께서 어떻게 포용하시느냐에 달려 있는 것일 뿐입니 다. 저 사람들이 스스로 國制를 변경하여 크게 隣好를 닦자고 한 것이 지금까 지 저지당하여 許接하지 못하고 있으니. 필시 하스럽게 여기는 바가 있을 것인 바 문제를 일으킬 만한 단서가 십분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상께서 하문하시는 것도 오직 처분을 내리시기 어렵고 신중히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 의 뒷 폐단도 실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만, 그 때 가서 거절하는 데 그 방법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사단은 저들이 반드시 말을 물고 늘어질 것이니, 구구한 염려가 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前席에서 감히 장황하게 늘어놓을 수 없으니. 서계 가운데 성상의 마음에 걸리는 무슨 구절 무슨 조항 을 일일이 하문하시면 莚席에 오른 대신과 여러 재신들이 모두 분석하여 아뢸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좋은 것을 취하여 처분하소서'(《承政院日記》, 고종 12년 5월 10일).

위의 기록을 검토해 보면 대체로 박규수·이최용 등은 서계접수를 주장하였고, 김병국 등 7명은 반대, 나머지 24명은 유보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무력시위가 시작된 이후에도 조정대신들 주류의 입장은 여전히 서계 접수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서계접수를 주장하는 박규수 등 소수의 견해도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일본측과의 무력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서계를 일단 접수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의무력동원 조짐에 대한 조야의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려하였던 사태가 실제로 발발하였다.

운요호가 8월 21일 한강 하구 강화도 해안에 정박하였다가 선원 일부가 작은 배로 사전 예고없이 한강하구를 거슬러 항해하자 초지진 포대에서 포격을 감행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초지진 대포의 사정거리 밖에 있었던 유요호는 초지진의 포격으로 전혀 피해가 없었으나 유요호는 함포사격으

로 초지진을 파괴하였으며, 다음날 영종도에 상륙하여서는 다수의 민간인을 살상하고 관아와 민가를 노략질한 뒤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른바 운요호사건은 앞에서 제시하였던 모리야마의 정책제안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일본은 미국의 강압에 의해 문호를 개방하였던 역사 적 경험을 역으로 이용한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운요호사건을 빌미로 조선외 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운요호사건 처리와 수교 교섭을 위해 육군중장겸 참의 쿠로다 기요타카(黑田 淸隆)를 특명전권대신으로, 원로원의관 이노우에 카오루(井上擊)를 특명부전권 변리대신으로 임명하였고, 전권단 일행은 1876년 1월 9일 도쿄만을 출발하였 다. 쿠로다 일행이 출발하기에 앞서 일본정부는 청국이 종주권을 구실로 개 입할 것을 우려하여, 외무소록 모리 아리노리(森有禮)를 주청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청국과 교섭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본에 주재하는 서구 각국의 공 사들에게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얻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외무성관리인 히로츠 히로유키는 全權代表團 파견을 조선정부에 통고하기 위하여 부산에 도착하였다. 그는 현석운을 만나 일본 특명전권대신이 강화도를 경유하여 서울에 들어 갈 것이라 통고하였다. 현석운은 왜관으로 히로츠를 방문하여 조선정부가 일본 외무경의 서한을 수납하기로 결정했음을 전하고, 일본 전권대표단이 강화도로 가는 것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히로츠는 이를 양해하고, 쓰시마에 가서 대표단의 도착을 기다려 이를 쿠로다・이노우에 양 대표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 조선정부의 전면적 양보도 소용이 없었다. 일본대표단은 예정대로 1875년 12월 19일 부산으로 가서, 약 일주일 후 그곳을 떠나 北上, 12월 말에 仁 川・南陽 앞바다에 나타났다.

운요호사건에 이어 일본함대의 출현으로 항간에서는 위기감이 확산되었고,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에 고심하였다. 당시 조야의 위기의식과 조선정부의 대 응상황은 다음과 같은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전정언 최병대가 상소하기를 대략 '신은 재주와 식견이 짧아서 당세의 일을 다시 의논할 만하지 못합니다만, 궁벽한 마을에 물러가 엎드려 거리에서 전하 는 말을 들으니, 안으로는 근교의 야촌에서 明火强盜가 약탈을 그치지 않고 밖으로는 경기의 연해에 바다를 건너온 이선이 여러날 정박하여 있다 합니다. 신은 묘당의 승산에 어떤 政策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날 귀를 귀울이고 들어봐도 한 장수를 명하거나 한 사람을 보내어 요해를 방수한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하였으니, 배회하는 군사를 우려할 것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또는 무사할 것이라고 믿어서 그런 것입니까. 인정이 몹시 근심하고 항간의 의논이 떠들썩하므로 분수에 넘치고 경망한 것을 무릅쓰고 글을 올립니다'(《承政院日記》,고종 13년 1월 4일).

정부로서는 실로 내우(民擾)외환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었다. 이 시기《承政院日記》의 기사 중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내용은 한강 입구 양화진 등지의 안위에 대한 보고와 이양선 출현에 관한 보고를 지체한 지방관에 대해추고를 시행하라는 것이었다.

일본전권대표가 군함을 앞세워 경기연안에서 시위를 계속하는 사태에 대하여 조선정부도 계속하여 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고종은 의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1876년 1월 5일 접견대신과 부관을 임명하였다.

의정부가 아뢰기를, '잇달아 정상을 물은 사연을 들으니, 반드시 우리 나라의 대관을 만나려 한다고 합니다. 먼데 사람을 어루만지는 뜻에서 그 바라는 대로 한번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할 듯 합니다. 판중추부사 申檯에게 하직은 그만두고 나가도록 하되 접견하는 장소는 그때그때 편한대로 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하였다. … 또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접견대관은 이미 계품하여 윤허받았습니다. 부관이 없어서는 안되겠으니 부총관 尹滋承을 하직은 그만두고 함께 내려가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조선정부는 일본의 무력시위에 직면하여 급히 접견대관과 부관을 임명하여 일본의 전권대신을 만나게 하였다. 의정부의 입장에서는 두 차례 서양 열강의 무력침공을 경험한 바 있었고, 이 양차의 양요를 치룬 경험자로서 무관 신헌을 접견대관으로 선정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두 대신은 2월 5일 江華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신헌을 접견대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조선정부는 쿠로다 일행의 출현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종

과 의정부 대신들은 새로운 조약에 대한 일본측의 의도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먼데 사람을 어루만지는 뜻에서 그 바라는 대로 한번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 아래 신헌을 파견하였던 것이었다. 따라서 신헌과 윤자 승에게는 조약체결을 전제로 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고, 파견 당시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일본인들을 접견하고 돌아와 조정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신헌은 쿠로다 일행이 2차 회담에서 13개 조항의 조약 초안서를 제출하고 조약체결을 요구하였을 때, 조선은 세계의 외교 관례를 알지 못하고 일본과 300년 동안 교역을 하였는데 왜 새로이 교역을 주장하는 조약이 필요한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조약체결에 대해서는 협정 초안을 조정에 보고하고, 조정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던 것이다.

회담은 공식적으로는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회담에서 일본측은 운요 호사건에 대한 책임문제를 제기하였고, 2차 회담에서 운요호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약체결을 요구하였다.17)

일본측은 2차 회담에서 양국간의 友誼를 친밀히 하여 다시 隔阻됨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조약을 맺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며 全文 13조로 된 조약 초안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요구는 조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이었다. 실제 일본이 조약의 초안을 제출하였을 때 조선측은 조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본측이 그것은 두 나라가 國際間의 '通義'에 의거하여 항구를 개방하고 서로 무역을 하기 위한 약정이라고 설명하자 조선측 대표는 조·일 양국은 조약없이 300년 동안 互相交易하여 왔는데, 왜 지금 갑자기 조약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하였다고 한다. 덧붙여 조선은貧國이고 그 백성들은 새 법을 좋아하지 않으니, 양국간의 무역이 확대되면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일본에는 별로 이익이 없을 것이나, 조선은 所失이 클 것이나 舊例에 따라 부산에서 교역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호상교역을 하는 국가들 사이에 조약을 맺는 것은 국제적 관행이라 주장하며, 조약 초안을 서울에 전달하여 그 수락여부를 10일 내에 회답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였다. 3차 회담에서 일본은 일본의 제안에

¹⁷⁾ 金基赫, 앞의 글, 34~36쪽.

대한 회답이 지연될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통고하였다.

일본측의 조약체결 요구에 대하여 2월 14일 고종은 領敦寧府使 金炳學, 領中樞府使 이유원, 判中樞府使 홍순목과 박규수, 그리고 領議政 이최응, 右議政 金炳國 등 時原任大臣들을 소집하여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본은 3백 년 동안 修好하던 곳인데, 이제 서계의 일로 이처럼 여러 날 동안 서로 버티니 매우 불측하다. 정부에서 미리 강구하여 타결할 방책을 만드는 것이 좋을 듯하다'하니, 이유원이 말하기를, '신들이 나날이 정부에와서 모여 상의한 지 오랩니다마는, 지금 저들이 교활한 것을 보면 마침내는 귀순하지 않을 듯합니다'하고, 김병학이 아뢰기를, '저들이 수호하러 왔다고는 하나, 허다한 정상은 수호가 아니라 말썽을 꾸미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들이 현재 날마다 모여서 상의합니다'하고, …

박규수가 말하기를, '일본이 수호한다고 말하나, 兵船을 거느려 왔으니, 그정상이 불측합니다. 이미 수호하러 온 사자라 하였으니 우리가 먼저 칠 수 없으나, 뜻밖의 일이 있으면 군사를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생각하건 대, 삼천리의 강토에서 과연 안으로는 정치를 잘하고 밖으로는 오랑캐를 물리치는 방도를 다하여 나라가 풍부하고 군사가 강성한 보람을 이룬다면, 작은 섬나라가 어찌 감히 와서 京畿를 엿보고 방자하게 공혁하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참을 지극히 분하고 슬퍼 못 견디겠습니다'하고, … '저들의 정상이 과연 수호를 수행하느라 그런 것이겠습니까. 내려간 대관이 날마다 잇달아 서로 만나니, 그 알려 오는 것을 기다리면 강구할 방책이 있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말하기를, '오늘 시임대신과 원임대신이 입시한 것은 바로 이일 때문에 그런 것이다. 대신들이 익히 더 상의하여 잘 타결하라'했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강화부의 장계를 보니, 저들에게 13건이 있다 하는데, 아직 신보하여 오지 않았으므로 확실히 알지는 못할지라도, 첫째가 관을 설치하여 통상하는 것이다. 이미 왜관의 開市가 있으니, 다시 설치할 것이 어디 있는가'(《承政院日記》, 고종 13년 1월 20일).

김병학은 일본의 태도와 행동으로 보아 그 목적은 修好에 있는 것이 아니라 戰爭을 도발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였고, 이유원·홍순목·이최웅등도 이에 동의하였으나, 누구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만 "일본이 수호를 칭하면서도 군함과 군사를 대동하고 왔으니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수호를 위한 사신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

가 먼저 이를 공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만약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병사를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박규수의 주장은 일본이 무장호위병을 대동하고 강화부에 들어와 조약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조선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회의는 우의정 김병국의 제의에 따라 접견대관 신헌의 보고를 기다려 대책을 결정하기로하였다.

제3회 회담에 관한 접견대관의 보고와 일본측의 조약안 한문번역본이 다음날 보고되었다. 고종과 의정부 대신들은 일본측의 조약체결 요구가 예기치 못했던 것이었고, 또한 공식적인 묘당회의에서는 개항에 대한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흘 만에 일본측의 통상조약 체결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결정하고 이를 접견대관에게 통보하였다.

의정부가 아뢰기를, '지금 接見副官의 謄報를 받으니, 일본 사신이 수호하고 통상하는 일 때문에 조규를 베껴 올린 책자인데 묘당을 시켜 稟處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일본과 3백 년 동안 사신을 보내어 천목을 닦고 왜관을 설치하여 교역하였는데, 연래로 서계의 일 때문에 서로 버티기는 하나, 이제계속하여 수호할 처지에서 그 통상을 굳게 물리칠 수 없습니다마는, 수호약조의 절목으로 말하면 익히 상의하여 양편이 서로 편의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먼저 이 뜻을 접견대관에게 알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承政院日記》, 고종 13년 1월 24일).

즉, '황'과 '칙'의 용어와 신인사용 등 외교문서의 형식이 문제가 되어 8년 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던 조선과 일본과의 외교교섭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었다. 서계문제와 운요호사건 이후 일본측의 신조약체결안에 대해 조선정부의 공식적인 회담에서는 여전히 외교문서의 접수 거부를 주장하는 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결정은 돌출적인 사건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는 것이었다. 전권대신의 보고를 접하고 조약체결을 결정을 확정하기까지 사흘이 걸렸고, 이 기간 동안 공식적인회의 기록을 찾을 수 없다면, 개항 정책으로의 전환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고종을 비롯한 의정부의 핵심인물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서계문제를 둘러싼 묘당의 공식적인 기록들을 검토해보면 박규수ㆍ이최응ㆍ이유원 등

소수의 개항론자들이 고종의 지지를 바탕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고종과 시원임대신 회의에서 개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을 때 대원군 세력 및 재야유림측의 개항 반대 여론도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최익현과 前司諫 張皓根 등이었다. 고종 친정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던 최익현이 고종이 선도하고 있는 대일수교에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이었다. 그는 상소에서 다음과 같이 수교 방침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정자·주자의 가르침으로 오늘의 일을 헤아린다면, 적과 강화하면 반드시 난망의 화를 가져올 것이 다섯 가지나 됩니다.

화의가 저들의 애걸에서 나왔다면 우리가 강한 처지여서 우리가 넉넉히 저 들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화의를 믿을 수 있으나, 이제 화의가 저들의 애걸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약한 것을 보인 것입니까.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화호를 구한다면, 당장은 편히 넘어가겠으나, 앞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어떻게 채워 주겠습니까. 이것이 난망하는 까닭의 첫째입니 다. 저들의 물건은 다 지나치게 사치한 것과 기이한 노리개인데, 우리 물건은 백성의 생명이 의지하는 한정이 있는 것이니. 몇 해 못가서 우리 땅 수천 리가 더 지탱하지 못하고 나라가 따라서 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난망하는 까닭의 둘 째입니다. 저들이 왜인이라고는 하나 실은 洋賊이니, 화호하는 일이 한번 이루 어지면 邪學이 전수되어 전국에 두루 찰 것입니다. 이것이 난망하는 까닭의 셋 째입니다. 저들이 뭍에 내려 왕래하며 臺를 쌓아서 있으려 하는데, 講和를 거 절할 말이 없다 하여 버려둔다면, 재물과 부녀의 약탈을 바라는 대로 할 것입 니다. 이것이 난망하는 까닭의 넷째입니다. 이 말을 앞장서 하는 자는 병자년 南漢의 일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강화한 뒤에 피차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 이제까지 盤石과 같은데. 오늘날 저들과만은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하나. 저들은 재물과 여색을 알 뿐이고 다시는 사람의 도리가 없으므로 참으로 짐승 이니, 짐승과 화호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난망 하는 까닭의 다섯째입니다. … 전하의 뜻으로는 어찌 '저들 온 자는 왜인이고 양인이 아니며, 그 거듭 말하는 것이 이미 수호라 하였으니, 왜인과 修舊하는 것이 또한 무엇이 해로운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의 어리석은 소견 으로는 크게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참으로 왜인이고 양인이 아니 라도 예와 이제가 아주 다르므로 살피지 않아서는 안되는데, 연전에 북경에서 온 摠理司의 글에, '法國, 美國과 왜국이 함께 나왔다'는 말이 있고, 지난해에

東萊訓導가 전한 말에, '왜인이 靈祠를 세우겠다고 청하고 異服한 사람을 금하지 말기를 청한다' 하였는데, 이제 온 왜인이 양복을 입고 洋砲를 쓰고 洋舶을 탔으니, 이것은 왜인과 양인이 마찬가지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구나 지난 달의 북경의 咨文은 오로지 이번에 온 왜선 때문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병인년에 패하여 돌아간 것은 양인이고 왜인이 아니다'고 하였으니, 왜인과 수구하는 날이 바로 양인과 화호를 맺는 날일 것입니다(《承政院日記》, 고종 13년 1월 23일).

고종과 집권층이 개항을 결정하는 시기 최익현은 개항정책에 대해 다섯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최익현의 개항반대론은 이른바 왜양일체론이고 핵심을 이루고 있다. 최익현은 상소에서 "전하의 뜻으로는 어찌 저들 온자는 왜인이고 양인이 아니며, 그 거듭 말하는 것이 이미 수호라 하였으니 왜인과 修舊하는 것이 무엇이 해로운가 하시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여 고종의 개항 명분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것이다.

최익현의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고종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 히 하고 최익현을 흑산도로 유배시킬 것을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왜인을 제어하는 일은 왜인을 제어하는 일이고, 양인을 배척하는 일은 양인을 배척하는 일이다. 이번에 왜선이 온 것이 양인과 합동한 것인 줄 어떻게 확실히 알겠는가. 왜인이 양인의 척후라 하더라도 각각 응변할 방도가 있을 것이다. 최익현의 상소에 문득 내가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일에 엄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여 한 세상을 현혹하는 계책을 앞장서 만들고 이렇게 임금을 터무니없이 핍박하는 말을 만들어 방자하게 배척하고, 배척하는 것도 모자라서 恐動하기까지 하고, 공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헐뜯어 욕하였으니, 그 중의 두세 어구는 이것이 어찌 신하로서 감히 차마 말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정상이 황홀하고 품은 것이 음흉하므로 본디 常刑으로 결단해야 하겠으나, 참작할 것이 있으니, 최익현에게 한 가닥 남은 목숨을 용서하여 黑山島에 圍籬安置하고 三倍道로 당일에 압송하라'하였다(《承政院日記》, 고종 13년 1월 27일).

고종의 명분은 양인은 양인이고 왜인은 왜인이다는 점에 있었다. 즉 왜양일체론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의정부의 보고로 기록되어 있는 관련기록을 검토해보면, 쇄국에서 개항으로 정책을 전환과정에서 정부는 조약체결이라는 큰 틀에서의 결정 외에 실질적인 조약안의 확정과정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

하지 않고 전권대신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신속하게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18) 조약체결을 결정한 다음날 의정부 장계는 접견대관 신헌이 일본측의 제안에 대해 이를 보고하고 의정부의 심의의 의결을 요청하자 조약안을 일일이 검토하고 이를 확정하자면 번거롭고 시일이 지연되므로, 전권대신이 중앙정부와의 상의없이 이를 전결토록 하자고 건의하자 고종은 이를 받아들였다.19)

임지에서 조약체결에 대한 정부의 사전지침도 없이 접견대관으로 임명되어 강화부에서 회담에 임했던 신헌에게 일본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하였던 조약안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전권이 부여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통고를 접한 신헌은 중앙정부의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상신하였다.

신현이 상소하기를 대략, '지금 의정부 관문의 사연을 보니 수호통상의 조규를 강정할 때에 번번이 번거롭게 묘당에 공문을 보내므로 절로 날짜가 늦추어지는데 백성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면 일에 따라 재량하여 결단토록 윤허받았다 하였습니다. 명을 듣고 놀라워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지금 사신이라는 이름을 핑계삼아 바다를 건너 왔으니, 반드시 쉽사리 돌아갈 자가 아닙니다. 이 유감을 품은 적이 순하고 또 무사할지라도, 한낱 사신의 말로 처리할 것이 아니니, 한결같이 묘당의 계책을 따라서 저들에게알려도 오히려 임무를 견디어 내지 못할세라 두렵습니다. 이때에 이 직임이 얼마나 지극히 무거운 것인데 도리어 신처럼 여리고 어리석은 자에게 맡기겠습니까. 재기를 헤아리고 事體로 헤아려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성명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신은 못견디게 …'하였는데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사명이 중한 것은 어느 때인들 그렇지 않으랴마는, 이번 왜국 사신이 온 것이수호 때문이라고 하나 안위에 관계되는 것이 없지 않은데, 경은 문무의 재주를 갖추어 일찍부터 중망을 나타냈으므로 조정의 논의가 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¹⁸⁾ Martina Deuchler, 앞의 책, 40~41쪽.

¹⁹⁾ 의정부가 아뢰기를, "어제 수호하고 통상하는 일 때문에 계품하고 關文을 보냈습니다. 條規 등 모든 講定을 번번이 번거롭게 묘당에 공문을 보내므로 절로 날짜가 지연되는데, 백성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전결하여도 괜찮을 것입니다. 옛 가르침은 그러하니, 편리한대로 일에 따라 재량하여 처치하라는 뜻으로 接見大官에게 알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日省錄》, 고종 13년 1월 25일).

된다 하고, 임기응변은 專管하도록 맡기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강토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나 古例를 원용하였거니와, 경은 어찌하여 이토록 사양하는가. 묘당에서 覆議한 것은 계책이 함께 공경하며 使事가 이제 이미 완성되었으니, 어찌 국가의 慶幸이 아니겠는가. 내가 경을 長城처럼 높이 믿으니, 경은 내 지극한 뜻을 잘 알아야 한다'하였다(《承政院日記》, 고종 13년 1월 30일).

신헌의 상소에 대해 고종은 일본이 겉으로는 수호를 위해 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안위 즉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태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 양차의 양요에서 공을 세웠던 신헌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고종은 신헌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고 접견대관으로서 교섭전권을 맡을 것을 명하였다. 일본측의 입장으로서는 전권대신 개인을 상대로 신속하게 교섭을 타결지을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 것이었다.

묘당의 결정에 따라 이후 신헌은 일본측과 조약문 내용에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2월 3일 조약을 강정하고, 2월 6일 조인식을 가졌다. 조약체결에 이르는 과정을 검토해보면 조선정부도 일단 조약체결을 결정한 이후에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이외에는 신속하게 회담을 타결짓고자 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한편 재야에서는 개항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측과 비교20)하여 사전 준비없이 회담에 임한 전권대신에게 전권

²⁰⁾ 당시 全權大使 黑田淸隆과 副使 井上馨에 내려진 일본정부의 訓令은 운요호사 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조선정부에 있으니, 이에 대한 응당의 賠償을 받아 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釜山 居留 일본인에 대 한 대우가 전과 다름 없으며, 조선정부과 일본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 바도 없었음을 고려하여, 만일 조선정부가 수호조약의 체결과 무역확장을 포함한 일 본의 요구를 수락하면 이것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배상'으로 인정하여 수용하라는 것이었다.

조약내용에 대해서는 과거 德川幕府의 舊例에 구애됨이 없이, ① 韓日 양국의 對等條件으로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② 부산과 강화도 또는 서울 부근에 무역항을 개설하며, ③ 일본군함과 상선에 대하여 조선영해 내에서 航行과 측량의 자유를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를 위한 교섭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조선측이 ① 全權代表를 모욕하거나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위수단을 취한 다음, 對馬島로 물러나 동경에 이를 보고하고 訓令을 기다릴 것, ② 폭행은 가하지 않으나 교섭을 거절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무성의를 책하고 조선 영토내에 머물면서 東京에 請訓하고 훈령을 기다릴 것, ③ 清韓從屬關係를 빙자하여일본측의 요구에 대한 회답을 지연시킬 경우에는 중국의 회답이 도착할 때까지서울과 강화도에 駐兵하는 권리를 주장할 것, ④ 조선측이 전례에 따라 일본의

을 부여한 조선정부의 결정은 실제 조약안 강정 이후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2) 조일수호조규의 내용과 성격

일반적으로 강화도조약 또는 강화도조약체제라고 지칭하는 조약의 구체적인 문건은 다음의 것들을 통칭하는 것이다. 즉 1876년 2월 26일 강화도에서조인하였던〈조일수호조규〉와 같은해 8월 24일 체결하였던〈조일무역규칙(조일통상장정)〉과〈조일수호조규부록〉및〈왕복문서〉등이 그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른바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으로서 강화도조약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일수호조규의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조일수호조규는 前文과 12개 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大朝鮮國과 大日本國은 元來 友誼 두텁게 歲月을 經過하였다. 至今 兩國의情意 未恰함을 보게 되므로 舊好를 重修하여 親睦을 굳게 하고자 한다. 이를爲하여 日本國政府는 特命全權辨理大臣 陸軍中將 兼 參議開拓長官 黑田淸隆,特命副全權辨理大臣議官 井上馨을 簡拔하여 朝鮮國 江華府에 派遣하고 朝鮮國政府는 判中樞府事 申櫶,都總府總管 尹滋承을 簡拔하여 各其 奉承한 論旨에 灣據하여 議決한 條款을 左에 開列한다.21)

전문의 첫머리에서 조약의 주체를 '대조선국'과 '대일본국' 그리고 조선국 정부와 일본국정부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측이 제시하였던 초안에서 이 부분은 '대일본국여조선국'으로, '대일본국황제폐하'와 '조선국왕전하'로 기술되어 있었는데, 조선측의 이의 제의로 대등한 표현으로 정정되었다고 한다.²²⁾ 한 편 조약 전문의 표현 중 '素敦友誼'라는 기존의 관례에 대한 언급은 일본이 조선과 수교하기 전 청국과 체결하였던 청일수호조규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장차 엄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 경고한 다음, 신속히 귀국할 것 등을 추가적으로 훈령하였다.

²¹⁾ 이 글에서 인용한 〈조일수호조규〉의 원문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편 《구한 국외교자료집》을 이용하였다.

²²⁾ 田保橋潔, 앞의 책, 482쪽.

나타나고 있다.²³⁾ 다만 신조약의 역사적 위상에 대해서는 조일수호조규의 경우 청일수호조규와 다르게 언급하고 있다. 즉 조일수호조규에서는 '과거의우호적인 관계를 거듭 확인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는 뜻의 '欲重修舊好'란 표현을 썼던 것이다. 즉 신조약은 '구호'를 '중수'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목한 바가 없었지만 조선측에 의해 요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는 조약 체결 이후 조선정부가 이에 근거하여, 그때까지 강력하게 개방을 반대하던 세력들의 반발을 회피하는 주요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항반대론자들의 반발을 피하기위하여 조선정부는 신조약이 새로운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과거의 교린관계의 연장에서 이를 개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조일수호조규 제1관을 검토하기로 한다. 1관의 첫구절은 조약 체결에 임하는 조선과 일본 양국의 관계 설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第1款 朝鮮國은 自主國이며 日本國과 平等한 權利를 保有한다. 今後 兩國이 和親의 誠意를 表하고자 할진대 모름지기 彼我 同等한 禮儀로써 相待할지며 추호도 侵越 猜嫌함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우선 중전에 交情阻害의 화근 이던 諸法規를 革除하고 極力 寬裕弘通의 법규를 開擴하여서 쌍방의 영원한 안녕을 기한다.

"朝鮮國은 自主之邦이며 與日本國으로 保有平等之權이라"고 조선을 '자주 국'으로, 그리고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조약에 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선의 위상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근대적인 조약체결의 당사자인 경우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관에서 이를 규정한 실질적인 이유는 일본이 조선에 대한 청국의 종주권을 부인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이 운요호사건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조선과의 직접 교섭 이전에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 논의한 것은 조선문제에 대한 청국의 개입을 방지하는 방안이었다.

청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이와 같은 도전은 일찍이 베트남에 대해 개

²³⁾ 外務省 編,《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上(原書房, 1966), 45\.

방을 강요하였던 프랑스가 대등관계를 조약문에 설정함으로써 청국의 개입을 배제한 적이 있었다. 일본은 이를 조일관계에 적용했던 것이었다.

청국의 종주권을 부인한 제1관의 실질적인 의미와 목적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의 청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일본측이 변경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일본의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제조항이었다. 그러나이 조항은 이후 조선 내외에서 조선에 대한 청국의 종주권을 부인하고 조선의 자주독립을 추구하였던 세력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즉 그들은 조선의 자주권을 대외적으로 처음으로 인정한 문건이 조일수호조규라고 평가하였다.

제2관은 종래의 외교관행 변경에 관한 조항이다. 종래 전근대 국가간의 외교관행은 특정의 목적을 가진 사행을 필요에 따라 파견하고, 파견 목적을 수행하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일본은 2관에 의해 기 존 외교관행의 전면적 전화을 시도하였다.

第2款 日本國政府는 지금부터 15개월 후 언제든지 사신을 朝鮮國 京城에 과견하여 禮曹判書와 親接하여 交際事務를 商議하도록 할 수 있다. 該使臣은 留滯하든지 즉시 귀국하든지 그것은 다 時宜에 의할 것이다. 朝鮮國政府는 언제든지 사신을 日本國 東京에 과견하여 外務卿과 親接하여 交際事務를 商議하도록 할 수 있다. 該使臣이 留滯하든지 즉시 귀국하든지 그것은 또한 時宜에 의할 것이다.

2관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정부와 조선정부가 사신을 상대국의 수도에 파견하면, 외교사무의 최고책임자가 이를 맞이하여 외교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호 호혜와 대등한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신의 상대국 수도 체류기간과 파견시기 등에 대해서 대단히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수도에 외교사절의 상주와 나아가 상주외교공관 설치를 가능케하고 있다. 2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該使臣駐留久暫共任時宜', '隨時派使臣' 등으로 표현하였다. 즉 사신의체류일정을 '時宜'에 맡기며, 사신의 파견시기를 '隨時'로 규정함으로써 체류기간과 파견시기에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은 이 조항

에 의해 실질적으로 개항장이 아닌 수도에 외교사절이 상주하여 외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제3관은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에 관한 규정이었다. 3관은 "今後 양국 왕래의 公用文은 일본은 그 國文을 사용하되 차후 10년간은 譯漢文한 통을 첨부하며 조선국은 眞文을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일본은 일본어를 사용하며, 조선은 한문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자국의 이익과 상대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외교문서의 작성에 일본이 비록 한문번역문을 첨부하기로 했으나, 일본이 자국어로 외교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문제의 소지를 남기는 것이었다. 표의문자인 한문 해석에 있어 조·일 양국의 해석이 상치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자국어의 해석에 근거하여 일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4관과 5관은 통상무역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는 개항장의 선정과 설치 및 운영의 대강에 관한 조항이었다. 4관은 "조선국 부산의 草粱項에는 일본 공관이 있고 다년간의 양국 인민의 通商地이다. 今後 종전의 慣例와 歲遣船等事를 개혁하고 今般 새로 의결되는 條款을 憑準으로 하여 무역사무를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외에 조선국정부는 第5款에 기재하는 二口를 개항하고 일본인의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右場所에서 地面을 賃借하여 가옥을 造營하며 또는 所在의 조선인민의 가옥을 賃借함은 각기 隨意에 맡긴다"라고 규정하였다.

4관에서 일본은 "조선국 부산의 草梁項에는 日本公館이 있고 다년간의 양국 인민의 通商地이다"고 하여 종래 교린외교 체제 하 부산에 두었던 왜관을 '공관'으로 기술하고 있다. 종래 교린체제 하의 조일외교의 실질적인 공간이었던 왜관의 관리와 세견선의 규모 등은 조선측의 규제와 통제 하에 있었다. 반면 공관은 치외법권을 가진 외교사절의 거주지역으로 거주국의 주권이미치지 않는 지역인 것이다. 왜관은 조선 관리가 거주지역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관문을 설치하여 거주지역 내외의 통행을 엄격히 규제하고 거주 일인들에 대해 식량과 생필품 등을 조달해 주고, 소수의 허가받은 상인에 한해지역내에서만 교역이 이루어졌던 영역이었다. 일본은 왜관 본래의 기능과 성격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자국 영토의 연장선상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일찍부터 이를 기정사실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쓰시마번주의 중개를 폐지하고 1871년 외무성 관리로 처음 조선에 파견되어 왜관에 도착하였던 모리야마도 왜관을 접수하여 공관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일방적으로 전달한바 있었다.

또한 제한된 공간에서 쓰시마도주의 허가를 받았던 쓰시마번 직속의 상인에 한해 주로 통상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항지 전 지역에서 오사카와 도쿄 등지의 대소 상인이 자유로이 무역에 참여하는 통상은 이전의 무역과 다른 것이었다. 나아가 개항지 내에서 임의로 토지를 빌릴 수 있고, 빌린 땅위에 집을 짓거나 조선인 소유의 집을 빌려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종전의 관례와 전혀 다른 것이었다. 4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본은 향후 조선땅에서 그들만(외국인)의 전관 거류지 즉 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5관은 부산 이외에 추가로 2개 항구를 개항하기로 약속한 조항이다. 5 관은 "경기·충청·전라·경상·함경 5도의 연해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2 개소를 택한 후 지명을 지정하고, 시기는 日本曆 明治 9년 2월 朝鮮曆 丙子 2월부터 기산하여 20개월 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항 시기를 수호조규 체결로부터 20개월 이내로 못박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에 근거한 원산과 인천이 실제로 개항되었던 것은 각기 1879년 7월과 1883년 8월이었다. 개항 시기가 조약체결 당시 규정했던 시기보다 상당 기간 지연되었던 것은 개항장 선정과정에서 일본이 이미 예상지로 꼽고 있었던 위의 2개 항구에 대해 조선측의 반발이 컸었기 때문이었다.

제6관은 일본 선박이 조선연안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구조하고 송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6관은 "今後 日本國 船隻이 조선국 연해에서 혹은 大風에 遭遇하며 혹은 薪糧에 窮渴하여 지정 항구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떤 항만에서든지 船隻을 寄泊하여 풍과의 위험을 피하고 所要品을 구입하며 船具를 수선하며 柴炭 등을 購得할 수 있다. 물론 그 공급 비용은 모두 선주가 변상할지라도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지방관민은 그 곤란을 體察하며 진실로 憐恤을 가하여 구원에 부족함이 없고 보급에 吝嗇함이 없어야한다. 그리고 또 양국의 船隻이 대양 중에서 파괴되어 승선원이 어떠한 지방

에든지 표착하는 때에는 그 지방 인민은 즉시 救恤의 手續을 취하여 各人의 생명을 보전시키고 地方官에 屆出하여 該官이 각 본국에 호송하거나 또는 그 근방에 在留하는 본국관원에게 인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난 선원의 보호가 일차적인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6관의 경우에도 조난시 인명구조와 보호라는 표면적인 목적이 변 질될 가능성도 다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조난에 포함되는 상황이 '대풍에 조우'·'薪糧 窮渴'·'선척 破壞'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고, 조선내 '어 떤 항구'에든지 기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관은 다음 제7관과도 관 련하여 일본의 선박이 개항장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유사시 조선의 어떤 항 만에라도 상륙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었다.

第7款은 "조선국의 연해·도서·암초는 종전에 審檢을 하지 않은 까닭에지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 연안을 측량함을 허가하여 그位置·深淺을 명세히 하고 圖誌를 編製하여 양국 船客으로 하여금 위험을 피하고 평온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조선 연근해의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해를 자유롭게 측량하고 측량자료를 가지고 지도작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었다. 7관 또한 제시하고 있는이유와 달리 조·일간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청·일간의문제와도 관련을 가지는 것이었다.

먼저 이 시기 일본측이 제시한 연안측량과 해도작성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규는 '위험하므로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 해안을 측량함을 허가'하고 있다. 이 때의 일본국 항해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당시 일본의 경우 민간측량회사나 민간인이 파견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었다. 일본이조약체결 직후 5관의 2개 항구 개항지 선정과 관련하여 조선에 파견하였던 측량선은 일본군함이었다.

일본은 1878년 4월부터 8월까지 개항장 선정문제로 조선에 대한 무력시위를 검하여 군함을 파견하여 동해와 서해안 측량을 강행하였었다. 이 조항에 의하여 일본군은 측량을 핑계로 조선연안의 어떤 지점에라도 일시 상륙할수 있게 되었으며, 수집된 측량자료는 군부의 주관 하에 지도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경우의 지도란 향후 조선 연근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투에

기여하는 해도작성이었음을 말할 필요도 없다.

끝으로 8관 이하 9관과 10관은 위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개항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본상인의 상업활동에 관한 규정이었다.

第8款 今後 일본국 정부는 조선국의 지정 各港에 시의에 따라 일본상인을 관리하는 官員을 설치할 것이다. 만약 양국이 교섭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該官은 소재 지방장관에 會商하여 처리한다.

第9款 양국은 이미 通好를 하였다. 彼我 인민은 각자 임의로 무역한다. 양국 관리는 조금도 이에 간여하지 않을 것이며 제한을 설정하거나 禁沮하지 못한 다. 만약 양국의 상민이 欺罔衒賣나 賃借不償을 하게 될 때는 양국 관원은 엄 중히 該國常民을 취조하여 債缺을 追辨시킬 것이다. 단 양국 정부는 이를 代償 할 이유가 없다.

第10款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各港에 在留중 만약 罪科를 범하고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審議할 것이다. 만약 조선국 인민이 罪科를 범하고 일본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조선국 관원이 査辨할 것이다. 단 쌍방이 다 각기 國律에 의거하여 재판하되 조금도 回護 袒庇함이 없이 극력 公平, 允當한 재판을 할 것이다.

8관과 9관, 10관은 상호 내용상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조선측에 제시된 것이었다. 먼저 8관을 살펴보면 일본은 향후 개항장에서 '時宜에 따라 일본상인을 관리하는 관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측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항장에 언제든지 '영사관'을 설치하여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관계되는 사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개항장에서 양국인의 상업활동에 대해서 9관은 '양국은 통호'하였으므로, '피아의 인민은 임의로 무역'에 종사하며, 양국 관리는 이를 규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다만 상업 활동 중 정당하지 못한 거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자국민에 대해서는 자국의 관리가 이를 조사하나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의 의무 등은 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아가 10관에서는 개항지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인에 대한 조사 처벌은 자국의 관리가 이를 담당하여 공평하고 타당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규정하였다. 당시 조·일 양국의 상황은 조선인 상인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무역에 종사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8관 이하 10관의 조항은 조선에 건너와서 상업에 종사하는 일본인에 대한 규정이었다. 조선은 이들 조항에 의하여 개항지에서 활동하는 일본상인의 활동에 대하여 규제하거나 통제할 법적 근거를 상실하였으며, 나아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이들을 체포하거나 조사 또는 처벌하는 데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측은 개항장에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 영사관을 설치하여 자국인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정부가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자국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현지에 주재하는 관리의 판단에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항 직후 조선무역에 종사하였던 일본상인들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들 조항에 의한 조선인의피해는 다양하고 심대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조선에 건너 왔던 일본인들은 조선영토 내에서 자유로이 무역과 선교 등 각자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나, 조선의 법질서 바깥에 존재하였던 것이다.

11관은 위와 같이 큰 틀에서 규정한 양국인의 상업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의 마련하기 위한 회담을 6개월 이내에 관리를 파견하여 시작한다는 것이었다.²⁴⁾

끝으로 12款은 조약의 효력 발생과 유효기간에 관련된 것이었다. 12관은 "右에 議定된 11款의 조약은 本日부터 양국이 信守遵行한다. 양국 정부는 이를 다시 變革할 수 없으며 영원히 信遵하여 양국의 화친을 두텁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約書 2통을 작성하여 양국이 위임한 大臣이 각각 조인하고 互相交付함으로써 증거를 명확히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 또한 일반적인 조약의 관례에 비추어 조약의 효력발생과 존속 연한이 예외적인 것이었다. 즉 조약체결 즉시 비준 절차에 대한 규정없이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또한 양국정부는 이를 변혁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영원히 이를 준수하게 되어 있다.

²⁴⁾ 第11款 양국은 이미 通好를 하였으므로 따로 通商章程을 설정하여 양국 常民에 게 편리를 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지금 의결한 각 조항 중 다시 세목을 補添하여 遵照하기에 편리한 조건으로 할 것이다. 이는 지금부터 6개월을 넘지 않아서 양국이 따로 위원을 임명하여 조선국 京城 또는 江華府에서 회견하고 商議決定을 하게 한다.

3) 개항 이후 조선정부의 대내외정책

(1) 수신사파견과 개화정책의 모색

조선정부는 운요호사건을 빌미로 한 일본의 강압적인 요구와 청국의 권고, 일본과의 무력분쟁을 피하자는 조선정부의 판단으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 였다. 강화도조약 체결 직후 조선정부의 당면 과제는 대내적으로 개항반대세 력의 저항을 흡수하고, 개항에 뒤따르는 대외적인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었다. 조약 체결 이후 정부가 당면하였던 정치적 과제는 조약체결에 대 한 재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고종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조약체결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왜인이 와서 이미 수호라 하였으니, 우리 나라도 수호 로 대접해야 할 뿐이고, 먼저 범하지 않고 말썽의 꼬투리를 열지 않는다는 조 정의 의논도 우리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일 뿐인데, 어찌 도리에 어그러진 상소 가 번갈아 나와 문득 화의를 주장하고 양인과 통한다는 말로 거짓을 날조하여 조정 관원을 일망타진하려는 계책을 하리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그러나 화의 를 주장한다는 것은 본디 그럴 듯 하지 않으니 바로 도리에 어그러진 상소가 터무니없이 속이는 것이고. 양인과 통한다는 것은 더욱이 영향이 없으니 곧 도 리에 어그러진 상소가 거짓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신은 변변치 못한 자질로 이 직임을 무릅쓰고 차지하여 평소에도 이미 믿음을 받지 못하였거니와 일을 당하여서도 鎭服하였으므로 저들이 상소하여 현혹하고 무함하는 것이 모두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신이 태연히 자리를 차지하여 있으려 하더라도 백관을 감 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왜선이 물러갔고 정부의 회좌를 막 철폐하였는데 어 전의 인견을 받게 되었으므로, 외람됨을 피하지 않고 감히 아룁니다. 바라건대, 聖明은 신들의 위구한 심정을 굽어살피어 빨리 물리쳐 주소서'하니, 상이 이 르기를, '이번 일은 구호를 닦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경들의 조처가 마땅 하였으므로 무사히 타결되었거니와, 이제 협잡하는 상소 때문에 남의 구설이라 하여 뒤미쳐 인책할 꼬투리로 삼는다면, 어찌 아주 뜻밖이 아니겠으며 또한 도 리어 나라의 체면을 손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는 이 때문에 서로 말하지 않기를 매우 바란다'고 하였다(《承政院日記》, 고종 13년 2월 5일).

일본의 무력 시위 하에 체결되었던 조약에 대하여 개항반대론자들의 공세가 시원임대신들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로 나아가자 고종은 조약체결의 명분으로 "이번 일은 구호를 닦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경들의 조처가 마땅하였으므로 무사히 타결"되었다고 옹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종을 비롯한 집권층의 개항론을 최익현의 이른바 '왜양일체론'과 비교해보면 왜와 양을 분리하고, 일본과의 조약체결을 전통적인 관계의 연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집권층의 조약에 대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조일수호조규의 실질적인 내용과 성격과는 달리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개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교린체제의 연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조일수호조규 조인 이후 일본의 조선정책은 비록 운요호사건을 빌미로 조선을 개항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강화도조약에서 규정하였던 후속조처, 예를 들면 通商章程 체결, 외교사절의 서울 常駐, 開港場 확대(부산이외 2개항의 개항) 문제 등의 해결없는 조약체결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들은 일본정부가 明治政府 성립 직후부터 줄곧 추진해 왔던 조선정책의 역사적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쉽사리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일본정부가 조·일간에 가로놓인 산적한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조선의 집권세력으로 하여금 일본과의 교류 확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가 조약체결과 동시에 취한 정책은 조선정부의 집권관료 및 유력인사들의 일본방문과 시찰, 유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집권세력들로 하여금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화정책의 성과물들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인식의 확산을 통해 일본의 조선 진출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강화도조약의 조인식 직후 개최된 연회석상에서 일본측 전권대신 쿠로다 기요타가는 조선측 대관 申櫶에게 인사말을 마친 다음과 같이 조선측 인사의일본 시찰을 권고하였다.

대저 交隣之道는 風俗을 詳察한 연후에야 가히 의혹을 타파할 수 있을지니, 비록 細目協定을 보기 전이라 하더라도 貴國에서 먼저 한 사람을 보내어 물정을 詳察한다면 아국이 今次의 조약을 위하여 얼마나 心力을 허비하였는지 가히 짐 작할 수 있을 것이며 의심도 풀릴 것이요, 따라서 細目講定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從此 이후로는 귀국 使臣의 내왕도 매우 편할 것이니, 火輪船을 이용한다면 부산에서 도쿄까지 6, 7일이면 도달할 수 있다. 귀국에서 속히 使臣을 派送해 준다면 我國人民도 십분 믿음이 더해지고 귀국으로도 매우 좋을 듯하다.²⁵⁾

일본측 전권대신 일행이 귀환한 후 잔무처리를 위해 강화도에 체류하였던 미야모토 코이치(宮本小一)·노무라 야수시(野村靖) 일행도 신헌과 윤자승에 게 향후 6개월 이내에 사신을 파견해 주도록 요청하였다.²⁶⁾

이러한 일본정부의 초청에 그동안 서계문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일외교에 소극적이었던 조선정부는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판단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고종은 신헌이 조약을 체결하고 조정에 돌아와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간의 경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의 배가 다 물러갔으니 참으로 다행이다'하니, 신헌이 아뢰기를, '당초에 安危에 관계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물러갔으니, 참으로 국가의 큰 복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問答狀啓를 보니, 과연 말을 잘하였다'하니, 신헌이 아뢰기를 '다행히 임금의 영위에 의지하고 묘당의 계책에 힘입어 명을 욕되게 하는 것을 면하였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번 노고를 내가 안다'하니 신헌이 아뢰기를, '온화한 말씀을 이토록 하시니 황송하고 또 감동하여 마지 않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장계한 것 밖에도 만나서 수작한 것 중에서 아뢸 만한 것이 또 있는가. 상세히 아뢰도록 하라'하였다(《承政院日記》, 고종 13년 2월 6일).

신헌은 복명하는 자리에서 조약체결 중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조약비준과 관련하여 일본이 임금의 이름을 기명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반 영했던 점과 일본측 교섭관련자들에 대한 평가 등을 주로 보고하였다. 한편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정황에 대해 고종이 질의를 덧붙였다. 고종은 신헌의 복명 가운데 일본측 무기의 우수함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덧붙이고 있다.

²⁵⁾ 李瑄根, 앞의 책, 401~402쪽.

^{26) 《}日省錄》고종 13년 2월 6일. 田保橋潔, 앞의 책, 상, 558쪽.

상이 이르기를, '또 들은 것이 있는가' 하니 신헌이 아뢰기를, '흑전청륭의 말은 여섯달 안에 곧 사신을 보내어 한편으로 회답사례하고 한편으로 그 풍속을 알아보고 한런으로 유람하는 것이 좋을 듯한테 부산에서 적간관의 화륜선을 타고 적간관에서 동경까지는 7, 8일에 곧 다다를 수 있으므로 별로 노고가 없다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이는 통신사인가' 하니, 신헌이 아뢰기를, '품질의 상례에 구해하지 말고 다만 일을 아는 사람을 보내라 합니다. 이제부터 피아의 사신은 모두 예폐를 없애고 저곳에 가면 방세를 주고서 거처하고 밥을 사서 먹으니, 이것은 통신사와 같지 않습니다'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 '저들이 말하기를 지금 천하의 각국이 군사를 쓰는 때를 당하여 귀국의 산천이 매우 험한 것으로는 싸우고 지키기에 넉넉하나 군비가 매우 허술하다,하며 부국강병의 방법을 누누이 말하였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은 교린하는 성심에서 나온 듯 하다. 우리 나라는 군사의 수효가 매우 모자란다'하였다(《承政院日記》, 고종 13년 2월 6일).

고종은 신헌의 교섭과정에 대한 보고에서 일본측 사절단의 인사들에 대한 평가와 일본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상황에 대한 관심 가운데 무기와 군대양성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일본측 사신 파견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의정부가 아뢰기를, '접때 일본 使船이 온 것은 오로지 修好 때문이니 우리가 善隣하는 뜻에서도 이번에는 사신을 專委하여 修信해야겠습니다. 사신의 호청은 수신사라 하고 응교 김기수를 특별히 가자하여 차출하되 해조를 시켜 구전으로 단부하고 따라가는 인원은 일을 아는 자로 적당히 가려서 보내되, 이는수호한 뒤에 처음 있는 일이니, 이번에는 특별히 당상관을 시켜 書契를 가지고들어가게 하고, 이 뒤로는 서계를 전례대로 東來府에 내려 보내어 에도(江戶)로 옮겨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承政院日記》, 고종 13년 2월 22일).

일본의 전권대신들이 구호중수를 위해 왔으므로 이번에는 우리가 신의를 새롭게 한다는 뜻에서 수신사를 임명하여, 수신과 함께 일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신사 파견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쿠로다는 조선측의 사신 파견을 6개월 이내에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선정부는 일본의 예상을 뒤엎고

즉각적으로 이에 응했다. 이와 같은 대응 태도는 조선정부가 대외정세의 변동에 대해 그만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정부가 조약체결 직후 곧 바로 수신사를 파견하기로 했던 것은 메이지유신 후 일본국내의 '物情詳探'이 목적이었다. 고종의 지시를 받은 수신사 일행이 도쿄에 체재하는 동안 보인 일련의 행동들은 일본 국내 물정 가운데 조선정부의 관심이 군사시설과 군사력에 있었음을 보여준다.27)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추이에 대한 조선정부의 관심과 위기의식은 이미 강화도조약 체결 직후 전권대관 신헌의 다음과 같은 보고에서도 확인되고 있었다.

지금 천하의 대세를 보건대, 각국에서 무력을 사용하였고 앞뒤로 수모를 받은 것도 벌써 여러 차례나 됩니다. 병력이 이와 같다는 것이 만일 각국에 전파되면 신이 모르긴 하겠지만 그들의 멸시가 어떠하겠습니까. 신은 정말 몹시 걱정이 됩니다(《承政院日記》, 고종 13년 2월 6일).

고종을 비롯한 조선정부 집권층의 이러한 위기감은 현실에 근거한 것이었다. 5년을 주기로 서양 열강의 거듭된 침략전쟁을 겪었고, 일본의 무력시위에 굴복하여 결국 개항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정부가 군사력 강화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가장 절실한 문제가 자위력을 갖추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군사력 증강정책은 1880년을 전후하여 추진되었던 조선정부의 일련의 개화정책과 맞물리면서 구체화되었다.28) 이와 같이 개항 이후 조선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일본과 근대적인 외교관계로 전환하면서

²⁷⁾ 이와 같은 사실은 6월 1일 金綺秀의 복명관련 기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고종과 김기수의 대화 내용 중 상당부분은 일본의 군수산업, 군비증강 정책의 실상에 관한 것이었고, 그 외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하여 조선을 둘러싼 서양열 강의 형세에 관한 것을 묻고 있었다(金綺秀,《修信使日記》권1, 고종 13년 6월 및 국사편찬위원회,《修信使記錄》, 29~130쪽 참조).

²⁸⁾ 조선정부의 軍備强化政策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근대적인 무기체제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군대조직을 근대적인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단기간 내에 근대적인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못했던 조선정부는 해외로부터 군장비를 도입하고, 근대적인 군사지식을 갖춘 외국인에 의한 군대양성을 정책의 대강으로 삼았다.

도, 대내적으로는 대외정책의 변경을 부인함으로써 개항과 동시에 시도되어야 했던 체제의 정비가 지연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국내체제의 정비는 1880년 말을 전후하여 비로소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정부는 1880년 12월 청국의 총리아문을 모방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한 이래, 1881년 전반기에 영선사와 조사시찰단을 각각 청국과 일본에 파견하였고, 별기군을 창설하는 등 근대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대내적인 체제 정비와 아울러 1880년 이후 조선정부는 대외정책 면에서도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구하였다. 조선정부의 대외적극정책은 청국 양무파 정권의 권유 및 미국의 조선진출 노력과 맞물려 결실(조미수호조규, 1882년)을 맺게 되었다. 조미수호조규 체결 이후 조선은 영국·독일·러시아·프랑스 등과 차례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체제에 완전히 개방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대외정책 방향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던 영국과 청국의 대한반도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미국과조약을 체결하려는 데 대해 국내에서는 개항 이후 잠복해 있었던 개항반대세력의 상소가 줄을 이었으나 조선정부의 개방정책은 이미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2) 조일수호조규 부록 및 통상장정

김기수는 수신사일행이 귀국할 때 일본정부로부터 예조판서 앞으로 보내는 공한을 받아 갖고 왔다. 그 내용은 修好條規 第11款에 의거하여 通商章程의 협상을 위해 外務省의 미야모토 등을 理事官으로 하여 서울에 파견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일행이 귀국한 후 며칠 안된 6월 10일 미야모토 이사관은 서울에 나타났다. 이에 조선정부에서는 刑曹判書 趙寅熙를 講修官으로 임명하여 일본측과 접촉케 하였다. 12일에는 국왕이 미야모토를 접견하고, 賜饌도 베풀었다.

6월 16일(8월 5일)부터 미야모토가 숙소로 정하고 있는 京畿中營(淸水館)에서 양측간의 회담이 개시되었다. 일본측은 이번에도 미리 준비해 온 修好條規附錄案과 通商章程案을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자연히 그 안을 놓고 逐條審議하게 되었다. 일본측에서 제출한 수호조규부록은 모두 13관으로 되어 있었

는데, 그 중 논의의 초점이 되었던 것은 제1, 제2, 제5조관이었다. 제1관은 "일본국 공사의 조선국 수도상주", 제2관은 "일본 외교관 및 그 동반자의 조선내지 여행의 자유", 제5관은 "개항장의 유보지역 설치"였다. 조선측에서는 이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였다. 그러므로 회담은 난항을 거듭하였다. 제1관은 앞서 강화도에서 체결한 수호조규 제2관에 제시된 "該當 使臣의 駐留期間의長短은(원문은 該臣駐留久暫이라고 되어 있다) 그때의 사정에 맡긴다"는 내용과관련을 갖고 있었다. 조선측은 이 조관을 잠시 동안의 체류를 말한 것이고, 공사관을 설치하여 '영주'함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제1관을 반대하게 되자 제2관, 즉 공사의 내지여행과 가족동반과 같은 문제도 도저히용납될 여지가 없었다. 제5관의 개항장의 유보지역에 대해서는 일본측이 자기들 里程으로 10리, 즉 조선의 100리를 요구한 데에 대해 조선측은 이를 반대하여 부산항에 국한하되 조선里程의 10리를 주장하였다.

회담은 6월 16일부터 20일 동안에 13회나 열렸다. 그리하여 간신히 타결을 보게 되어 7월 6일(8월 24일) 조인을 하게 되었다. 제1관, 즉 일본국공사의 조선국 수도 상주관 설치 문제는 완전히 삭제되고, 제2관은 약간 수정되어 일본관리(관)에 한해서 조선내지의 여행을 인정하였으며, 제5관의 유보지역은 조선이정 10리로 축소하였다. 그러나 그 밖의 조관은 일본측이 제시한 원안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채택하였다.

이때 조인된 수호조규부록은 수호조규를 보충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일본으로 하여금 정치적·경제적으로 조선에 침투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튼튼히 마련해 주게 되었다. 특히, 제7관의 "일본국 인민은 본국에서 현행되는 貨幣들로 조선국 인민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교환할 수 있으며, 조선국 인민은 그 교환된 일본의 화폐들로써 일본국 토산의 貨物들을 買得할 수 있으며, 이로써 조선국이 지정한 항구들에서 인민들은 상호 통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일본화폐의 조선내 유통을 의미한 것이었다.

강수관 조인희와 이사관 미야모토 사이에는 이상의 수호조규부록 외에 통상장정이 또한 체결되었다. 6월 16일 제1차 회담이 열렸을 때 미야모토는 조인희에게 수호조규부록에 대한 설명을 끝낸 직후, 통상장정안 10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축조 설명을 하면서 이 안은 종전의 관례를 성문화

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청취한 조인희는 정부에 請訓하겠다고 답할 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8일 제2차 회담이 열렸을때 조인희는 그 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각서를 발표함으로써 극히 간단하게 처리하였던 것이다.

'무역규칙'으로 이름이 붙은 통상장정은 일본측이 내놓은 원안에 1개조가더 추가되어 11칙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합법적으로 승인한 조약이었다. 11칙 중에서 특히 제6칙과 제7칙은 조선의경제에 크나 큰 타격을 주었던 조목이었다. 제6칙은 "사후 조선국 항구들에주류하는 일본인은 粮米 및 잡곡을 수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7칙은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선박들은 港稅를 납부치 않음"으로 되어 있다.

제6칙으로 조선의 미곡이 대량 일본으로 유출하게 되었고, 제7칙으로 일본 선박이 항세, 즉 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 특히, 수호조규부록과 통상장 정이 조인된 7월 6일에 강수관 조인희는 일본국 이사관 미야모토의 조회에 대한 회답 공한 속에서 "화물출입에도 특별히 수년간은 면세를 허용한다"고 함으로써, 일본은 선박의 항세뿐만 아니라, 상품의 수출입세까지 면제를 받 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측이 통상조약 관례에 대한 조선측의 무지를 이용하여 관세조항을 제외하고, 협상을 임했던 사실은 미야모토가 단독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미야모토가 본국을 떠나기 앞서 太政大臣으로부터 받은 훈령 중에 조선측이 관세징수를 주장하게 되면 수출입세를 從價 5分으로 정하고, 수세에 관한 1조항을 통상장정 속에 첨가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선측에서 강경히 관세 징수를 주장할 때에 제시하려는 안이었고, 일본정부는 처음부터 무관세를 관철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강화도에서 수호조약이 체결된 뒤 일본정부의 태정대신 산죠 사네토미는 외무성에게 지시하여 무역규칙의 초안을 조속히 작성토록 하였다. 그런데 수호조약 체결을 직접 담당했던 쿠로타와 이노우에 가오루는 이 사실을 알고 자기들의 견문과 지식을 토대로 하여, '日鮮修好條規의 이행운영에 관한 上申의 件'이란 의견서 속에서 수호조규 체결 때와 마찬가지로 협상장소를 강화도로 정하고 군함을 파견하여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또 앞으

로의 조일무역에 있어서는 관세를 정수하지 않는 것이 무역촉진을 위한 상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의견은 받아들여져 외무성에서는 무관세 강요의 원칙을 굳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10개조로 된 무역규칙안이 작성되게 되었고, 그것을 미야모토에게 부과하였다. 미야모토가 서울에 이르러 조선측과 회담할 때에 조선측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관세조항이 빠진 무역규칙이 성립된 것이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측의 무지와 일본측의 기만 외교에 농락되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관세무역규칙이 조·일간에 체결되었다. 무관세조 항은 1883년 7월에 수정될 때까지 7년간이나 실시되었는데 수호조규 속에들어 있는 치외법권과 수호조규부록 속에 들어 있는 일본화폐유통권과 아울러 개항 직후 일본 세력의 조선 침투를 방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29)

【부록 1】朝日修好條規

大日本國,與大朝鮮國素敦友誼,歷有年所,今因視兩國情意未治,欲重修舊好,以固親睦,是以日本國政府簡特命全權辨理大臣陸軍中將兼參議開拓長官黑田清隆·特命副全權辨理大臣議官井上馨,詣朝鮮國江華府,朝鮮國政府簡判中樞府事中德·副摠管尹滋承,各遵所奉諭旨,議立條款,開列于左.

- 第1款 朝鮮國自主之邦,保有與日本國平等之權,嗣後兩國欲表和親之實,須以彼此同等之禮相待,不可毫有侵越猜嫌,宜先將從前爲交情阻塞之患諸例規,一切革除,務開擴 寬裕弘通之法,以期永遠相安.
- 第2款 日本國政府,自今十五個月後,隨時派使臣,到朝鮮國京城,得親接禮曹判書,商議交際事務,該使臣駐留久暫,共任時宜,朝鮮國政府亦隨時派使臣,到日本國東京,得親接外務卿,商議交際事務,該使臣駐留久暫,亦任時宜.
- 第3款 嗣後兩國往來公文, 日本用其國文, 自今十年間, 別具譯漢文日本, 朝鮮用眞文,
- 第4款 朝鮮國釜山草梁項,立有日本公館,久已為兩國人民通商之區,今應革除從前慣例 及歲遣船等事,憑準新立條款,措辨貿易事務,且朝鮮國政府,須別開第五款所載之二 口,准聽日本國人民往來通商,就該地賃借地基,造營家屋,或僑寓所在人民屋宅,各 隨其便.

²⁹⁾ 이광린, 앞의 책, 85~88쪽.

- 第5款 京畿(圻)·忠清·全羅·慶尚·咸鏡五道中沿海,擇便通商之港口二處,指定地名,開口之期,日本曆自明治九年[1876]二月,朝鮮曆自丙子年二月起算,共爲二十個月.
- 第6款 嗣後日本國船隻,在朝鮮國沿海,或遭大風,或薪粮窮(究)竭,不能達指定港口,即得入隨處沿岸支港避嶮,補缺修繕船具,買求柴炭等,其在地方供給費用,必由船主賠償,凡是等事,地方官民須特別加意憐恤,救援無不至,補給勿敢吝惜,倘兩國船隻,在洋破壞,舟人漂至,隨處(所)地方人民,卽時救恤保全,禀地方官,該官護還其本國,或交付其就近駐留本國官員.
- 第7款 朝鮮國沿海島嶼巖礁,從前無經審檢(撿),極爲危嶮,准聽日本國航海者,隨時測量海岸,審其位置深淺.編製圖志,俾兩國船客以得避危就安.
- 第8款 嗣後日本政府,於朝鮮國指定各口,隨時設置管理日本國商民之官,遇有兩國交涉 案件,會商所在地方長官辨理.
- 第9款 兩國旣經通好,彼此人民各自任意貿易,兩國官吏毫無干預,又不得限制禁阻,倘有兩國常民欺罔衒賣,貸借不償等事,兩國官吏嚴拏該逋商民,令追辨債欠(缺),但兩國政府不能代償.
- 第10款 日本國人民,在朝鮮國指定各口,如其犯罪交涉朝鮮國人民,皆歸日本官審斷,如朝鮮國人民犯罪,交涉日本國人民,均歸朝鮮官查辦,各據其國律訊斷,毫無回護袒庇, 務昭公平允當.
- 第11款 兩國旣經通好,須另設立通商章程,以便兩國常民,且倂現下議立各條款中,更應補添細目,以便遵照條件,自今不出六個月,兩國另派委員,會朝鮮國京城或江華府,商議定立.
- 第12款 右十一款議定條約,以此日爲兩國信守遵行之始,兩國政府不得復變革之,永遠信 遵,以敦和好矣,爲此作約書二本,兩國委任大臣各鈴印,瓦相交付,以昭憑信.

【早록 2】朝日修好條規附錄(譯文)30)

日本國政府는 前에 特命全權辦理大臣 陸軍中將 兼 參議開拓長官 黑田淸隆, 特命副全權辦理大臣議官 井上馨으로 하여금 朝鮮國 江華府에 派遣하고 朝鮮國政府는 大官判中樞府事 申 檍, 副官都摠府摠管 尹滋承에게 委任하여 日本曆 明治9年 2月 26日 朝鮮曆 丙子年 2月 初2日 雙方이 서로 調印하고 修好條規 第11款의 趣旨에 따라 日本國政府는 理事官 外務大丞 宮本小一에게 委任하여 朝鮮國 京城에 派遣하고 朝鮮國 政府는 講修官議政府堂上 趙寅熙에게 委任하여 相互 會同하여 議定한 條款을 左에 開列한다.

³⁰⁾ 번역문은 董德模, 《朝鮮朝의 國際關係》(博英社, 1990) 부록을 참고하였다.

- 第1款 此後 各港口에 駐留하는 日本國人民,管理官은 朝鮮國沿海地方에서 日本國諸 船이 遭難하여 緊急을 要할 때는 地方官에게 告하고 該地에 갈 수 있는 道路를 經過할 수 있다.
- 第2款 此後 使臣 及 管理官이 發하는 文移書信을 郵送하게 되면 費用은 事後辨償하고 또는 朝鮮國人民을 雇用하여 專差할 수도 있으니 各從其便할 것이다.
- 第3款 議定한 朝鮮國 通商各港에 있어서 日本國 人民이 地基를 租賃하여 住居함은 各其 地主와 相議하여 그 價格을 定한다. 朝鮮國政府에 屬하는 地는 朝鮮國人民으로부터 官에 納租합과 同一한 租額을 納付하고 居住한다. 釜山草梁項公使館에는 從前에 同國政府로부터 守門・設門을 設定하였으나 今後 이를 撤廢하고 新定의程限에 依하여 標識을 境界上에 設立하되 他의 二港도 역시 此例에 準한다.
- 第4款 今後 釜山港에 있어서는 日本國人民이 通行할 수 있는 道路의 里程은 防波堤 로부터 起算하여 東西南北 各 直徑 10里(朝鮮里法에 依한다)로 定한다. 東萊府中 에 있어서는 里程外라 할지라도 特別히 往來할 수 있다. 이 里程內에 있어서 日本 國 人民은 自由로 通行하고 其他의 産物 및 日本國産物을 賣買할 수 있다.
- 第5款 議定한 朝鮮國 各港에 있어서 日本國人民은 朝鮮國人民을 賃雇할 수 있으며 朝鮮國人民은 그 政府의 許可를 받으면 日本國에 往來함도 無妨하다.
- 第6款 議定한 朝鮮國 各港에 있어서 日本國人民이 萬若 死亡할 때는 適宜의 地處를 選拔하여 埋葬할 수 있다. 但 他의 二港의 埋葬地는 釜山埋葬地의 遠近의 例에 依한다.
- 第7款 日本國人民은 日本國의 諸貨幣로서 朝鮮國人民의 所有物과 交換할 수 있고 朝鮮國人民은 그 交換한 日本國의 諸貨幣로 日本國所産의 諸貨物을 買得할 수 있 으니 以是로 朝鮮國의 指定한 諸港에 있어서는 人民相互間에 通用할 수 있다. 日 本國人民은 朝鮮國의 銅貨幣를 使用運輸할 수 있다. 兩國人民으로 敢히 錢貨를 私 鑄하는 者가 있다면 各 그 國家의 諸法律에 비추어 處斷한다.
- 第8款 朝鮮國民은 日本國民으로부터 買得한 貨物 或은 贈與를 받은 諸物品을 自由 로 使用하여도 無妨하다.
- 第9款 修好條規 第7款에 記載된 趣旨에 따라 日本國의 測量船이 小船을 내어 朝鮮 國沿海를 測量하다가 風雨에 逢着하거나 或은 干潮로서 本船에 歸還할 수 없을 時는 該處里程으로부터 그 近傍의 人家에 安着시키고 萬若 需用의 物品이 있으면 官廳으로부터 辨給하고 後日 그 費用을 清算한다.
- 第10款 朝鮮國은 아직 海外諸國과 通信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日本國은 修好經年하여 締盟한 諸國과 友誼를 保有하고 있는 關係上 今後 諸國의 船舶이 風波로 困境에 빠져 沿邊地方에 漂着하게 된다면 朝鮮國人民은 모름지기 이를 愛恤 않을 理가 없는지라 諸漂民이 그 本國에 還送되기를 顧望할 때에는 朝鮮國政府로부터 各港口駐留의 日本管理官에게 遞致하여 本國으로 送還한다. 該官員은 이를 應諾하여야 한다.
- 第11款 右10款의 里程及 이에 添附한 通商規則은 모두 修好條規와 同一한 權利를

가진다. 兩國政府는 遵行하여 違反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此各款中에 萬若 兩國人民이 交際貿易을 實踐함에 있어 障害가 있다고 認定되어 不可不 釐革하게 될 境遇에는 兩國政府는 그 議案을 速히 作成하여 一個年前에 通知하여 協議決定하여야한다.

> 大日本國紀元2536年明治9年8月24日 理事官外務大丞 宮本小一 大朝鮮國開國485年丙子7月初日 講修官議政府堂上 趙寅熙

「原 文]

日本國政府曩遣特命全權辨理大臣陸軍中將兼參議開拓長官黑田淸隆特命副全權辨理大臣議官井上馨詣朝鮮國朝鮮國政府派大官判中樞府事申德副大官都摠府副摠管尹滋承會同于江華府日本曆明治九年二月十六日朝鮮曆丙子年二月初二日協議妥辨互相調印今照其修好條規第11款旨日本國政府委任理事官外務大丞宮本小一詣朝鮮國京城朝鮮國政府委任講修官議政府堂上趙寅熙會同擬議其所定立條款開列于左

- 第1款 各港口駐留日本國人民管理官於朝鮮國沿海地日本國諸船致敗緊急得告地方經過 該地沿路
- 第2款 使臣及管理官所發之文移書信郵致費銀事後辦償或雇人民專差各從其便
- 第3款 在議定朝鮮國通商各口日本人民之租賃地基居住者須與地主商議以定其額屬地納 租與朝鮮國人民同如夫釜山草梁項日本舘從前設有守門設門從今廢撤一依新定程限立 標界上他二港口亦照此例
- 第4款 嗣後於釜山港口日本國人民可得間行道路里程自埠頭起算東西南北各直徑十里(朝鮮里法)為定至於東萊府中一處特為往來於此里程內日本國人民隨意間行可得賣買土宜 及日本國物産
- 第5款 在議定朝鮮國各口日本國人民可得賃雇朝鮮國人民若朝鮮國人民得其政府之允准 來於日本國亦無礙
- 第6款 在議定朝鮮國各口日本國人民恕病故可得撰適宜之地以埋葬一依草梁遠近爲之
- 第7款 日本國人民可得用本國現行諸貨幣與朝鮮國人民所有物交換朝鮮國人民用其所交換之日本國諸貨幣以得買日本國所産之諸貨物以是在朝鮮國指定諸口則可得人民互相 通用朝鮮國銅貨幣日本國人民得使用運輸之事兩國人民敢有私鑄錢貨者各用國律
- 第8款 朝鮮國人民所買得於日本國人民貨物或其贈遺之各物隨意使用無妨
- 第9款 從修好條規第7款所載有日本國測量船放小船測量朝鮮國沿海或際風雨或潮退不能 歸本船該處里正安接近地人家如有需用物品自官辦給追後計價.

- 第10款 朝鮮國未曾與海外諸國通信而日本則異于此修好經年所締盟有友誼嗣後諸國船舶 爲風波所窘迫漂到沿邊地方則朝鮮國人民湏於理無不愛恤之該漂民望送還于其本國朝 鮮國政府遞致各港口日本國管理官送還于本國.
- 第11款 右十款章程及通商規則共有與修好條規同一權利兩國政府可遵行之無敢有違然而 此各款中若兩國人民於交際貿易實踐有認頓爲障碍不可不釐革則兩國政府速作議案前 一年報知之以協議改立.

大日本國紀元2536年明治9年8月24日 理事官外務大丞 宮本小一 大朝鮮國開國485年丙子7月初日 講修官議政府堂上 趙寅熙

【早록 3】朝鮮國議定諸港日本人民貿易規則(譯文)

第1則 日本國商船이(日本國政府 所管의 軍艦 및 通信專用 港船을 除外함) 朝鮮國에서 許可한 諸港에 入港할 때에는 船主 또는 船長은 日本國人民貿易管理官으로부터 交付된 證書를 3日內에 朝鮮國官廳에 提出하여야 한다. 證書라 함은 船主 所持의 日本國船籍, 航海公證 等을 入港日로부터 出港日까지 管理官에게 提出하여 두고 管理官으로부터 此證書의 保管證票를 받는다. 이것을 日本國 現時 施行의 商船成規라 한다.

船主가 本港에 碩泊하여 此證票를 朝鮮國官廳에 提出하고 日本國의 商船임을 證明한다. 이때 船主는 또한 其記錄簿를 提出하여야 한다. 卽 記錄簿라 함은 船名 및 本船의 出發한 地名, 積荷의 噸數 石數(모두 船舶의 容積을 算定하는 이름) 船長의 姓名, 乘務員數, 船客의 姓名을 詳記하여 船主가 鈴印하여야 한다. 이때 船主는 또 本船 積荷의 報單 및 船內所用雜物의 簿記를 提出하여야 한다. 卽 報單이라는 것은 荷物의 名, 或은 其物質의 實名, 荷主의 姓名, 貨物의 斤量, 丈尺, 記號 番號를 詳記하여(記號, 番號없는 荷物은 이 例에 따르지 않는다) 通知한다. 이 報單 및 其他 書類는 그 어느 것이나 日本文을 사용하고 漢譯文은 要치 않는다.

- 第2則 日本商船 進港의 積荷를 揚陸코자 할 때에는 船主 或은 荷主로부터, 새로 積荷의 物名, 元價, 斤量, 個數를 詳記하여 朝鮮國官廳에 屆出하여야 하며 官廳은 屆 出書를 받으면 急速히 下船免狀을 交付하여야 한다.
- 第3則 船主 或은 荷主는 第2則의 免狀을 받은 後 그 荷物을 揚陸한다. 朝鮮國條約官 東가 萬若 그 貨物을 檢査코자 할 경우에는 荷主는 감히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역시 注意하여 檢査하고 이로서 毀損하여서는 안된다.
- 第4則 出港荷物은 荷主가 第2則의 入港積荷屆出書의 樣式에 準하여 船名 및 荷物의 品名 및 또는 個數를 詳記하고 朝鮮國官廳에 屆出하여야 하며 官廳은 速히 이를

許可하여 出港荷物免狀을 交付하여야 한다. 荷主는 免狀을 받으면 本船에 積荷할 수 있다. 朝鮮官廳이 萬若 그 荷物을 檢査코저 할 때에는 荷主는 감히 이를 拒否 하지 못한다.

第5則 日本國商船이 出港을 要할 때는 前日 正午前에 朝鮮國官廳에 通知하여야 한다. 官廳은 報告를 받으면 이미 받아 두었던 證書를 還付하고 出港免狀을 交付한다. 日本國郵便船은 成規의 時限에 不拘하고 朝鮮國官廳에 通知함으로써 隨時 出入할 수 있다.

第6則 今後 朝鮮國 諸港口에서 粮米 及 雜穀도 輸出入할 수 있다.

第7則 港稅

連檣橋의 商船 蒸汽商船은 税金 5圓

單橋橋의 商船은 稅金 2圓(荷物 5百石 以上 積荷)

單檣檣의 商船은 稅金 1圓拾錢(荷物 5百石以下 積荷) 全部 附屬脚艇을 除外함 日本政府에 所屬하는 諸船舶은 港稅를 納付하지 않는다.

※(脚艇免稅의 事項은 日本文에는 末項에 있으나 朝鮮文에는 이를 第1項에 掲載 한다.)

- 第8則 朝鮮國政府 或은 人民은 諸物品을 不開港場의 港岸에 輸送하고저 할 때에는 日本國商船을 雇用할 수 있다. 雇主가 萬若 人民이라면 朝鮮政府의 免狀에 準하여 雇役하여야 한다.
- 第9則 日本國船隻이 萬若 通商許可를 받을 朝鮮國의 港口에 來港하여 私的으로 賣買함을 該地方官이 發見하였을 때에는 最近處管理官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管理官은 그 所得의 錢物一切를 沒收하여 朝鮮國官廳에 交付하여야 한다.

第10則 鴉煙片 販賣를 嚴禁한다.

第11則 兩國이 現在 定하는 規則은 今後 兩國商民의 貿易形況에 따라 各委員은 事情을 考慮하여 商議 改正增加할 수 있다. 이를 爲하여 兩國委員은 各各 調印하고 即日부터 遵守하게 한다.

大朝鮮國 開國 458年丙子7月6日 講修官議政府堂上 趙寅熙 大日本國 紀元 2536年明治9年8月24日 理事官 外務大丞 宮本 小一

[原 文]

第1則 日本國商船(除日本國政府所管之軍艦及轉用通信之諸船)入朝鮮國, 准聽貿易諸港 口之時, 船主或船長, 須呈日本國人民管理官所發給之證書於朝鮮國官廳, 不出三日. 所謂證書者,船主所帶日本國船籍·航海公證之類,自其進口之日至出口之日,交付之管理官,管理官即付以接受各書證票,是爲日本國現行商船成規,船主本港碇泊中,轉 呈斯證書於朝鮮國官廳,驗明爲日本國商船.

時船主又呈其記錄簿. 所謂記錄者, 船主詳記本船之名, 發本船之地名, 本船所積載之噸數·石數(共算定船舶容積之名)船長姓名, 船內水手之數目, 搭載旅客之姓名, 而船 主鈴印者也.

此時船主又呈本船裝運貨物之報單,及船內應用雜物之簿記.所謂報單者,詳細開明貨物之名,或其物質之實名,貨主之姓名·記號·番號(不用記號番號之貨物 不在此例)報知之也,此報單及呈明諸書之類,悉用日本國文,無副譯漢文,

- 第2則 日本國商船起載進口船貨之時, 船主或貨主, 須更呈明其貨物之名及元價·斤量· 數目於朝鮮國官廳, 官廳得呈明, 須速發給卸貨准單.
- 第3則 船貨主得第二則准聽之後, 須起載其貨物, 朝鮮國官吏要驗明之, 貨主無敢拒之, 官吏亦須小心驗明. 無或敢爲之致毀損.
- 第4則 出口之貨物,貨主照第二則進口貨報單之式,呈明落貨之船名及貨物之名數於朝鮮國官廳,官廳須速准聽之,發給出口貨准單,貨主得准單,即落載于本船,官廳如要驗查 其貨物,貨主無敢拒之.
- 第5則 日本國商船要出口,須於前日午牌前,報知朝鮮國官廳,官廳得報,須還付前日所 收領之證書,以發給出口准單.

日本國郵便船, 得不由成規之時, 限出口, 亦必報知官廳,

第6則 嗣後於朝鮮國港口, 米及雜穀得輸出入, 若朝鮮國歲荐凶歉, 日本國人民, 隨朝鮮 國政府所望, 粮米及雜穀得輸出入, 數年後返償, 亦無妨.

第7則 港稅.

連桅橋商船,及蒸氣商船,稅金五圓(除附屬脚艇),單桅橋商船,稅金貳圓(載得五百石以上貨物),單桅橋商船,稅金壹圓五十錢(載得五百石以下貨物),屬日本國政府諸船舶,不納港稅.

- 第8則 朝鮮國政府或其人民,除指定貿易口之外,欲運輸各物件於他口岸,得雇日本國商船,雇主如係人民,照朝鮮國政府准單,而後雇役.
- 第9則 日本國船隻,如到不准通商朝鮮國口岸,私爲買賣,該處地方官查出,交付就近管理官,管理官將所有錢物,一倂沒入,交遞朝鮮國官廳.
- 第10則 嚴禁鴉片烟販賣.
- 第11則 兩國現定規則,嗣後從兩國商民貿易形況如何,各委員得隨時酌量事情,會商改 正,爲之兩國委員各鈐印,卽日遵行.

大日本國紀元二千五百三十六年明治九年八月 日 理事官 外務大丞 宮本小一大朝鮮國開國四百八十五年丙子 月 日 講修官 議政府堂上 趙寅熙

〈崔德壽〉

2. 개항 초기의 조청관계

1) 청국 북양대신 이홍장의 서양 각국과의 수교권고

興宣大院君 李昰應(1820~1898)을 하야시키는데(고종 10년:1873년 11월) 중요한 구실을 한 것은 閔升鎬(1830~1874), 閔奎鎬(1836~1878), 趙寧夏(1845~1884) 등이 중심이 된 척족세력이었다. 그러나 아직 정치적 식견이나 경험이 부족한 이들을 배후에서 도운 사람은 대원군의 정적인 전 좌의정 李裕元 (1814~1888)이었다. 그가 국왕 고종의 친정과 동시에 영의정으로 발탁된 것도 그런 논공이었다고 할 수 있다.1)

국왕이나 국왕의 친정에 협력하고 있는 척족은 書契의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야기된 고종 9년(1872) 이후의 조·일 양국 사이의 긴장, 즉 국교 중단사태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대원군이 취해 온 대일 강경정책을 수정하려고 하였다. 일본과 서계 수리문제를 타협함으로써 전통적인 交隣關係를 회복,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국외정세에 밝은 朴珪壽(1807~1877)를 우의정에 임명한 것도(12월) 그러한 배려였던 것으로 생각된다.2)

그러나 일본 국서의 수리, 즉 대일국교 조정문제는 선뜻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거기에는 전통적인 배일감정도 작용하였겠지만, 대원군의 위세가 廟堂을 지배하여 급격한 대일정책의 수정을 용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국왕이나 척족은 청국의 지지를 얻어 묘당의 배일론을 깨트릴 것을 고려하게 되었고, 그러한 사명이 세자 책봉을 주청하기 위하여 청국으로 떠난(고종 12년 7월) 이유원에게 맡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유원은 이 무렵영의정에서 물러나 領中樞府事로 있었다.3)

奏請使 이유원은 북경에 도착하여(10월) 세자 책봉문제를 매듭짓는 한편 비밀리에 總理衙門 과원들과 대일국교 조정문제를 협의하였다. 또 귀국하는

¹⁾ 宋炳基,《近代韓中關係史研究》(檀國大 出版部, 1985), 12~13\.

²⁾ 宋炳基, 위의 책, 13~15쪽.

³⁾ 위와 같음.

길에 直隸 永平府에 들러 知府 游知開(?~1898)와 면담하고, 그를 통하여 청국 외교를 이끌고 있는 北洋大臣 李鴻章(1823~1901)에게 서함을 보내었다. 12월 13일자로 이홍장에게 전달된 이 서함에는 인사말 이상의 어떤 공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서함도 대일국교 조정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4)

이유원의 서함을 받은 이홍장은 바로 다음 날인 14일자로 回函을 보내고 있다. 그는 이 회함에서 조일 양국간의 교섭이 어떠한지를 묻고, 청국이 '閉 關自治'를 포기하고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을 밝히고 있다. 비록 조선의 대일국교 조정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 만, "외교해야 한다는 뜻을 간략하게 언급함"으로써 일본과의 국교가 필요하 다는 뜻을 밝힌 것이었다.5)

주청사 이유원이 청국으로 떠난 직후 운요호(雲揚號)사건이 일어났고(고종 12년 8월), 그가 귀국 복명한 것은 일본이 전권을 江華府로 파견한다는 통고를 해오기 직전인 고종 12년 12월 중순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과의 국교가 필요하다는 이홍장의 회함도 도착되었을 것이다. 이 이유원의 복명이나 이홍장의 회함은 국왕이나 척족으로 하여금 그들이 추진하고있는 대일국교 조정방침이 청국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운요호사건에 따른일본과의 분규에도 유화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6)

또 조일 양국대표가 강화부에서 회담하기 직전에 청국 禮部에서 보낸 咨文도 도착하였다(1876. 1). 운요호사건이 일어나자 일본은 森有禮(1847~1889)를 주청공사에 임명, 북경으로 파견하였다. 그는 총리아문과 접촉을 갖고 조청간의 이른바 종속관계에 대하여 문의하는 한편, 일본은 조선에 사절을 파견하여운요호사건을 협의하고 수호조약도 체결할 뜻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청국 예부에서는 총리아문과 삼유례 사이에 왕복한 문서와 이에 대한 총리아문의 견해를 밝힌 上奏文 등 일건문서를 조선으로 보내왔던 것이다.7)

⁴⁾ 위와 같음.

⁵⁾ 위와 같음.

⁶⁾ 宋炳基, 위의 책, 15~16쪽.

이유원의 복명이나 이홍장의 회함을 통하여 조일국교문제에 관한 청국정부의 분위기를 점작하고 있었던 국왕이나 척족은 이 자문을 통하여 일본이 요구하는 바가 수호조약 체결에 있으며, 청국은 이 조약의 성립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만큼 확인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유원의 복명, 이홍장의 회함과 함께 예부의 자문도 조선이 일본과의 수교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8)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청양국의 원로대신 이유원과 이홍장이처음으로 서함을 주고 받은 것은 고종 12년(1875) 12월 중순이었다. 이후 두사람 사이에는, 조선이 대미수교방침을 청국측에 통보하는 고종 18년(1881) 초까지, 거의 매년 서함이 왕래되었다. 그리고 이홍장은 이 서함을 통하여이유원, 즉 조선측에 "러시아인을 備禦하고 일본에 대응하는 방책에 대하여늘 언급하였다"의고 한다. 그 중에서도 우선 주목되는 것이 고종 14년 10월 15일자 이유원의 서함에 대한 회함으로 보내 온 고종 15년 9월 4일자 서함이 아닌가 한다.10)

막료 薛福成(1838~1894)을 시켜 작성한 이 서함에서, 이홍장은 ① 일본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분수를 깨닫기 시작하였으며, 러시아를 경계하여 조선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 한다는 것, ② 영·미 등 서양 여러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어 그 뜻이 통상에 있을 뿐 남의 토지를 탐내지 않는다는 것, ③ 그러나 러시아가 도모하는 바는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은밀한 대비가

⁷⁾ 宋炳基, 위의 책, 16쪽 주22.

^{-----, 〈}고종초기의 외교〉(《한국민족독립운동사》1, 국사편찬위원회, 1987), 4 7~48쪽.

[《]同文彙考》4 (國史編纂委員會, 1978), 3746~3749等(乙亥 禮部知會抄錄 總理衙門與日本使臣往來節略及原奏咨回咨 謝禮部兼程飛咨兼陳與日本使臣辦理條約咨).

⁸⁾ 위와 같음.

⁹⁾ 原田環、(朝中兩截體制成立前史-李裕元と李鴻章の書簡を通して-)(《近代朝鮮の社會と思想》,東京,未來社,1981),70~71等.

宋炳基, 앞의 책, 16쪽

[《]清季中日韓關係史料》2(臺灣: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1972), 373等,

¹⁰⁾ 權錫奉、〈李鴻章의 對朝鮮列國立約勸導策에 대하여〉(《歷史學報》21, 1963), 105쪽.

宋炳基, 위의 책, 16~17쪽.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조선은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 영·미와의 입약·통 상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¹¹⁾

청국의 당로자들은 江華島條約이 성립(1876)함으로써 운요호사건으로 빚어진 조일 양국 사이의 분규가 평화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일본의 조선 침략보다 러시아의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러시아는 운요호사건 이후 黑龍江 지역에 파병하여 남진할 형세를 보이고 있으며, 터어키와의 전쟁(露土戰爭, 1877~1878)을 끝내는 대로 그 방향을 조선으로 옮길 것을 우려하였다. 이홍장의 이 서함은 바로 그러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었다.12)

이처럼 이홍장을 비롯한 청국의 당로자들이 조선을 둘러싼 동북아정세, 특히 일본과 러시아의 동정에 주의를 기울여 온 것은 조선의 안전이 東三省(滿洲)의 안전, 나아가 중국 본토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가령 임진왜란 때 明의 원군 파견 배경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1870년대로 들어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위협이 증대되고 여기에 러시아의 남하에 따른 불안이 곁들여져 그것이 한층 더 고조되었던 것이다.13)

이 무렵 청국의 대러시아 관계는 伊犁((Ili, Kulja)문제로 악화되어 갔다. 러시아는 新疆省 일대를 휩쓴 회교도의 반란을 틈타 이 지역 북부의 요충인이리를 강점하였었다(1871). 청국이 반란을 진압하는 대로 반환하겠다는 것이었지만, 반란이 진압되었음에도(1877)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청국은 사절을 러시아로 파견하여(1878) 다시 반환을 약속받았지만(Livadia조약, 1879), 그내용은 청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두 나라 사이에는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14)

청국이 이리 문제에 열중하고 있을 무렵인 고종 16년(1879) 2월에 일본은

¹¹⁾ 宋炳基, 위의 책, 23~25쪽.

¹²⁾ 宋炳基, 위의 책, 21~22쪽.

¹³⁾ 위와 같음.

¹⁴⁾ 宋炳基, 위의 책, 59~60쪽.

그 틈을 타 돌연 琉球를 병합하였다. 이 사건은 이제까지 청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느 정도의 확신을 동요시켜 일본이 머지않아 조선마저 병탄하리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조선 병탄은 물론 청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였다. 이 사건은 자연 청국 당로자의 관심을 러시아로부터 일본으로 되돌리게 하였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국은 조선문제에 깊이 개입할 수가 없었다. 조선과 청국은 朝貢體制(tribute system)하에서 宗藩關係를 맺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청국은 전통적으로 조선의 '政敎 禁令'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실적 으로 조선문제에 개입하고 나아가 그 안전을 책임질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 하였기 때문이었다.16)

이런 상황하에서 청국이 선택한 대책은 조선의 외정에 비공식적으로 간여하는 방식, 즉 이홍장으로 하여금 그와 서함을 왕래하여 온 이유원을 통하여조선측에 서방 여러 나라와 입약 통상하도록 종용하는 것이었다. 조선을 이른바 條約體制(treaty system)에 편입시켜 한반도에서 열강간의 세력균형을이룩함으로써 일본이나 혹은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총리아문의 주청에 따른 것이었다.17)

이 서양 여러 나라와의 입약 통상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辦理臺灣等處海防大臣 沈葆楨(1820~1879)의 프랑스인 고문 지켈(Giquel, Prosper Marie, 日意格, 1835~1886)이었다. 그는 고종 11년(1874) 일본의 대만 출병에 즈음하여, 일본의 조선 침략을 경고하고 그 대책으로 조선으로 하여금 서양 여러나라와 입약 통상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18)

이어 이홍장도,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종 15년에 이유원에게 보내는 서함에서(9월 4일자) 서양 여러 나라와의 입약 통상론을 시사하였다.

¹⁵⁾ 宋炳基, 위의 책, 25쪽.

¹⁶⁾ 宋炳基, 위의 책, 19~20쪽.

¹⁷⁾ Key-Hiuk Kim, *The Last phase of the East Asian World Order: Korea, Japan, and the Chinese Empire*, 1860~1882(Berkeley: University of Califonia Press, 1980), pp.200 · 239~340.

宋炳基, 위의 책, 23 · 25~27쪽.

¹⁸⁾ 宋炳基, 위의 책, 23쪽.

그런데 이제 그는 총리아문의 주청에 따른 淸廷의 결정에 따라 조선에 대하여 입약 통상론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총리아문의 주청도 前福建巡撫 丁日昌(?~1882)의 '海防事宜摺'(1879)과 주청영국공사웨이드(Wade, Thomas F., 威安瑪, 1818~1895)의 견해가 참작된 것이었다.¹⁹⁾

이홍장이 청정의 결정에 따라 이유원에게 서함을 보내 온 것은 이해 (1879) 7월 9일자로, 역시 막료 설복성을 시켜 작성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것이 이유원에게 전달된 시기는 이해 8월 그믐께라는 견해도 있지만, 7월 그믐께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이 서함은 비밀리에 서양 여러 나라와의 입약 통상을 권고하였다 하여 '密函'이라고 부르는데, 당시 조선에서는 '李書'라고도 하였다.²⁰⁾

이홍장이 '이서', 즉 '밀함'에서 권고한 요지는, 유구 병합으로 미루어 일본의 조선 침략이 임박하였으므로 조선은 서양 여러 나라와 입약 통상하여 일본을 견제하여야 하며, 그것은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備禦의 수단이 되리라는 것, 조선 스스로 武備를 密修하여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리고 서양 여러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경우 그 자신이 적의 충고하겠다는 것도 덧붙이고 있다.²¹⁾

이홍장의 밀함에 대한 이유원의 회답(함)은 부정적인 것이었다. 이유원은 우선 이해 8월 하순에 출발한 譯官 李容肅편에 永平府守 游智開에게 서함을 보내어 이홍장의 입약 통상권고를 간접적으로 거부하였고, 다시 11월에 출발 한 冬至使 韓敬源편에 이홍장에게 서함을 보내어 입약 통상권고를 공식적으 로 거부하였다.²²⁾

이유원이 입약 통상을 거부하는 이유로 든 것은 조선은 외교를 할 겨를이 없을 뿐 아니라, '泰西學問'이나 '內地傳教', '阿片販賣' 등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의 물산은 보잘것 없어 설사 서양 여러 나라와 통상을

¹⁹⁾ 宋炳基. 위의 책. 25~27쪽.

²⁰⁾ 權錫奉, 앞의 글, 113쪽.

宋炳基, 위의 책, 16~17・27~28・32~36쪽.

²¹⁾ 宋炳基, 위의 책, 28~32쪽.

²²⁾ 權錫奉, 앞의 글, 114쪽. 宋炳基, 위의 책, 36쪽.

한다 하더라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23)

이유원의 회함은 私信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것은 국왕과 논의된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종이 외교문제에 적극적이었다고 전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서양 여러 나라와의 입약 통상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이유원의 회함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몇 가지 이유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²⁴⁾

생각건대 조선에서는 유구의 병합으로 청국이 우려하는 만큼 일본의 침략이 임박하였다고 보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한 이유가될 듯하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의 경우에도 동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홍장의 권고는 조선의 당로자들이 보는 일본이나 러시아의 정세를 감안하지 못한 것이었고, 따라서 그만큼 설득력을 갖지 못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²⁵⁾

한편 서양 여러 나라와 갑작스레 입약 통상한다는 것은 중대한 외교적 모험을 감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여유를 두고 검토해 볼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또 서양 여러 나라와의 입약 통상은 이른바 '淸議'가 용납하지 않았다. 당시의 여론하에서는 서양과의 수교 통상 같은 것은 감히 입도 벌리지 못하는 형편이었던 것이다.²⁶⁾

이홍장의 밀함을 통한 청정의 서양 여러 나라와의 입약 통상권고는 이유원의 회함을 통한 조선측의 거부로 일단 좌절되었다. 본래 청국은 서양과의수교를 계기로 조선의 외정에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조청관계의 변화, 혹은 수정을 뜻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주목을 끌게 한다. 그러나 조선측이 서양 여러 나라와의 수교를 거부함으로써 청국의 그러한 의도는 일단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27)

청국의 서양 여러 나라와의 입약 통상권고가 조선측의 거부로 좌절되기는

²³⁾ 宋炳基, 위의 책, 37~39쪽.

²⁴⁾ 權錫奉, 앞의 글, 115쪽. 宋炳基, 위의 책, 39~40쪽.

²⁵⁾ 위와 같음.

²⁶⁾ 위와 같음.

²⁷⁾ 宋炳基, 위의 책, 31~32·41쪽.

하였지만 無爲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조선으로 하여금 국제정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고종 17년(1880) 제2차 修信使 金弘集(1842~1896)의 일본 파견이 그러한 것이었다.²⁸⁾

수신사의 파견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밀함을 받은지 얼마 안되는 8월 하순에 역관 이용숙을 청국에 파견하여 武備講究(무기제조 학습과 군사훈련)를 교섭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아마도 그것은 서양 여러 나라와 입약 통상함으로써 일어날지도 모를 모험과 여론의 압력을 피하는 동시에 이홍장이 밀함에서 권고한 바의 일단을 받아들이는 것이어서, 조선측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고종이 강화도조약 이래 관심을 가져온 신무기 質取의 실현을 위한 첫 시도가 되기도 하는 것이었다.29)

2) 제2차 수신사의 파견과 주일청국사절의 연미론

이홍장의 밀함은 조선으로 하여금 국제정세, 특히 일본의 동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 조선측은 비록 이홍장이 밀함에서 지적한 것처럼 일본의 침략이 임박하였다고 보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보가 적어도 청국의 '伯相' [이홍장]으로부터 있는 이상 현지에 가서 그것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국왕은 제2차 수신사의 일본 파견을 결정하고고종 17년(1880) 3월 하순에 예조참의 김홍집을 수신사로 임명하게 되었던 것이다.30)

미국이 해군제독 슈펠트(Shufeldt, R.W., 1822~1895)를 파견하여 조선측에 수교를 요청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슈펠트는 타이콘데 로가(Ticonderoga)호 世界周航 계획의 하나로서 일본의 소개를 받아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선과 개항교섭을 하라는 해군성 및 국무성의 훈령에 따라 1878

²⁸⁾ 宋炳基, 위의 책, 41~42쪽.

²⁹⁾ 權錫奉、〈領選使行에 對한 一考察-軍械學造事를 中心으로ー〉(《歷史學報》17・ 18, 1962), 279~280쪽.

宋炳基, 위의 책, 42~44쪽.

³⁰⁾ 宋炳基, 위의 책, 51~53쪽.

년 말 미국을 출발, 아프리카・페르샤만・인도양을 거쳐 고종 17년(1880) 3월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입항하였다. 그는 주일미국공사 병햄(Bingham, John A.)의 주선으로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가 일본영사 콘도마스케(近藤眞鋤)에게 하는 소개장을 받아가지고 3월 하순 부산에 입항하였다. 그리하여 곤도를 통해서 東萊府使 沈東臣에게 수교를 희망하는 그의 書契를 조정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심동신의 완강한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나가사키로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31) 국왕이 김홍집을 제 2차 수신사로 임명한 직후의 일이었다.

슈펠트는 다시 빙햄과 같이 이노우에를 찾아가 직접 교섭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해서 슈펠트의 서계는 미국과의 수호통상을 권유하는 이노우에의 서계와 함께 조선측에 전달되었다(6월). 그러나 조선정부는 '美國國書'를 접수할 뜻이 없음을 밝히고 부산주재 일본영사 곤도를 통하여 예의 서계를 반환하였다.32)

수신사 김홍집 일행이 서울을 떠난 것은 이해 5월말, 7월 초순에 동경에 도착하여 약 1개월간 체류하면서 일본의 조야인사는 물론 주일청국공사 何如璋(1838~1891), 參贊官 黃遵憲(1848~1905) 등과 접촉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러시아의 남하라고 하는 급박한 정세 앞에서 오히려 조선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있으며,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 혹은 침략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서양, 특히 미국에 대한 문호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청국공사 하여장의 권고가 크게 작용하였다. 그 만큼 그의 권고는 구체성을 띠고 있었다. 미국과의 입약 통상권고, 즉 聯美論이 그것이었다.33)

하여장이 조선측에 연미론을 제기하게 된 배경으로는, 우선 1880년으로 들어오면서 청국은 러시아와 伊犁문제로 긴장이 더욱 고조된 위에, 러시아가두만강 입구 등지에 계속 병력을 증강하고 있어서 조선이 미구에 그 침략을받으리라 우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하여장은

³¹⁾ 李普珩, 〈Shufeldt提督과 1880年의 朝美交涉〉(《歷史學報》15, 1961), 67~70쪽.

³²⁾ 李普珩, 위의 글, 70~75쪽.

³³⁾ 宋炳基, 앞의 책, 55~59쪽.

북양대신 이홍장이 조선측에 밀함을 보내어 입약 통상을 권고한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南洋大臣 劉坤一(1830~1902)로부터도 조선에 그러한 권고를 하라는 서신을 자주 받고 있었으며, 김홍집의 도일에 즈음하여 總理衙門으로부터 문호개방을 종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는 것도 들어야 할 것이다.34)

그러나 하여장이 김홍집에게 문호개방, 즉 聯美를 권고한 데는 또 다른 절실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조선이 입약 통산 권고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중재에 의한 조미조약의 성립을 우려한 이홍장이 나가사키 주 재청국영사 余瑞을 통하여 그곳에 체류하고 있는 슈펠트에게 조선과의 수교를 알선하겠다는 양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김홍집이 동경에 도착하기 직전의 일이었다.35)

이홍장의 이 수교 알선에 관한 양해는 하여장·황준헌이 김홍집과 접촉중이던 때에 열린 이홍장·슈펠트의 天津會談(7월 21일)에서 확실하게 다짐되었다. 이 회담에서 이홍장은 슈펠트가 수교교섭을 개시할 수 있도록, 조선정부에 대하여 그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확약하였다. 이 회담에서는 러시아의 남하와 관련하여 청국 해군을 강화하는 문제와 동아시아의 정세도 토의되었다. 회담을 마친 슈펠트는 곧 일본을 거쳐 귀국길에 올랐다(8월 7일),36)

하여장이나 그의 지시를 받은 황준헌 등은 전후 여섯 차례에 걸쳐 김홍집과 만나 筆談을 나누었다. 이 회담에서 하여장 등은 조일 양국간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자문하기도 하고 일본이나 러시아의 동정에 대하여 설명하기도하였다. 그 중에서도 하여장 등이 역점을 두어 강조한 것은 러시아의 남하와이에 따른 대책으로 제시한 미국과의 수교, 즉 연미론이었다. 미국은 민주국가요 國勢가 넉넉한 데다가, 여러 나라와 通好함에 있어 신의를 존중하고 동양에 대하여 너그럽다고 역설하였다. 더욱이 그런 미국이 조선과의 조약체결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조선은 미국과 수교하여 러시아의 남하 혹은 침략을

³⁴⁾ 宋炳基, 위의 책, 59~63쪽.

³⁵⁾ 李普珩, 앞의 글, 81~84쪽. 宋炳基, 위의 책, 63~66쪽.

³⁶⁾ 위와 같음.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37)

필담이었기 때문에 의사전달이 미흡했다고 생각한 하여장은 황준헌을 시켜 앞으로 조선이 취할 대외·대내정책을 요약한〈朝鮮策略〉을 작성하여 김홍집에게 수교하였다. 약 6천자에 달하는〈조선책략〉의 요지는 조선의 급무는 '防俄'에 있고, 防俄策은 '親中國', '結日本', '聯美國'하며 自强을 도모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핵심은 미국과의 수교를 강조한 것으로, 하여장의 연미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이한 것이었다.38)

그런데〈조선책략〉에는 조선이 북경에 陪臣을 상주시킬 것, 부산 등지에서의 일본 상인의 농단을 막기 위하여 청국 상인의 통상을 허락할 것, 龍旗(청국국기)를 조선의 旗幟로 삼을 것 등의 대목이 들어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끌게 한다. 그것은 미국과의 수교에 즈음하여 청국의 '속방'으로서의 조선의지위를 강화하는 한편, 조선으로의 경제적 진출을 노렸던 것이라고 풀이할수 있다.39) 청국은 이미 이홍장을 통하여 문호개방을 권고할 당시부터 조선의 내정에 간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하여장이 제기한 연미론은 결국 이홍장이 고종 15년(1878) 9월 4일자로 이유원에게 보낸 서함에서 제시한,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한 서양 여러 나라와의 입약 통상론과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다만 다른 점은 입약 통상할상대가 서양 여러 나라에서 미국으로 좁혀졌을 뿐이다. 그런 만큼 연미론은이홍장의 대조선정책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었다.

국왕은 수신사 김홍집의 복명(8월 28일)과 그가 가지고 온〈조선책략〉등을 통하여 조선이 경계할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이며, 러시아의 남하혹은 침략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시급히 미국과 수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홍집이 복명한지 불과 4일만인 9월 3일에 李東仁・卓挺埴 등을 밀사로 발탁하여 일본으로 파견하였다. 하여장에게 미국과의 수교 주선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국왕이 이런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는 김홍집은 물론, 閔泳翊(1860~1914)・劉大致(1831~?) 등과도 논의하였던

³⁷⁾ 宋炳基, 위의 책, 66~69쪽.

³⁸⁾ 宋炳基, 위의 책, 69~73쪽.

³⁹⁾ 宋炳基, 위의 책, 66쪽.

것으로 보인다.40 러시아의 남하, 혹은 침략이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 하여 국왕은 이제까지 조선이 굳게 지켜오던 척사 내지 쇄국정책을 수정하 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국왕은 밀사 이동인 등이 서울을 떠난 직후 곧 時·原任大臣에게 명하여, 〈조선책략〉을 검토케 하는 한편, 領議政과 政府堂上을 重熙堂으로 인견하여 러시아의 남하에 따른 대책을 〈책략〉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대미수교 방침을 정부의 공론으로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희당회의의 결과는 대미수교를 적극 지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원임대신들의 회의 결과는 선연치가 않았다. 일단 찬성은 하되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직 元山에 머무르고 있던 밀사 이동인 등은 서울로부터의 이러한 회의 결과와 국왕이 김홍집으로 하여금 대미수교 주선을 요청하는 서함을 하여장에게 보내도록 했다는 연락을 받고 일본으로 떠났다(10월 12일).41)

이동인 등이 일본에 도착한 것은 10월 중순, 그는 곧 청국 공사관을 방문하여 황준헌·하여장 등과 접촉을 갖고(10월 17, 18일) 조선의 朝議가 변하여미국과의 수교를 희망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수교 알선을 요청하는 김홍집의 공함이 있을 것임을 알렸다. 이에 격려된 하여장은 곧(10월 19일)이 사실을 총리아문과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타전하여 앞으로의 조처에 대한 지시를요청하는 한편, 조선이 미국 등과 조약을 체결할 경우 청국이 취할 대책을적은 〈主持朝鮮外交議〉도 작성 보고하였다.42)

하여장이 황준헌을 시켜 작성한〈주지조선외교의〉는〈조선책략〉과 한 짝을 이루는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약 1,300자에 달하는〈외교의〉의 요지는, 먼저 조선이 러시아의 침략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과 수교하는 것이불가피하지만, 그럴 경우 조선은 독립국가로 인정받게 되고 따라서 중국은 '속국'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국의 관원이 조선의 조약 체결을 주관하고 조약문 머리에 "중국정부의 명을 받들어 結約한다"고 성명케 함으로써 조선이 중국의 '속국'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⁴⁰⁾ 宋炳基, 위의 책, 75~77쪽.

⁴¹⁾ 宋炳基, 위의 책, 77~83쪽.

⁴²⁾ 宋炳基, 위의 책, 83~86쪽.

것이다. 그리고 宗藩관계도 강화하여 조선으로 하여금 청국의 龍旗를 사용하게 하고, 조청 양국 상인의 왕래 무역을 허가하며, 조선 학생을 중국으로 보내어 語學・浩船・機械・洋銃을 익히게 해야 한다는 것도 거론하고 있다.43)

하여장은 이동인이 알려준 김홍집의 공함을 기다렸다. 그는 총리아문의 訓電에 따라 김홍집의 공함이 도착하는 대로 그 내용, 즉 조선이 미국과의 수교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일미국공사 빙햄에게 전달할 예정이었다. 김홍집의 공함은 11월 29일에 가서야 하여장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김홍집의 공함에는 하여장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과의 조약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그러므로 하여장은 김홍집의 공함내용을 빙햄에게 전달하고 나아가 조·미 양국간 수교의 주선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44)

국왕이나 그 지지세력들이 대미수교 방침을 결정하고 밀사 이동인을 파견하여 하여장에게 이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홍집의 공함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은 서울 정계의 복잡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홍장과 서함을 왕래하여 온 원임대신 이유원이 여론에 영합하여 수교 반대에 나섰고, 쇄국을 고집하던 대원군 이하응과 그 지지세력이 건재하고 있었다. 또 여론의 압력도 예상되는 것이었다. 이동인이 원산에서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인 10월 1일부터 벌써 衛正斥邪論이 대두하고 있었던 것이다. 45)

김홍집이 하여장에게 보낸 공함 말미에 "말은 짧고 뜻은 깊어 모두 다 들어낼 수 없다(言短意長 不能實暴)"는 구절은 이런 서울의 사정을 함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명은 아직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탁정식으로부터 있었다. 그는 김홍집의 공함이 도착한 직후 하여장과 만나, 국왕과 영의정, 그리고 2, 3 대신은 대미수교를 결심하고 있으나 이유원을 꺼려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고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

^{43) 〈}主持朝鮮外交議〉에 관하여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郭廷以、〈中國與第1次美韓條約〉(《中國外交史論集》, 1957), 1~28\,

權錫奉、〈朝鮮策略斗 清側意圖〉(《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集》,一潮閣,1981),421~449쪽.

宋炳基, 위의 책, 91~121쪽 참조.

⁴⁴⁾ 宋炳基, 위의 책, 83~86쪽.

⁴⁵⁾ 위와 같음.

고 이를 마지막으로 조선의 미국과의 수교에 관한 주일청국사절과의 교섭은 당분간 끊어지고 그 대신 북양대신 이홍장과의 교섭은 청국과 무비강구문제 를 매듭짓는 과정에서 급진전되어 갔다.46)

조선측에서 이홍장의 밀함에서 권고한 바의 일단을 받아들여 청국측에 무비강구문제를 교섭하기 시작한 것은 고종 16년(1879) 8월부터였다. 그뒤 교섭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다음해 7월 청국에 파견된 역관 卞元圭는 9월 천진에서 이홍장과 그의 막료 鄭藻如 등과 회담을 갖고 무비강구문제를 매듭지었다.47)

그런데 변원규와 이홍장의 회담에서는 무비강구문제보다 서양 여러 나라 와의 입약 통상 등 조선의 外政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뿐만 아니라 변원규는 이홍장의 밀함에 관해서도 익히 알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변원규의 청국 파견이 무비강구문제에 대한 교섭도 교섭이지만 이홍장을 직접 만나 서양여러 나라와의 입약 통상을 권고하게 된 사정을 좀더 확실하게 파악하려는데 비중이 놓여졌던 것으로 생각된다.48)

변원규와의 회담에서 이홍장은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서양여러 나라와의 입약 통상이 부득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였다. 이홍장은 또 이유원에게 보내는 서신을 변원규에게 건네었다. 9월 28일자로 된 이 서신은 이유원의 무비강구 주선 요청에 대한 회함의 형식을 빌어 서양 여러 나라와의 입약 통상을 거듭 권고하는 것이었다.49)

변원규가 귀국한 것은 이해 10월말이었다. 이미 밀사 이동인 등을 일본에 파견, 청국공사 하여장에게 미국과 수교할 뜻을 밝힌 바 있는 국왕은 이제다시 변원규를 통하여 이홍장의 서양 여러 나라와의 조약 체결 권고를 받게 된 것이다. 이는 국왕의 대미수교 방침을 더욱 굳히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50)

국왕의 대미수교방침은 미구에 이홍장에게 통보되었다. 이 사명을 띠고 '國王委員'李容肅이 이해(고종 17, 1880) 11월 초순에 청국으로 파견되었다.

⁴⁶⁾ 위와 같음.

⁴⁷⁾ 宋炳基, 위의 책, 123쪽.

⁴⁸⁾ 위와 같음.

⁴⁹⁾ 宋炳基, 위의 책, 124쪽.

⁵⁰⁾ 宋炳基, 위의 책, 125~126쪽.

그는 다음해 1월 20일 천진에서 이홍장과 회담을 갖고 그가 작성한 문의사항 즉, 〈請示節略〉을 제시, 다른 나라와 수교할 때의 선후·조만의 대책을 묻고, 청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수호통상장정 등의 사본을 요청하였다. 또 1월 28일 2차 회담에서 그는 서양 여러 나라가 "좋은 뜻으로 와서 조약 체결을 청한다면 굳게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국왕은 이용숙을 통하여 이홍장에게 완곡한 방법으로 미국은 물론 서양 여러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뜻이 있음을 통고하였던 것이다.51)

한편 이해(고종 18, 1881) 2월 초에 탁정식이 다시 일본으로 파견되었다. 대미수교에 관한 김홍집의 서함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4월초 하여장에게 전달된 이 서함의 요지는 미국과 수교는 하되 여론 때문에 "即地에 裁斷할 수없다", 즉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용숙을 청국에 파견하여 대미수교방침을 이홍장에게 통보한 조선측은 이제 탁정식을 일본에 파견하여 연미론을 처음으로 권고하여 온 하여장에게 대미수교 방침을 역시 완곡한 방법으로 재통고하였던 것이다.52)

李容肅을 중국에 파견한 직후부터 조선은 國書受理, 公使駐京, 仁川開港 등 일본과의 현안문제들을 거의 일괄 타결하는 한편, 官衙(統理機務衙門)를 신설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재의 수용령을 내리는 등 일련의 개화정책을 펴 나갔다. 이는 이르는 바 이 '初期의 開化政策'이 미국과의 수교에 대비해 가면서 추진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 통리기무아문은 미국 등 외국과의 외교 통상에 대비하고 自强策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였다.53)

國王은 일부 소장관원들과 함께 이처럼 연미에 대비하여 나갔는가 하면, 연미를 저지하고 나선 조야 인사도 적지 않었던 것 같다. 그 중에는 개화당 멤버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수신사 金弘集을 수행했던 姜瑋 (1820~1884)도 연미를 지지한 재야인사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점차 연미를 저지하는 관원도 불어났다. 그리하여 朝臣 중 미국과의 수교를 원하는 수가

⁵¹⁾ 宋炳基, 위의 책, 126~133쪽.

⁵²⁾ 宋炳基, 위의 책, 133~134쪽.

⁵³⁾ 宋炳基, 위의 책, 134~152쪽.

7할쯤 헤아리겠금 되었다.54)

그러나 당시의 여론은 '朝鮮策略'이나 연미론은 물론 개화정책도 지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그 선편을 잡은 것은일부 官員들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儒生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 거센반발, 이른바 '辛巳斥邪運動'을 불러 이르켰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大院君계열의 재집권을 위한 쿠데타모의, 즉 安驥泳事件(고종 18, 1881)으로 이어져나갔다.55)

〈宋炳基〉

3. 조미조약의 체결

1) 조・청・미 3국의 조미조약 체결 교섭과 속방조관

조선국왕이 譯官 李容肅(1818~?)을 天津으로 보내어 청국 北洋大臣 李鴻章(1823~1901)에게 대미수교 방침을 통고한 것은 고종 18년(1881) 1월 하순이었다. 이 1월 하순을 전후하여 청국 정부는 조미조약체결과 관련된 몇 가지주목할만한 조처를 취하였다. ① 北洋衙門 津海關道 鄭藻如가 1월 초순 北京에 와 있는 朝鮮冬至使 任應準(1816~1883)에게 密函을 보내어, 유학생들의인솔을 방자, 大員을 천진으로 파견하여 조약체결에 관하여 혐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② 1월 하순부터 조약 체결 등 조선에 관계되는 洋務事宜를 북양대신과 주일공사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한 것, ③ 이홍장이 2월초(양 3월초)에 주천진미국부영사 피셔(Fisher, C.L.)를 통하여 그동안 조미수교 교섭을 벌여 온 미국 해군제독 슈펠트(Shufeldt, R.W., 1822~1895)를 초청하고 있는 것 등이 그러한 것이다. 이 가운데 ①과 ②는 주일청국공사관을 방문한(고종

⁵⁴⁾ 文一平, 《韓米五十年史》(朝光社, 1945), 25~27等. 李光麟, 《開化黨研究》(一潮閣, 1974), 25・34~35等. 宋炳基, 위의 책, 159~160・163~164等.

⁵⁵⁾ 宋炳基, 위의 책, 164~187쪽.

17년 말) 조선국왕의 밀사 卓挺植으로부터 미국과 수교할 수 있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주일공사 何如璋(1838~1891)이 總理 衙門에 건의한 바에 따르거나, 관계되는 것이었다.1)

정조여의 서함이 서울에 전달된 시기는 1월 하순, 늦더라도 2월초였던 것같다. 서함에 접한 국왕은 곧 사절의 파견을 지시하였고, 統理機務衙門의 건의에 따라 使號를 領選使로 결정하고, 吏曹叅議 趙龍鎬(?~1881)를 이에 임명하였다(2월 26일). 이어 영선사 파견을 통보하기 위하여 3월 하순 역관 李應 淡을 청국으로 파견하였다. 영선사의 파견 결정은 정조여의 서함과 관련된 것이며, 그 중요한 사명이 유학생의 영솔이 아니라 조미조약체결에 관하여청국측과 혐의하는데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2)

또 이홍장과 회담을 가진 피셔는 그 내용을 2월 4일(양 3월 3일)자로 슈펠트에게 연락하였다. 이 피셔의 연락과 슈펠트의 중국 來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슈펠트는 5월(1881)말 (양 6월 하순) 천진으로 이홍장을 방문하여 회담을 갖고 미국의 조약 체결의사를 조선에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홍장으로부터 미국은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으리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3)

이용준이 천진에 도착한 것은 6월초였다. 이홍장은 정조여로 하여금 다시 밀함을 작성하여 바로 이용준 편에 조선정부로 보내었다. 이 정조여의 제2차 밀함의 내용은 官員을 천진으로 파견하여 슈펠트와 협상할 것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 중국이 奏請 파견하는 대원과 함께 돌아가 조약을 체결하 라는 것이었다. 천진에서 이홍장의 중재하에 협상하고, 조선에서 중국관원이 참여한 가운데 조인하라는 것으로, 그의 이런 구상은 주일공사 하여장의 대 조선정책 건의(1880년 10월 하순), 즉〈主持朝鮮外交義〉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¹⁾ 宋炳基,《近代韓中關係史研究》(檀國大 出版部, 1985), 84·194~197\.

²⁾ 宋炳基, 위의 책, 197~199쪽.

³⁾ Chales O.Paulin, "The Opening of Korea by Commordore Shufeld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25: 3, 1910), pp.483~485.

李普衍,〈韓美修好通商條約締結〉(《한미수교100년사》, 국제역사학회 한국위원회, 1982), 49~50쪽.

宋炳基, 위의 책, 199~201쪽.

보여진다. (외교의)의 요지는 조선이 미국 등과 조약을 체결함 경우 독립국 가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중국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의 조약체결을 주관하고 조약문 머리에 "중국정부의 명을 받들어 結約하다"고 성명함으로 써 조선이 청국의 '屬國'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었다.4)

슈펠트가 다시 이홍장과 회담을 가진 것은 이응준이 북양아문을 다녀 간 뒤인 6월 하순(양 7월 중순)이었다. 이홍장은 조선정부에 서함을 보낸 사실을 알려주고. 천진에 머무르면서 조선으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도록 권고하였 다. 슈펠트는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10월 하순(양 12월 중순)에 가서 이홍장 의 막료 羅豊錄을 통하여 조선 관원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정보 를 가지고 천진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 조선 관원은 魚允中 (1848~1896)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5)

조선정부는 영선사의 파견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청국에 통보까지 하였지 만 그 출발은 계속 지연되었다. 그 까닭은 유학생 모집의 차질 등 준비 불충 분이나 영선사를 金允楠(1835~1922)으로 改差한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주로 이 무렵에 격렬하게 전개된 斥邪運動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국왕은 이응주을 다시 청국에 파견하여 영선사의 출발 지연을 알리는(9월 1일) 한편. 朝士視察團(紳士遊覽團)員으로 일본에 가 있던 어윤중에게 천진(북양아문) 방 문을 지시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6)

어유중은 지시에 따라 천진으로 가 이홍장과 두 차례에 걸쳐 회담을 갖고 (10월), 천진으로의 유학생 파견, 조청간 海禁의 해제와 통상, 조선 사절의 북 경 상주, 미국과의 조약체결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특히 조약체결에 관한 협의는 구체적이어서 '另款'(제1관)에 조선이 중국의 '屬邦'이라고 밝히는데 합의하였고, 정조여의 밀함대로 조선측이 관원을 파견, 천진에서 협상한다는

⁴⁾ 宋炳基, 위의 책, 201~203쪽.

⁵⁾ Paulin. *ibid.* pp.485~486. 李普衍, 앞의 글, 53쪽.

宋炳基, 위의 책, 203~204쪽.

⁶⁾ 權錫奉、〈領選使行에 對한 一考察-軍械學造事를 중심으로-〉(《歷史學報》17・ 18. 1962). 293~295쪽.

宋炳基, 위의 책, 204~207쪽.

데도 동의하였던 것 같다.7)

영선사 김윤식 일행은 예정보다 거의 한 달을 더 늦춘 9월 26일에 서울을 출발하였다. 그것은 8월 말에 발각된 大院君 계열의 쿠데타모의[安顯泳事件]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김윤식 등이 북경에 도착한 것은 11월 17일이었고, 禮部에서 정해 준 行期에 따라 22일 이홍장이 留駐하고 있 는 保定으로 떠났다. 그와 조약체결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해서였다.8)

김윤식은, 游智開의 주선으로, 11월 28일 保定府(直隸總督署)에서 이홍장과 제1차 회담을 가졌다. 역관 卞元圭도 참석한 이 회담에서 이홍장은 어윤중을 만나보았는지, 즉 속방조관에 대한 조선의 반응이 어떠한 것이며, 김윤식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표시하였다. 김윤식은 어윤중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다만 자신의 사명이 조약체결 협의에 있다는 것만 밝혔다. 그리고 국왕이 정조여의 제2차 밀함에 찬동하고 있으나 國論이 한결같지 않아조정하기가 어렵다하고, 조약 체결에 대한 淸帝의 宣諭를 요청하였다.9)

회담을 마친 뒤 김윤식은 辭陛할 때 국왕이 지시한 내용을 담은 밀함을 작성하여 이홍장에게 보내었다. 그 요지는 청제인 德宗이 다음 해(고종 19, 1882) 봄 朝鮮年貢使[동지사]가 돌아가는 편에 詔書를 내려 曉諭하고, 그 뒤를 이어 중국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美使와 같이 議約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조약체결에 대한 국왕의 방침은 고종 19년 봄에 청제의 위엄을 빌리고 중국 관원이 참여한 가운데 조선에서 미사와 협상, 조인한다는 것이었다.10)

그러나 그것은 천진에서 자신의 중재하에 협상하고 조선에서 중국 관원이참여하는 가운데 조인한다는 이홍장의 구상과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11월 30일 보정부에서 속개된 제2차 회담에서는 協商地 문제가 주로 거론되었다. 이홍장은 천진에서 협상하는 쪽으로 김윤식을 종용, 설득하였으며, 마침내 조서를 내려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다. 천진에서의 협상이 부득이하다

⁷⁾ 宋炳基, 위의 책, 207~208쪽.

⁸⁾ 宋炳基, 위의 책, 208~210쪽.

⁹⁾ 宋炳基, 위의 책, 210~211쪽.

¹⁰⁾ 宋炳基, 위의 책, 211~212쪽.

는 판단을 내린 김윤식은 곧 귀국하는 변원규 편에 이를 국왕에게 품의하게 하였다.¹¹⁾

김윤식은 12월 1일에도 이홍장과 회동하였다. 제3차 회담인 셈이지만, 이홍장이 김윤식 등 영선사절에게 오찬을 베푸는 자리였으므로, 조약체결에 관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회담을 마치자 김윤식 등은 유학생들을 보살피기 위하여 천진으로 떠났고, 변원규는 12월 11일 천진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 그런데 바로 변원규가 천진을 떠나던 날 김윤식은 10월 24일자로 된 국왕의 封書를 받았다. 그리고 뒤에 이홍장과 검토하게 되는 3종의 條約草稿도이때 같이 받았던 것 같다.12)

봉서의 내용은 정조여의 밀함대로 천진에서 협상하고, 중국관원이 美使와함께 서울 近港으로 와서 조인하도록 할 것이며, 동봉하는 조약초고를 이흥장과 협의하라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왕이 갑작스럽게 이런 봉서를 보내 온 것은, 미사가 천진에 체류하고 있다는, 아마도 영선사 파견의 지체를 알리기 위하여 북양아문을 재방문했던(9월 1일) 이응준의 보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綸音까지 내려 斥邪를 다짐한 국왕으로서는 미사가갑자기 도래할 경우 국왕이 그를 불러 들였다는 비난을 받게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그리하여 천진에서의 협상, 다시 말하면 이홍장의 중재하의 협상을 지시하게 되었던 것이다.13)

김윤식은 다시 保定으로 가 12월 19일 이홍장과 제4차 회담을 갖고, 국왕의 봉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일단 협상지 문제는 천진으로 정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 회담에서 김윤식은 자신이 직접 슈펠트와 협상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홍장은 영선사에게 전권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들어 이를 거절하고, 조선의 국내 여건, 즉 척사운동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전권 파견을 고집하였다. 그 자신이 슈펠트와 직접 협상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결국 김윤식은 국왕에게 서함을 보내어 전권 파견을 요청한다는데 동의하였다. 그 대신 이홍장으로부터 슈펠

¹¹⁾ 宋炳基, 위의 책, 212~213쪽.

¹²⁾ 宋炳基, 위의 책, 213~214쪽.

¹³⁾ 宋炳基, 위의 책, 214~215쪽.

트가 보정에 오는대로 한 번쯤 면담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김윤식은 슈펠트를 만나, 그의 갑작스런 조선행을 막고자 하였던 것 이다.¹⁴⁾

김윤식은 회담을 마치자 곧(12월 20일) 전권 파견을 요청하는 서함을 국왕에게 보내었다. 그리고 보정에 머무르면서 슈펠트의 도착을 기다렸다. 12월 26일에 이르러 김윤식은 이홍장의 요청에 따라 그와 제5차 회담을 가졌다. 이홍장은 봄에 천진에서 회담을 갖자는 슈펠트의 서함이 있었음을 밝히고, 천진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였다. 김윤식으로서도 슈펠트가 오지 않는 이상보정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슈펠트와 조만간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예정된 사실이었으므로, 국왕이 보내 온 3종의 조약초고. 즉탁정식이 일본에서 가지고 온 黃瓊憲草稿 등을 참작한 李東仁草稿, 이용숙이천진에서 가지고 온 이홍장초고(〈朝鮮與各國通商約章〉)를 이홍장에게 제시하고 검토를 요청하였다.15)

이홍장은 황준헌초고 제4관 영사관할권의 잠정적 인정, 제10관 歐美公例에 준한 關稅規則의 제정을 시세에 따른 착실한 것이라고 평하였다. 그리고 이동인초고를 검토하면서 조약내에 "조선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속방이지만 외교·내치는 자주하여 왔다"는 條文, 즉 屬邦條款을 넣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동인초고에는 '속방'에 관한 조문이 들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국왕이 조약체결에 관하여 그(이홍장)의 중재를 요청하는 봉서까지 보내오게 되자, 이홍장은 하여장이 〈주지조선외교의〉에서 건의한바 속방조관의 명문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16)

김윤식은 속방조관에 찬의를 표하였고, 이홍장이 거론한 여타의 조관에도 동의하였다. 그가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이 있다면 敎堂 설립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물론 국내의 척사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이 회담에서 슈펠트에게 제시할 중요 조약문 내용에 합의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中堂(이홍장)이 가르친바 1조의 大意(속방조관)를 頭腦로, 황준헌이 商量한바 兩款(황준

¹⁴⁾ 宋炳基, 위의 책, 215~218쪽.

¹⁵⁾ 宋炳基, 위의 책, 218~219쪽.

¹⁶⁾ 宋炳基, 위의 책, 219~221쪽.

헌초고 제4·10관)을 肯綮(요점)으로 삼되, 교당을 세우지 않는다는 1관(이동인 초고 제10관)을 目下의 要務로 삼는다"는 것이었다.¹⁷⁾

이홍장이 천진으로 돌아와 슈펠트와 협상을 시작한 것은 고종 19년 2월초 순(양 3월 하순)부터였다. 그리고 그것은 3월초(양 4월 중순)까지 계속되었다. 그동안 이홍장은 북양아문에서 슈펠트와 5차례에 걸쳐 회담하였다. 그리고 회담은, 이홍장이 김윤식에게 그처럼 고집하였던 것과는 달리, 피차간에 조약을 협의할 전권이 있다는 어떤 證憑文書도 제시함이 없이 진행되었다. 흑 있었다고 한다면 제2차 회담(2월 18일, 양 4월 5일) 때 이홍장이 김윤식과 제6차 회담(2월 17일)을 하면서 받아낸 국왕의 봉서(11월 25일자)를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짐작될 뿐이다.18)

이홍장이 회담에 임하면서 크게 관심을 두었던 것은 김윤식과 합의한 속 방조관을 관철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그대로 본받게 되면 조선이 중국의 '屬土'라는 사실은 결국 잊혀지고 말 것이라고 그는 우려하였다. 그가 회담을 앞두고 막료 周馥(1837~1921)을 슈펠트에게 보내어 조약문에 반드시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지만 정치는 자주하여 왔다"고 밝힐 것을 요청한 것도 그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회담을 갖기 직전에 슈펠트가 보내 온 조약초고에는 속방조관이 들어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조선의 자주 독립을 규정한 강화도조약을 저본으로 삼고 있었다.19)

그리하여 2월 7일(양 3월 25일)에 열린 슈펠트와의 제1차 회담에서 이홍장은 조선은 고래로 중국의 '속방'이지만 내정·외교를 자주하여 왔다고 설명하고, 조미조약은 조선측이 후회하고 있는 강화도조약에 의거할 수 없다는

¹⁷⁾ 金允植,《陰晴史》(國史編纂委員會, 1958), 58쪽. 宋炳基 위의 책, 221~222쪽.

¹⁸⁾ Paulin, op.cit., pp.487~490. 奥平武彦, 앞의 책, 93~95쪽. 李普衍, 앞의 글, 59쪽. 宋炳基, 위의 책, 222~224쪽.

¹⁹⁾ 奧平武彦, 앞의 책, 87쪽.李普衍, 위의 글, 51쪽.宋炳基, 위의 책, 224~225쪽.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 이 회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천진에서의 협상을 종용하였고 슈펠트가 조선으로 갈 때 중국 관원과 병선을 같이 파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도 하였다.²⁰⁾

회담을 마치자 이홍장은 조약 초고를 작성하여 슈펠트에게 보내었다. 그 내용은 대체로 김윤식과 합의한 바를 반영시킨 것이었다. 물론 제1관에는 예의 속방조관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10관에 국왕이 조약을 비준할 때 조약문을 청국 禮部에 移容할 것도 규정하였다. 또 제1관 후반에 유사시 미국의 원조와 중재(居中調停)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 것이었다.21)

슈펠트는 제1관을 제외한다면 이홍장초고와 큰 차이가 없는 조약안을 준비하여 북양아문으로 보내고, 이어 2월 18일(양 4월 5일)에 이홍장과 제2차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이홍장은 제1관, 즉 속방조관을 고집하였다. 그는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중국은 협상에 관여할 필요도, 관원을 동행시킬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슈펠트의 뜻도 '決絶'하여 결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²²⁾

이홍장은 2월 22·23일(양 4월 9·10일)경에 슈펠트와 제3차 회담을 갖고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즉 조약을 체결한 뒤 조선측에서 예의 속방조관 내용 을 미국무성에 조회하는데 동의한다면 제1관 중 속방조관을 철회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제의에 슈펠트도 일단 동의하였으므로 협상의 장애는 극복되는 듯이 보였다. 그런데 마침 총리아문을 방문했던 미국대리공사 홀콤(Holcombe, Chester)이 속방조관에 동의함으로써 다시 논란이 일게 되었다.²³⁾

²⁰⁾ 宋炳基, 위의 책, 225~226쪽.

²¹⁾ 宋炳基, 위의 책, 226~228쪽.

²²⁾ Paulin, op.cit., pp.491~492. 奥平武彦, 앞의 책, 108~109쪽. 李普衍, 앞의 글, 61~62쪽. 宋炳基, 위의 책, 228쪽.

²³⁾ Paulin, *ibid.*, pp.492~493. 奧平武彦, 위의 책, 112~113쪽. 李普衍, 앞의 글, 61~62쪽. 宋炳基, 위의 책, 228~230쪽.

이홍장은 천진에 온(2월 24일) 홀콤과 회담을 갖고 속방조관의 삽입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홀콤은 조약체결에 관하여 전권을 띠고 있는 슈펠트가 반대하고 있음을 들어 총리아문과 합의한 바를 철회하였다. 이홍장은 본국 정부에 請訓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슈펠트는 국무성에 타전하였지만, 回信은 여러 날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24)

회신이 없는 것은 필경 미국 정부가 속방조관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이홍장은 2월 27일(양 4월 14일)과 3월 1일(양 4월 18일) 홀콤이 참석한 가운데 슈펠트와 제4·5차 회담을 갖고, 여타 조관에 대한 토의를 계속하여 전문 15관으로 된 조약문에 날인·서명하였다. 가조인한 것이지만 조선측이 미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정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약은 이미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²⁵⁾

15관 중 제1관은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 혹 있을지도 모를 미국의 回電을 기다려 속방조관을 싣거나 삭제하기 위해서였다. 자연 원호·중재조관은 제2 관으로 옮겨 졌다. 또 이홍장초고 제10관 조약문의 禮部 移咨 규정도 삭제되었다. 속방조관이나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을 배제하려는 슈펠트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6)

결국 이홍장은 조약문에 조선이 중국의 '屬邦'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데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조약문 말미에 漢·英文 각 3통의 조약문 (1통은 이홍장초고 제10관의 취지를 살여 청국에 보내는 것으로 생각된다)작성을 규정하고, 그 밑에 중국 연호인 光緒를 명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 그 대신 이홍장은 미진한 바를 屬邦照會를 통하여 보완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슈펠트에 의하여 양해되었다. 그가 조선으로 떠나기 직전의 일이었다.27)

²⁴⁾ Paulin, *ibid.*, p.493. 李普衍, 위의 글, 62쪽 宋炳基, 위의 책, 230쪽.

²⁵⁾ 위와 같음.

²⁶⁾ 宋炳基, 위의 책, 231쪽.

²⁷⁾ Paulin, *op.cit.*, pp.493~494. 宋炳基, 위의 책, 231~232・257・263쪽.

속방조관을 예외로 한다면, 가조약문에는 이홍장의 견해가 존중되어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물론 슈펠트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 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는 속방관계를 제외한 여타의 조문에 대하여는 국무 성 훈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애써 반대하려 하지 않았다. 고종 18년 5월 하 순 천진에 도착하여 1년 가까이 체류하고 있던 그로서는 본국 정부에 대한 입장이나 중국에 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면상 조약을 꼭 성취시켜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²⁸⁾

우선 가조약문에는 이홍장초고의 내용이 상당수 반영되어 있다. 중요한 것을 든다면 ① 치외법권[領事裁判權]의 잠정적 인정(이홍장 초고 4관: 가조약본 5관), ② 미국인에 관계된 조선인 범죄의 조선 관원·법률에 의한 처단과 미국측의 조선범죄인 은닉·비호 금단(7·8관:5·11관), ③ 조약상 미진한 내용은 5년 뒤 다시 의정하되 통상에 관한 상세한 章程은 만국통례에 의한다(9관:13관), ④ 영사는 관원이어야 하고 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辦事가 공정하지 않을 때 미국공사와 협의하여 그 비준을 철회할 수 있다(2관:3관), ⑤ 수입세율은 생필품 100의 10, 사치품 100의 30으로 한다(5관:6관), ⑥ 租地는 조선 영토의 일부이며 鴉片[洋藥]을 엄금한다는 것(6관:7·8관) 등이 있다.29)

또 가조약본에는 이홍장초고에 없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가령 ⑦ 관세자주권의 인정(6관), ⑧ 흉년에 한해 미곡 수출의 금지(9관), ⑨ 미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인정하되 타국에 대한 우대가 專條[協約]에 의한 것이라면 미국과도 협약을 맺은 뒤 우대할 수 있다는 것(15관) 등이 그러한 것이다. ⑦은 이홍장의 견해를 반영시킨 것이었다고 생각되며, ⑧은 김윤식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홍장이 요청한 것이었다. 또 ⑨의 전반은 슈펠트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지만, 후반은 최혜국대우를 가급적 억제하려는 이홍장의 견해를 반영시킨 것이었다.30)

²⁸⁾ 奧平武彦, 앞의 책, 94~96·116~119쪽. 宋炳基, 위의 책, 232쪽.

²⁹⁾ 宋炳基, 위의 책, 232쪽.

³⁰⁾ 宋炳基, 위의 책, 232~233쪽.

이와 같이 볼 때, 이홍장은 가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되도록 불평등성을 배제하고(②·⑤·⑨), 또 장차 배제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하는 한편(①·③) 조약에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노력한 것(④·⑤·⑥)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물론 중국이, 일본도 그러하였지만, 서양 여러 나라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겪은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얻은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장차 이 조약을 토대로 중국이 서양 여러 나라와 체결한 불평등・불이익한 조약을 개정하려는 의지도 담겨져 있는 것이었다.31)

이홍장은 또 비록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긴 하지만, 제2관에 원호·중재조관을 반영시킴으로써 조선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비교적 공평한 나라로 알려진 미국의 원조와 중재를 기대하였으며, 제12관(이홍장초고 제7관)에서 조선이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파견하는 유학생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배려하기도 하였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 언급한 불평등성・불이익성의 배제와 함께이 가조약본이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32)

김윤식이 이홍장과 합의한 교당 설립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가조약 본에 반영되지 않았다. 교당은 미국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홍장 은 조약체결 협상을 깨뜨릴까 우려하여 처음부터 거론하지 않았다. 그리고 뒷날 미국측이 교당 설립을 요청할 경우 조약상에 규정이 없음을 들어 거부 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는 것이 청국측의 설명이었다.³³⁾

이홍장은 회담을 마치면서, 슈펠트에게 그가 조선으로 갈 때 중국 관원을 동행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그가 그런 약속을 하게 된 것은 朝 ·美 양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그 의도하는 바는 조약체결을 중국이 계속 '主持'하려는 데 있었다. 그리고 그 관원으로 '精明幹練'하고, '交涉公法'에 밝은

³¹⁾ 奧平武彦, 앞의 책, 117~119쪽. 李普衍, 앞의 글, 68~69쪽. 宋炳基, 위의 책, 233쪽.

³²⁾ 奥平武彦, 위의 책, 117~118쪽. 宋炳基, 위의 책, 233쪽.

³³⁾ 金允植, 《陰晴史》, 112쪽. 宋炳基, 위의 책, 254쪽.

馬建忠(1845~1899)이 발탁되었다. 하여장이〈주지조선외교의〉에서 건의한 바를 받아들여 취한 조처였다.34)

2) 조미조약의 성립과 속방조회

보정부에서 제5차 회담(2월 26일)을 가진 이후 이홍장은 오랫동안 김윤식과 접촉하지 않았다. 이미 슈펠트와의 협상을 위임받았고, 그에게 제시할 중요 조문까지 검토한 뒤였으므로 김윤식과 만나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때문이었을 것이다. 이홍장이 김윤식과 다시 만난 것은 1882년 2월 17일(양4월 4일)에 가서였다. 제6차 회담으로 슈펠트와 제2차 회담(2월 18일, 양 4월 5일)을 갖기 직전이었다. 북양아문에서 가진 이 회담에는 국왕의 봉서를 가지고 온(1월 8일) 역관 이응준도 배석하였다.35)

고종 18년 11월 25일자로 된 국왕의 봉서는 국내 사정상 결코 천진에 관원[使節]을 파견할 수 없으며, 동봉하는 一件 冊子, 즉 修信使 趙秉鎬의 일본 과의 관세규칙 협상 기록, 러시아측 서함을 다룬 함경북도병마절도사와 함경 도관찰사 사이의 夾紙 등을 이홍장에게 전달하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봉서를 보낸 국왕의 의도는 조약 체결 협상을 이홍장에게 맡기되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하여 일본과의 관세규칙 협상이나 러시아의 조약체결 요청에 대비하려는 데 있었던 것 같다.36)

국왕이 봉서에서 지시한 내용과 一件 책자는 곧 周馥을 통하여 이홍장에게 전달되었고, 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었으므로 제6차 회담에서 그것이 특별하게 거론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회담에 임하는 이홍장의 태도는 시종 불평조였다. 그는 국왕의 手札을 건네주지 않은 것을 힐책하였으며, 조선에 洋語・洋文 해독자가 있는지 따지듯 물었다. 김윤식은 전전긍긍하여 국왕의 수찰을 건네줄 것을 약속하였고, 중국 관원의 파견을 간청하였다. 그리고 美使의 조선행을 알리기 위하여 이용준을 먼저 귀국시킨다는 데도 합의하였다.37)

³⁴⁾ 宋炳基, 위의 책, 233~234쪽.

³⁵⁾ 宋炳基, 위의 책, 243~244쪽.

³⁶⁾ 宋炳基, 위의 책, 244~245쪽.

이홍장이 국왕의 수찰을 요청한 것은 곧 있을 슈펠트와의 제2차 회담 때그것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조선측 대변자이며, 천진에서의 협상이 국왕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한다. 또 양어·양문 해독자를 물은 것은 슈펠트와의 제1차 회담(2월 7일, 양 3월 25일) 때 중국 관원 파견문제가 거론되었던 것 만큼, 그것을 김윤식으로 하여금 스스로 요청하도록 하는데 있었던 것 같다. 그가 시종 불평조였던 것도 아마 이런 것들 때문이었을 것이다.38)

제6차 회담 이후 이홍장은 슈펠트와 네 차례나 회담을 갖고 협상을 벌였지만, 한 번도 김윤식과 만나지 않았다. 혹 김윤식과 연락할 일이 있으면 회담에 배석하고 있는 막료 주복을 통하여 하였다. 김윤식도 협상의 진전 상황을 주복을 통하여 막연하게나마 엿들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 결국 김윤식은 조약체결 협상에서 오직 제3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다.³⁹⁾

김윤식은 이홍장·슈펠트회담이 진전되어감에 따라, 그가 보낸 (고종 19년 12월 20일) 전권파견 요청 서함에 대한 본국의 회신을 고대하게 되었다. 그는 국내 실정이나 국왕의 봉서로 미루어 전권대신의 파견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하위의 관원 파견은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시한인 다음 해 2월 초순이 지나도록 본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그가 魚允中·李祖淵 (1843~1884)을 考選官에 임명·파견한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2월 28일에 가서였다.40)

김윤식의 전권 파견 요청 서함이 서울에 도착된 시기는 1월 10일경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어윤중 등이 問議官으로 改差되어 사폐한 것은 2월 17일, 그 출발부터 시한을 넘기고 있었다. 그들이 천진에 도착한 것은 3월 28일, 이미 가조인이 끝나고, 마건충·슈펠트 등이 조선에 入境한 뒤였다. 또 어윤중 등은 조약체결 협상에 관한 어떤 文憑(信任狀)도 휴대하지 않았다. 總理統理機務衙門事 李最應(1815~1882)이 이홍장에게 보낸(2월 3일자) 고선관 파견

³⁷⁾ 宋炳基, 위의 책, 245~246쪽.

³⁸⁾ 宋炳基, 위의 책, 246쪽.

³⁹⁾ 宋炳基, 위의 책, 247~248쪽.

⁴⁰⁾ 宋炳基, 위의 책, 248~249쪽.

등을 알리는 서함에도 그런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았다. 이런 사실들은 조선측이 문의관에 의한 협상을 포기한 것, 다시 말하면 이홍장에 의한 협상의 재확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물론 국내의 척사여론 때문이었다.41)

어윤중의 도착을 기다리던 김윤식은 주복의 요청에 따라 역관 이응준과함께 3월 4일(양 4월 21일) 북양아문으로 이홍장을 방문하여 제7차 회담을 가졌다. 조약체결에 관한 한 이홍장과의 마지막 회담이었다. 이홍장은 김윤식에게 가조약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속방조회·중국관원 파견문제를 매듭짓기 위하여 이 회담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42)

김윤식은 가조약 내용에 기꺼이 동의하였고, 그 내용을 함부로 수정할 수 없다는 이홍장의 요청에 대하여도 정부에서 가벼이 刪增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그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 있다면, 제9관의 미곡 禁輸 규정이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미사가 입경한 뒤 다시 협의할 수 있다는 이홍장의 양해가 있었다. 김윤식은 또 속방조회에도 동의하였으며, 중국 관원 파견 문제는 오히려 먼저 요청하여 이홍장의 약속을 받았다.⁴³⁾

회담이 끝나자 이용준은 미사의 조선행을 알리기 위하여 곤(3월 6일) 귀국 길에 올랐다. 이홍장은 이용준편에 가조약본과 回函(3월 5일자)을 이최용에게 보내었다. 그는 이 서함에서, 황제에게 주청하여 마건충을 파견하는 것은 김 윤식의 중국 관원 파견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속방 조회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조문의 수정은 가조약본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윤식과 합의한 바를 거듭 강조한 것이었다.44)

馬建忠·丁汝昌(?~1895) 등은 슈펠트와의 약속대로 3월 20일 아침 일찍 烟臺를 출발하였다. 일행중에는 상무조사차 招商局에서 파견하는 5명의 요원도 끼어 있었다. 앞으로 있을 조청간 海禁의 해제와 통상에 대비하려는 것이었다.45) 조선진출을 위한 청국측의 발빠른 움직임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마건충은 이홍장이 국왕에게 보내는 咨文을 휴대하였다. 그 내용은 이최응

⁴¹⁾ 宋炳基, 위의 책, 249~251・255~256쪽.

⁴²⁾ 宋炳基, 위의 책, 251~252쪽.

⁴³⁾ 宋炳基, 위의 책, 252~254쪽.

⁴⁴⁾ 宋炳基, 위의 책, 254~255쪽.

⁴⁵⁾ 宋炳基, 위의 책, 256~258쪽.

에게 보낸 회함과 비슷한 것이지만, 마건충 등의 주청 파견은 미사나 김윤식의 요청뿐 아니라 미사의 東來는 오직 중당(이홍장)에게 맡기겠다는 총리통리기무아문사 이최응의 서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사실은 동래를 막아 달라는 내용을 잘못 읽은 것이지만) 점을 강조하고, 조약을 체결한 뒤 조약문과 속방조회문을 예부와 북양아문으로 移容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46)

마건충 등이 탄 중국 함정 威遠·揚威·鎭海는 3월 21일 오후 한강 입구 虎島(月尾島) 부근에 닻을 내렸다. 그리고 그 직전에 辦理公使 하나부사 요시 다다(花房義質)가 탄 일본함정 磐城도 도착하여 닻을 내렸다. 하나부사가 귀 임한 것은 조선측과 관세규칙에 관하여 협의하는 한편, 슈펠트를 만나 조미 조약에서 높은 관세를 인정하지 않도록 교섭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는 슈펠트의 도착이 늦어지자 마건충을 만난(3월 24일) 뒤 서울로 떠났다.47)

마건충은 영접나온 伴接官 趙準永(1834~1886), 역관 이응준 등을 통하여 조약체결과 속방조회에 대한 조선측 반응을 탐문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였다. 마건충은 마침내 그의 거처로 정해진 仁川行館에서 철수하였다(3월 24일).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 관원들에게 중국 관원을 가벼이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리고, 나아가 조약체결 과정에서 그가 뜻하는 대로 조선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를 예방한(3월 27일) 接見大官 申櫶(1810~1888), 副官 金弘集(1842~1896) 등에게 청제에 대한 3跪 9미의 예를 올리게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48)

그러나 이응준 등이 답변을 회피한 것은, 마건충의 지적처럼 그들이 매우 교활해서가 아니라 조정의 공론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약체결 교섭은 비밀리에 다루어져 왔다. 그것이 정부 관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조준영을 반접관에 임명하면서(3월 15일)부터였던 것 같다. 그리하여 협의과정에서 소외된 정부 대신들, 특히 聯美論을 지지하여 온 이최응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49)

⁴⁶⁾ 宋炳基, 위와 같음.

⁴⁷⁾ 宋炳基, 위의 책, 258쪽.

⁴⁸⁾ 宋炳基, 위의 책, 258~261・263~264쪽.

⁴⁹⁾ 宋炳基, 위의 책, 261~262쪽.

이최응은 이홍장에게 보낸 서함에서 단지 미사의 동래를 막아달라고만 하였을 뿐, 통상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조약체결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는 국왕이 신헌을 접견대관에 내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왕이 신헌의 직함을 밝히지 않은 채 인천으로 보내어 협상을 담당케하고, 김홍집을 그 부관, 徐相雨(1831~?)를 從事官에 差下하는(3월 24일) 기이한 발령을 낸 것도 이 때문이었던 것이다.50)

이런 정부내의 사정은 서울을 다녀 온(3월 25일) 이응준에 의하여 비밀리에 마건충에게 전달되었다. 이응준은 그렇기 때문에 立約할 때 신헌 등이 전권을 띠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마건충에게 당부하였다. 또 조약체결 협의는 국왕이 親信하고 있는 김홍집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충고도 하였다. 이용준의 이 충고는 조약체결을 김홍집이 주관하고 있으며, 그가 실질적인 전권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51)

이용준이 마건충을 방문하던 날(3월 25일) 슈펠트를 태운 스와타라(Swatara, 汕島)호가 호도에 도착하였다. 마건충은 다음 날(3월 26일) 슈펠트와 회담을 갖고 제1관을 거론하여 속방조회로 대체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마건충은 속 방조회로서도 조회일자를 조인전으로 한다면, 미국이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조선이 중국의 '屬國'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제1관'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52)

슈펠트와 속방조회 문제를 재확인한 마건충은 이응준의 권고에 따라 조선 관원들, 특히 그를 예방한(3월 27일) 김홍집과 필담을 나누면서 조약의 조속한 체결과 全權諭旨의 발급을 독촉하는 한편, 속방조회를 설득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전혀 사실과 다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가령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기 때문에 슈펠트는 중국과 조미관계조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였다던지, 조선과 '平行相待'하는 데 난색을 표시하고 속방조회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었다.53)

⁵⁰⁾ 宋炳基, 위의 책, 262쪽.

⁵¹⁾ 宋炳基, 위의 책, 262~263쪽.

⁵²⁾ 宋炳基, 위의 책, 263쪽.

⁵³⁾ 宋炳基, 위의 책, 263~265쪽.

마건충에 의하면 속방조회는, "자주라는 명분을 빌리어 실제로는 속방의 뜻을 밝히는(申明) 것이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 지를 모르는 김홍집은 이에 선뜻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과 '평행상대'할 수 있는 방도를 일러준 데 대하여 오히려 감사하였다.54)

마건충은 인천행관을 다시 방문하였다(4월 1일). 신헌·김홍집 등의 내방에 대한 답방을 겸하여, 행관 철수 등 그가 취한 강경한 태도로 인하여 생겼을 지도 모를 조선 관원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전권유지·속방조회문·조약체결을 독촉하고, 조약초고를 미리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김홍집은 초고에 찬성하였다. 다만 미곡 수출에 난색을 표하고, 그 타협안으로 인천항에 한하여 수출을 금지하도록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다.55)

조약의 조속한 체결을 바라고 있던 슈펠트는 조선측의 미곡 금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마건충은 미곡 문제를 빙자, 김홍집에게 서함을 보내어(4월 2일) 전권유지와 속방조회문을 독촉하였다. 즉 미사가 두 문건을 받으면 미곡 문제를 승낙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김홍집은 곧 마건충을 방문하여(4월 3일) 두 문건을 건네주었다. 속방조회문은 마건충이 초해준 문안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전권 유지도 그가 초해준 그대로였을 것이다.56)

마건충은 김홍집과 약속한 대로 신임장(전권유지)을 교열하기 위하여 4월 4일(양 5월 20일) 오후, 슈펠트와 같이 인천 행관으로 갔다. 슈펠트로서는 신헌·김홍집의 내방(3월 27일)에 대한 답방을 겸한 것이었다. 잠시 동안 김홍집·마건충은 필담을 갖고 조인을 4월 6일에 하기로 결정한 뒤, 양측 대표들은 곧 신임장을 교열하였다.⁵⁷⁾

예정대로 4월 6일(양 5월 22일) 濟物浦 연안인 仁川府 花島鎭 萬石洞(現 仁 川直轄市 東區 花水洞)에 설치된 帳房에서 양측 대표들은 漢·英文 각 3통의 조약문에 조인하였다. 조인을 마치자 신헌·김홍집은 '約外照會', 즉 속방조 회를 슈펠트에게 수교하였다. 그 요지는, 조선은 본디부터 중국의 속방이지

⁵⁴⁾ 宋炳基, 위의 책, 265쪽.

⁵⁵⁾ 宋炳基, 위의 책, 265~267쪽.

⁵⁶⁾ 宋炳基, 위의 책, 267~268쪽.

⁵⁷⁾ 宋炳基, 위의 책, 268~269쪽.

만 내치 외교는 자주하여 왔으며, 중국의 속방으로서 조선이 갖는 의무는 미국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이었다. 일자는 3월 28일, 즉 조약체결전으로 되어 있고, 朝鮮開國年紀와 中國年號를 병기한 것이었다.58)

조인을 마친 뒤 마건충은 김홍집·슈펠트 등을 위원함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대접하였다. 조약체결 축하연이었다. 마건충은 틈을 타 김홍집과 필담을 갖고 조약 체결에 대한 국왕의 자문과 관계 문건, 즉 조약문과 속방조회문 등을 청국으로 보낼 것을 요청하였다. 이홍장이 국왕에게 보낸 자문에서 요청한 바를 이행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김홍집은 그렇게 할 것을 다짐하였다.59)

한편, 하나부사 요시다다가 반성호로 돌아 온 것은 4월 6일 저녁 때, 마건 충이 베푼 조약체결 축하연이 끝난 뒤였다. 하나부사는 다음 날 아침에 마건 충을 방문하였고, 이어 슈펠트를 방문하였지만, 이미 조약에 간여할 기회를 잃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 이 날 슈펠트는 마건충 등을 오찬에 초청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들과 같이 조약체결의 축배를 들었을 뿐이었다.60)

국왕 배알(4월 10일)까지 마친 마건충은 4월 12일 본국으로 回航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조약 체결차 호도에 온(4월 11일) 영국 전권 월스(Willes, George O.), 뒤이어 온(4월 20일) 프랑스 전권 딜롱(Dillon)과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만 하였다. 귀국이 늦어지자 그는 4월 15일 양위함을 烟臺로 보내어 북양대신에게 조미조약 체결 경위를 보고하게 되었다. 4월 5일 진해함을 보내어 보고한 데 이은 두번째 보고였다. 조선 정부도 양위함 편에 이응준을 청국에 파견, 조약체결에 관한 국왕의 자문과 관계 문건, 즉 조약문과 속방조회문 등을 북양아문과 예부로 移참하였다.61)

Paulin, *op.cit.*, pp.495~496.

奥平武彦, 앞의 책, 136~138쪽.

金源模,《韓美修交百年史》(韓國放送事業團, 1982), 119\.

宋炳基, 위의 책, 269~270쪽.

⁵⁸⁾ 馬建忠,《適可齋記行》(臺灣:文海出版社) 4,〈東行初錄〉光緒 8년 4월 6일.

⁵⁹⁾ 宋炳基, 위의 책, 270~271쪽.

⁶⁰⁾ 宋炳基, 위의 책, 271쪽.

⁶¹⁾ 宋炳基, 위의 책, 271~273쪽.

국왕의 자문 및 마건충의 보고를 받은 서리 북양대신 張樹聲(1824~1884)은 곧〈朝鮮與美國議立和約事竣摺〉을 작성하여(4월 24일) 광서제에게 상주하였다. 그리고 이 날 같은 내용의 서한을 총리아문으로 보냈다. 조미조약의 성 공적인 체결을 알리는 장수성의 상주문에는 "조선을 지켜 잃지 않았다(朝鮮守而不失)"는 우리의 주목을 끄는 구절이 들어 있다. 마건충은 그에게 부여된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였던 것이다.62)

마건충은 조영조약의 체결(4월 21일, 양 6월 6일)을 주선하면서도 속방 조회에 유의하여 그것을 관철시켰다. 그는 또 호도를 떠나기 전날(4월 22일) 김홍집에게 조선이 앞으로 체결하는 수호통상조약에도 중국이 계속 간여할 뜻을 밝혔다. 그리고 그가 밝힌 대로 청국은 조선의 조약체결에 계속 간여하였다. 그리하여 속방조회는 이행되었으며, 그 조회문은 조약문과 함께 북양아문과예부로 이자되었다.63)

한편, 중국측의 견해와는 달리, 슈펠트는 속방조회가 특별한 정치적 의미나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점은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측은 속방조회에 포함되어 있는 서로 모순되는 두 내용, 즉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라는 것과 내치·외교를 자주하여 왔다는 것 중 후자를 더중시하고 존중하였던 것이다.64)

이러한 미국측의 견해는, 고종 20년(1883), 4월(양 5월)에 초대 공사로 부임한 푸트(Foote, Lucius H.)편에 보내 온, 조선 국왕의 속방조회에 대한 아더 (Arthur, Chester A.)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회답국서에 잘 나타나 있다.65)

^{62)《}清季中日韓關係史料》2 (臺灣:中央研究院 近代研究所, 1972), 606~609·66 6~668\\ 6.

張樹聲,《張靖達公(樹聲)奏議》6(臺灣:文海出版社),〈朝鮮與美國議立和約事竣 摺〉.

宋炳基, 위의 책, 273~274쪽.

⁶³⁾ 宋炳基, 위의 책, 271~273쪽.

⁶⁴⁾ 奥平武彦, 앞의 책, 138~141쪽. 宋炳基, 위의 책, 280쪽.

^{65)《}舊韓國外交文書 美案 1》(高麗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67), 18~19\.

조선과 중국과의 관계는 미국 商民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귀 군주가 내치 외교와 통상을 자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국회는 조선과의 수호에 동의하였으며, 본인도 이를 비준하였다. 조선이 자주국이 아니라면 미국은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측에서 조미조약 체결을 주도한 인물은 국왕 고종이었다. 그리고 척족을 대표하는 閔泳翊(1860~1914)과 김홍집·어윤중·김윤식 등 우리가 온건개화파라고 부르기도 하는 소장 관원들이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한편, 역관이응준·변원규·이용숙, 개화승 이동인(중도 탈락)·탁정식 등이 청국측과의연락을 담당하였다. 국왕이나 이 소장 관원들은 장차 있을지도 모를 러시아의 침략이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개화·자강정책도 추진하였지만, 미국 등과 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을 이룩함으로써 이에대처하려고 하였던 것이다.66)

그러나 국왕이나 이 소장 관원들이 생각한 세력균형이란 전통적인 조청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청국의 비호를 받는 가운데 미국 등과 조약을 체결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청국측에서 속방문제를 거론하여도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았다.67) 그리하여 고종 19년(1882) 8월에 체결된〈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前文에'屬邦'을 명문화하는 데도 동의하였던 것이다.

〈宋炳基〉

⁶⁶⁾ 宋炳基, 앞의 책, 281쪽.

⁶⁷⁾ 가령 문의관 어윤중・이조연 등이 김윤식과 같이 4월(1882) 3일 津海關署에서 津海關道 주복과 筆談하는 가운데 어윤중이 "大教大然 然中(魚允中)等雖愚 豈可 不知此理 當以往日所言告之 頃往遊日本也 日人以獨立指本邦 中大言折之曰 爲自 主則可 獨立則非也 有大淸焉 自來奉正朔修侯度 何可曰獨立 彼乃不復言 至謄於 日報矣"라고 밝히고 있다(《淸季中日韓關係史料》2,593쪽;金允埴,《陰晴史》, 133쪽).

4. 유럽 각국과의 조약체결

1) 한 · 영 수호통상조약의 체결

朝鮮과 英國의 접촉은 영국군함 프로비덴스(Providence)호가 1797년 元山 近海를 지나면서 원산만을 그 함장의 이름을 따서 브로우튼 만(Broughton Bay) 이라고 명명할 만큼 일찍 시작되었다. 1861년 영국은 조선과의 관계수립을 모색하여 일본을 통해 釜山의 倭館貿易에 개입했으며, 부산에서 군대주둔권 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1866년에는 청국정부에 조선과의 통상관계를 알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독일인 오페르트(Oppert)를 渡韓시켜 조선정부와 협상 을 주선토록 하기도 하였다.1)

1875년 일본군함 雲揚號가 강화도를 포격하면서 한일관계가 긴박해지자주일 영국공사 파크스(H. Parkes)는 본국정부에 대해 전략적 요지인 巨文島 (Port Hamilton)를 즉시 점령할 것과 조선과 통상관계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2) 당시 일본은 조선이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하여 무역에 대한 전망을 비관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크스는 일본의 평가보다 조선을 훨씬 좋게 생각하였다.3)

그러나 영국의 對韓修交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아 영국정부는 自重論을 펴며 한동안 정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이유는 영국 의 대한수교가 자칫 러시아의 조선 침략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유럽 의 한 강대국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그 나라와 협력하여 조약 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은 당시 러 시아와 터키간의 전쟁(1877)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¹⁾ 송정환, 《러시아의 조선침략사》(汎友文庫 98, 1990), 32쪽. 한・영간의 초기 접촉에 관해서는 李瑄根, 《韓國史 最近世編》(을유문화사, 1981). 746~752쪽.

²⁾ 廣瀬靖子、〈日清戰爭前のィギソス極東政策の考察〉(日本國際政治學會, 1974).

³⁾ F. C. Jones, *Foreign Diplomacy in Korea*, 1866~1894(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35), p.159.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4)

1880년 伊梨문제로 인한 러·청간의 전쟁위협은 다시 조선을 주목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 1881년 駐淸 英國公使 웨이드(Sir Thomas Wade)는 본국으로부터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도록 청국이 협조를 해 줄 것인지를 청국정부에게 알아보도록 훈령을 받자 "러시아가 봄에 조선에서 어떤 항구를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전문을 보냈다.5) 웨이드는 "어떤 한 강대국, 특히 영국이 조선에 간섭한다는 것은 이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러시아의 공격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6) 뿐만 아니라 러·청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는 만주와 조선에 개입할 것으로 인식되었다.7)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2차 그래드스톤(Gladstone) 내각의 외상인 그랜빌 (Granville)은 러시아의 조선병합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이번에도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위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 미국의 슈펠트(Shufeldt)제독의 사명을 지켜보는 입장을 택하였다.8)

영국은 조선과 국교관계를 수립하기 전에 이미 조선과 간접무역을 하고 있었으며 영국의 면제품은 上海에서 나가사키(長崎)로 와서 부산으로 수출되고 있었다. 1877~1878년 사이 부산에서 일본이 이룩한 거래액을 보면 1877년의 무역총액은 299,039圓(1圓은 1\$에 해당)이었고, 일본의 수출액은 85,295圓이었다. 그 수출품의 대부분은 영국제 상품이었다.9)

또 1878년 전반기수입을 보면 일본상품에 대한 조선측의 수요는 下降을 나타냈으나 다른 외국 상품의 수요는 증가를 보였으며, 101,985圓의 총수입 가운데 69,663圓이 외국상품, 특히 영국의 면제품이었다.10) 영국의 對韓 직거 래로서는 1883년 영국의 怡和洋行(Merrs. Jardine, Matheson & Co.)이 제물포에

⁴⁾ 위의 책 166쪽.

⁵⁾ 우철구. 〈19C 후반 영국의 對韓政策〉(《國史館論叢》, 1993, 44), 58쪽,

⁶⁾ E. V. G. Kiernan, British Diplomacy in China, p.79.

⁷⁾ A. Chéradame, Le monde et la guerre russo-aponaise (Paris, 1996), p.74.

⁸⁾ F. C. Jones, op.cit., p.232.

⁹⁾ F. C. Jones, ibid., p.165.

¹⁰⁾ 위와 같음.

서 무역을 하였고 牛皮貿易 및 鑛務·船運事業에도 종사하였다.¹¹⁾

한·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天津에 전해지자(1882. 5. 26) 당시 천진에 와있던 영국공사 웨이드는 즉시 李鴻章을 방문하여 조선과의 교섭을 알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홍장은 영국이 한미조약의 내용과 본 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원한다면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조선에 체재중이던 馬建忠에게 소개장을 써 주었다.

웨이드공사는 아시아함대 사령관 윌스(George Ormumaney Willes)제독을 조선으로 파견하였다. 그는 神戶領事 아스톤(Aston)과 통역 모드(Maude)를 대동하고 군함 비질란트(The Virgilant)호로 일본 나가사키에서 출발하여 5월 27일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5월 30일(음 4월 14일)에는 조선측 全權大官 趙寧夏, 副官 金弘集이 마건충과 함께 윌스를 찾아가 한영조약 속에 속방문제를 삽입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윌스는 본국정부의 훈령이 있어야 한다고 거절하였다. 따라서 양측은 한미조약의 경우처럼 照會로 대치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윌스는 번역관이 上海에서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 조문을 정리한 후 조인하고자하였다. 그러나 6월 5일 갑자기 天津 주재 프랑스 영사 딜통(Dillon)이 군함을 타고 역시 청국정부의 소개장을 갖고 한국에 나타났다. 따라서 윌스는 프랑스에 뒤질까봐 서둘러 6월 6일 한・영 수호통상조약을 조인하였다.12)

그러나 영국정부는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6월 조선과 수호통상조약을 조인한 독일정부에게도 조약비준을 거부하게 하였다. 영국정부가 비준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이 개혁되는 대로 치외법권을 폐지한다는 약속을 영국이 해준 것으로, 이는 단지 영국과 조선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청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13) 둘째, 관세와 톤(噸)稅의 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영국은 최고 30%의 관세를 승인하였다. 셋째, 1842년 南京條約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아편수입금지를 인정한 점과, 넷째, 마건충의 권고에 따라 조선측이 영국여왕의 청호와 함께 인도황제라는 문구를 조약에 삽입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¹¹⁾ 韓活劤、《韓國開港期 商業研究》(一潮閣, 1970), 96\,

¹²⁾ 李光麟.《韓國史講座》V 近代篇(一潮閣, 1981), 113\, 2.

¹³⁾ Kiernan, *op.cit.*, pp.101~102.

영국여왕을 조선왕과 同列에, 그리고 청국황제보다 하위에 서게함으로써 영 국여왕을 모독했다는 점을 구실로 삼았다.¹⁴⁾

한영조약이 아편수입금지와 高率의 관세를 규정한 내용이 알려지자 런던 (London)의 상공회의소는 외무성 앞으로 항의문을 보내고 이러한 조약내용은 영국의 자유무역의 이익을 해친다고 반대하였다.15) 따라서 영국은 조약비준을 유보하고 나가사키 주재영사 아스톤을 한국에 파견하여 비준교환을 연기시킨 후 조약의 修正을 도모하였다.

한편, 壬午軍亂의 처리문제로 조선정부가 파견한 朴泳孝・金玉均・閔泳翊 등 修信使 일행의 일본방문은 영국측에게 조약의 수정을 위한 협상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파크스와 아스톤 서기관은 1882년 10월 16일 민영익과의 회담을 위시하여 10월 23일과 11월 25일에는 박영효・김옥 균 등과 일련의 회담을 가졌다. 이 때 파크스는 영국정부가 윌스조약의 모든 조건을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하였다.16) 이에 대해 박영효가 "만일 한국이 조약개정을 바란다면 이는 韓英 양국정부에 의해 직접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자, 영국은 조약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17) 당시 박영효 등 개화파 인사들은 임오군란 이후 청국의 조선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구미세력을 끌여들여 조선의 자주・독립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의도는 오히려 파크스에 의해 역이용당하였다.18)

일단 영국측은 1883년 1월 9일 박영효 등이 귀국한 뒤 5월에 아스톤을 조선에 파견하여 한·영, 한·독 수호통상조약의 비준교환시기를 1883년 12월 3일 이내로 연기하기로 정정 조인하였다.¹⁹⁾

그 후 駐淸公使로 전임된 파크스는 1883년 10월 27일(음 9월 27일) 全權大臣으로서 서울에 도착하여 조선측 전권대신 민영목과 더불어 협상을 하였다.

¹⁴⁾ F. C. Jones, op.cit., p.313.

¹⁵⁾ F. C. Jones, *ibid.*, p.348. 이광린, 앞의 책. 115쪽.

¹⁶⁾ 최문형,〈韓英修交와 그 歷史的意義〉(《韓英修交100年史》, 韓國史研究協議會, 1984), 56等.

¹⁷⁾ 최문형, 위의 글, 57쪽.

¹⁸⁾ 이광린, 앞의 책 116쪽.

¹⁹⁾ 이선근, 앞의 책 754쪽.

이 때 조선측은 청국의 알선을 배제하고 영국측과 직접 협상하였다. 결국 개정된 한·영 수호통상조약은 1883년 11월 26일(음 10월 27일) 조인되었고,²⁰⁾ 비준은 1884년 4월 28일 督辦交涉通商事務 金炳始와 영국측 전권 파크스 사이에 교환되었다.

한영조약은 全文 13조의 한・영 수호통상조약과 부속통상장정 및 稅則章程 善後續約 3款들로 구성되었다. 한영조약을 한미조약과 비교하면 체제상으로는 한미조약을 모방하였으나 실질적인 권익면에서는 한일조약에 따라 영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거중조정에 관한 부분에서 한미조약 제1조는 "원만한 타결을 가져오도록 주선을 다함으로써 그 우의를 표한다"고 한데 비해 한영조약에서는 "타협을 초래하기 위하여 조정에 노력한다"고 고쳤다. 치외법권의 경우 한미조약이 "日後에 조선의 법률과 재판절차를 수정 및 개정하여 미국의 것과 일치하게 되면 철폐한다"고 규정한 대신 한영조약은 "영국신민이 조선에서 어떤 죄를 범하면 영국 재판당국은 영국법률에 준거하여 이를 재판하여 처벌한다"고 하였다(제3조). 또 영국군함은 개항장 여부를 불문하고 조선 국내 어디든지 정박할 수 있고, 또한 선원의 상륙을 허용할 것을 규정하였다(제8조).

관세율은 월스조약이 물품에 따라 10%에서 30%의 관세를 규정한 것을 5%에서 20%까지로 인하하고, 영국 수출무역의 大宗이던 綿製品은 7.5%로 정하였다. 조약의 유효기간은 한미조약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한데 비해, 한영조약은 10년으로 하였다. 외교대표의 경우 駐淸公使인 파크스가 1884년 3월 7일(음 고종 21년 2월 10일) 朝鮮駐剳公使의 직까지 겸임하였으며 미국의 경우처럼 전권공사(Minister Plenipotentiary)를 서울에 파견하지 않고 아스톤을 총 영사의 직위로 하여 서울에 상주시켰다.

아편전쟁 이후 영국과 청국간에 南京條約(1842)이 체결된 이래 구미열강들이 동양의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체결한 修好通商條約은 불평등조약이었다. 불평등조약의 핵심내용은 바로 치외법권, 관세자주권 결여 및 최혜국조항 (Most Favoured Nation's Claues)이었다. 영국을 비롯한 19세기의 제국주의 열

^{20)《}舊韓末條約彙纂》中, 311\.

강들은 이 불평등조약을 법적 근거로 하여 상품을 교역하고 원료를 공급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영국은 윌스가 체결한 한영조약이 동양에 있어서 영국의 통상교역에 불이익을 가져오고 다른 나라와의 통상에 나쁜 선례를 남길수 있다는 고려에서 이를 비준하지 않은 것은 불평등조약에 근거한 전형적인 자본주의 침략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2) 한 · 독 수호통상조약의 체결

문헌상 독일이 조선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614년 간행된《芝峯類說》에서이다.21) 그 후 1866년 3월 오페르트(Ernst Jacob Oppert)가 로나(Rona)호로 來韓하여 통상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하고, 같은해 8월 6일 다시 엠페러(Emperor)호를 타고 와서 통상을 요구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1868년에 오페르트는 차이나(China)호를 타고 프랑스 신부 페론(Féron)과 미국인 젠킨스(Jenkins)를 대동하고 3번째로 入國하여 아산만의 南延君墓를 도굴하려 하였다. 1870년 5월 3일 駐日代理公使 브란트(Brandt)는 군함 헤르타(Hertha)호에 탑승하고 부산에와서 통상교섭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자 空砲로 위협사격을 가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22) 그 이듬해 4월 독일상선이 항해 도중 백령도에 표류하여 중국으로 돌려 보낸 사건이 있었으나 별다른 교섭은 없었다.23)

잘 아는 바와 같이 독일은 1871년 비로소 민족통일을 완성한 후 1880년대까지 대외적으로는 유럽 중심의 大陸保障政策에 치중하였고 대내적으로는 경제발전에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해외로 진출할 경제적·군사적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독일은 한반도 진출에 그다지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1882년 5월 한국과 미국간에 修好通商交渉이 진행되자 독일도 한 국과의 수호통상교섭을 시도하였다. 독일은 한미수교가 이루어지기 1개월 전 에 주일 브란트공사를 全權大臣으로 임명하고 독일황제 빌헬름 I 세(Wilhelm

²¹⁾ 李泰永,〈韓獨修好通商條約의 成立〉(《韓獨 100年史》, 1984), 31쪽.

²²⁾ 국사편찬위원회, 《高宗時代史》 --, 고종 7년 5월 4일, 492쪽.

^{23) 《}通交館志》권 11, 紀年續編, 今上 8年 辛末. 李泰永, 앞의 글, 33쪽.

I)는 1882년 4월 조약체결을 바라는 친서를 보냈다.

한국과의 조약체결을 위해 브란트공사는 미국,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홍장의 알선을 받고자 하였다. 그 준비로서 브란트는 上海로 가 슈펠트 (Schufeldt)제독을 만난 후 북경으로 돌아와 독일정부가 보낸 전권 위임장과 훈령을 가지고 이홍장을 만나기 위해 天津으로 갔다. 그때 이홍장은 母喪中이어서 그는 대신 兩廣總督 張樹聲을 만났다. 그는 淸國官理가 조약체결에 입회하고 또 한・미, 한・영조약과 동일한 조약으로 한다는 조건하에 조약체결을 알선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4 청국이 독일을 조선과 조약을 맺도록 한 것도 미・영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외교책략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브란트는 청국의 소개장을 가지고 독일 아시아함대 사령관 폰 블랑(von Blanc)제독과 함께 1882년 6월 18일(음 5월 3일) 芝罘를 떠나 한국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군함 스토쉬(Stosch)호와 砲艦 울프(Wolf)호를 타고 6월 20일 (음 5월 5일) 濟物浦의 月尾島에 도착하였다.25) 또 청국의 馬建忠과 丁汝昌이 한・독간의 조약체결을 돕기 위해 청국군함'威遠'호를 타고 6월 23일한국으로 왔다.26)

한편 조선정부는 趙寧夏를 全權大臣, 金弘集을 副官으로 삼아 이들로 하여금 교섭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從事官에 李祖淵, 伴接官에 趙準永을 차출하였다. 27) 조영하를 비롯한 조선측 대표들은 6월 27일 마건충의 안내로 月尾島에 정박중인 독일군함으로 브란트 전권을 예방하고 서로 전권위임장을 교환한 후 교섭을 시작하였다. 그 후 3일 동안의 교섭 끝에 1882년 6월 30일 14개조로 된 한・독 수호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은 한영간에 체결된 윌스조약처럼 비준교환되지 못하였다. 브란트는 이 조약의 비준교환이 늦어질 것을 예측하고 별도의 照會로 비준 교환에 앞서 독일상인이 한국에 오게되면 다른 나라 상인과 동등하게 무역 행위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한국측도 이를 승인하였다.28)

²⁴⁾ 李瑄根, 앞의 책, 759쪽.

²⁵⁾ 李泰永, 앞의 글.

²⁶⁾ 李普珩,〈歐美諸國에 대한 通商修好條約締結〉(《한국사》16, 국사편찬위원회, 1975), 231쪽.

²⁷⁾ 李瑄根, 앞의 책, 759쪽.

브란트가 체결한 한독조약이 비준되지 못한 까닭은 월스가 체결한 한영조약에 불만을 품은 영국이 독일에 대해 보다 유리한 조건의 조약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영국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측은 駐日독일공사 된호프(Dönhof)의 명의로 1883년 12월 31일까지 비준연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1883년 3월 31일자로 독일황제는 자페(Zappe, 擦見)를 한ㆍ독 수호조약체결의 全權大臣으로 임명한다는 통보를 보냈다.²⁹⁾

전권대신 자페는 독일군함 라이프찌히(Leipzig)호를 타고 인천에 도착하여 영국전권 파크스와 합의를 한 후 그와 함께 상경하여 새로운 조약초안을 작성하였다.30) 이들은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초안을 정리하여 11월 3일 (음 10월 4일) 조선정부에 제출하였다. 조선정부는 總理交涉通商事務衙門 督辦閔泳穆을 전권대신에 임명하여 자폐와 협상케 하였다.

이 협상에 청국측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당사국인 한독간에 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滯韓中이던 吳長慶과 마건충은 뒤에서 도와주었다. 이홍장은 통상이나 稅則事項은 한국이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일은 청국과의 照會정신에 위배됨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서신을 보낸 바 있다.31)

민영목과 자페 兩全權은 한달 동안의 협상을 전개하여 1883년 11월 26일(음 10월 27일) 수정된 한독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한·독 수호조약 13개조와 부속통상장정 및 선후속약으로 되어있다. 32) 비준교환은 1884년 11월 18일(음 10월 19일) 한국측 전권 김홍집과 독일측 전권 젬브시(Zembsch; 曾額德)사이에 이루어졌다. 33) 그리고 젬브시는 초대 주한 독일총영사로 임명되었다.

독일은 한국과의 수교과정에서 총영사를 파견하여 조약을 조인·비준케하였고, 서울에 상주시킨 대표 역시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영사의 직급이었다. 이 점에서 본다면 독일 역시 청국의 對韓宗主權을 시인하는 입장을 취했다.34)

²⁸⁾ 위와 같음.

^{29) 《}舊韓國外交文書》 德案 문서번호 9,6~7쪽.

^{30) 《}高宗時代史》二, 고종 20년 9월 27일, 505~506쪽.

³¹⁾ 李普珩, 앞의 글, 223쪽.

^{32) 《}高宗時代史》二, 고종 20년 10월 27일, 514쪽.

^{33) 《}高宗時代史》 二, 고종 21년 4월 3일, 595쪽.

3) 한 · 러 수호통상조약의 체결

韓露 양국이 국경을 접하게 된 것은 1860년 露淸간에 체결된 北京條約에 의해서다. 1854년 이미 영흥만을 측량하고 조선에 대해 관심을 보이던 러시아는 국경을 접하게 된 이후 더욱 빈번하게 두만강을 넘어서 또는 海路를통해 조선과의 통상수교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원군 집정하에서 쇄국정책으로 일관한 조선정부는 이를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이 당시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기도는 不凍港獲得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러시아는 본국과 아시아領과의 연결이 육로교통의 험준한 장 애 때문에 주로 해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부동항은 필수적이었 다. 대서양과 지중해를 통한 진출이 좌절된 후 러시아는 일단 대마도를 고려 했으나 영국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따라서 러시아가 한반도에 관심을 갖게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러시아측은 한반도 접근에 신중했다. 왜 냐하면 영국과 청국이 강한 의혹의 눈길로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 가 러시아는 이 목적을 달성할 만큼 군사력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1888년까 지 연해주 주둔병력은 常駐 코사크를 제외하고는 15만 명에 불과하였다.35) 또한 조선측의 러시아에 대한 공포증도 매우 컸다. 대원군 집정기간에 야기 된 병인양요도 러시아의 수호ㆍ통상요구로 인해 야기되었다. 1876년 조선이 개국된 이후에도 조선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공포감과 기피증을 가지고 있었 다. 그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영국의 사주를 받은 청국과 일본이 조선으 로 하여금 러시아를 두려워하도록 만듦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을 갖도 록 헸기 때문이다. 1880년 수신사 김홍집이 日本使行 때 주일청국공사관 黃 遵憲은 러시아의 탐욕과 침략성을 강조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親中國'. '結日本', '聯美國'하여 '防俄'할 것을 권고하는 〈私擬朝鮮策略〉을 그에게 주었 다. 일본도 또한 기회있을 때마다 조선에 대해 防俄的 태도를 촉구하였다.36)

³⁴⁾ 李普珩, 앞의 글, 233쪽.

³⁵⁾ 崔文衡、〈韓露修交의 背景과 経緯〉(《韓露修交 100年史》, 韓國史研究協議會, 1984), 59等.

그러나 조선이 러시아에 대한 공포감으로부터 벗어나 양국이 근접할 수 있는 몇 가지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하나는 고종과 개화파인사들이 청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즉 조선이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후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점은 청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주・독립을 이룩하려는 열망이었다. 그러한 열망은 임오군란 이후 청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오자 구미세력을 끌어들여 세력 균형을 이름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국・영국・독일뿐만 아니라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던 러시아・프랑스와도 수교를 해야 한다고 인식한 점이다.37) 게다가 고종이 가지고 있던 미국과 영국에 대한 기대도 실망으로 바뀌면서 친러방향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는 1883년 해관창설과 外部顧問의 임무를 띠고 조선정부에 초빙되어온 묄렌도르프(P. G. von Möllendorff, 穆麟德)의 친러정책이다. 묄렌도르프는 이홍장이 추천·파견한 親淸인물로서 조선에서 일본세력의 성장을 견제하고 동시에 러시아 세력의 침투를 저지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부임한 후 친러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가 外部(總理衙門)의 고문으로 취임하여느낀 것은 조선에 미치는 청・일의 정치적 세력이 너무 강대하여 그것이 조선의 자주·독립을 저해한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조선은 러시아에 의지해야한다고 생각했다.38) 그가 러시아세력을 조선에 끌어들인 데에는 그의 조국독일로부터 권고를 받았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39) 여하튼 그는 적극적으로 한・러 수호통상조약을 추진하였다. 나아가국왕에게 러시아 군사교관을 초빙토록 획책하였으며 그 대가로 元山灣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밀약을 도모하기도 하였다.40)

셋째, 閔泳翊을 중심으로 한 세력도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

³⁶⁾ 禹澈九, 〈露·日 戰爭前 韓國의 北方關係(1898~1903)〉(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정치외교사학회논총》6. 1989), 132쪽.

³⁷⁾ 이광린, 《開化黨研究》(一潮閣, 1973), 45~49쪽. 최문형, 앞의 글(1984), 66쪽.

³⁸⁾ 高柄翊,〈穆麟德의 手記〉(《震檀學報》24), 166~167\.

³⁹⁾ 崔文衡, 앞의 글(1984), 68쪽.

⁴⁰⁾ 禹澈九, 앞의 글(1989), 133쪽.

었다. 즉 遺美使節로서 세계일주를 하고 돌아온 민영익은 "러시아의 강대함이 경탄을 마지못 할 정도이며 조만간에 러시아의 세력이 한반도에도 미칠 것이니 조선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책"이라고 건의하였다.41)

한 · 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에 청국주재 러시아공사는 즉시 이홍장에게 주선을 요청했으나 이홍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조선과의 조약체결의 임무를 맡은 천진 주재 러시아 영사 웨베르(K. I. Carl Waeber)는 이홍장이 추천, 파견하는 묄렌도르프에 착안하고 그가 부임하기 전 벌써 그를 찾아가는 기민성을 발휘하였고,⁴²⁾ 마침내 그를 설득하여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조선정부는 이홍장이 파견한 묄렌도르프의 행동을 중시하였다.⁴³⁾

조선정부는 外務督辦 金炳始를 전권에 임명하여 러시아전권 웨베르와 회담한 결과 1884년 7월 7일 13조로 된 한・러 수호통상조약과 3조의 부속통상장정・세칙・세칙장정 및 善後續約에 조인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1885년 10월 6일(음 고종 22년 8월 28일) 웨베르는 러시아 대리공사겸 총영사의 자격으로 서울에 와서 10월 14일 外務督辦 金允植과 한러조약의 비준을 교환하였다. 조약의 체제와 내용은 한영조약과 비슷하며 영국의 경우처럼 러시아의군함도 조선의 모든 항구에 자유롭게 입항하도록 규정하였고 조선영해의 측량, 海圖의 작성 등을 허여하였다. 치외법권 및 관세의 규정도 한영조약과 끝았다.44)

그 후 1888년 9월 20일(음 7월 13일)에는 韓露陸路通商章程이 체결되었고 그 결과 함경도의 慶興이 새로운 開市場으로 지정되었다. 이 때 한국측 전권 은 趙秉式, 러시아측 전권은 웨베르였다.⁴⁵⁾

⁴¹⁾ 林毅陸、《金玉均傳》(上) 昭和 19年, 282쪽,

⁴²⁾ F. O. 17/900 No. 14. the most confidential, Grosvenor to Granvielle(Peking, November 25, 1882.)

⁴³⁾ 李瑄根, 앞의 책, 767쪽.

^{44)《}舊韓末條約彙纂》下. 4~42\.

^{45) 《}高宗時代史》 三, 고종 25년 7월 13일, 30쪽.

4) 한・불 수호통상조약의 체결

한불관계는 프랑스 선교사의 선교활동으로 인하여 서양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일찍 시작되었다. 즉 프랑스 선교사들은 1836년부터 조선에 진출하였다.46) 그러나 선교사들에 의한 천주교 傳敎活動으로 말미암아 조선에서는 선교사 및 조선인 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1866년에는 9명의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함으로서 韓・佛 양국간에 무력충돌을 야기한 로즈(Roze)제독의강화도 원정이 단행되기도 하였다.

1866년 로즈사령관의 강화도 원정 이후 프랑스는 당분간 조선에 대하여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 프랑스가 멕시코 원정에서실패하였고, 나폴레옹 3세 자신도 나이가 들고 병을 앓았을 뿐만 아니라 漸增하는 北獨逸聯合勢力에 대처하여야만 하는 입장에 처하였다.47) 따라서 제너럴셔먼(General Sherman)호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프랑스에 대해 조선에 대한 共同遠征을 제의했을 때에도 프랑스는 이를 거절하였다. 뿐만 아니라조선원정문제로 駐淸 프랑스 대리공사였던 벨로네(Bellonet)가 물러나고 랄르 망(Lallemand) 공사가 1867년 5월에 駐淸 프랑스 공사로 부임하여 또 다시본국정부에 대해 조선원정을 강조하였으나 이것도 묵살되었다.48)

18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홍장은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영국 등 서양열 강과 조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홍장은 프랑스가 한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비협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즉 1882년 5월에 조선이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자 天津駐在 프랑스 공사 딜롱(Dillon)은 1882년 6월 5일 조선과의 조약체결을 위해 인천에 도착하였다. 그는 윌스 제독과 마찬가지로 이홍장의 편지를 휴대하고 왔다. 이홍장은 딜롱이 소개장을 요구하자 마지못해 써주기는

⁴⁶⁾ 崔奭佑, 〈韓佛條約체결 이전의 양국관계〉(《韓佛修交 100年史》, 韓國史研究協議會, 1986), 1쪽.

⁴⁷⁾ F. C. Jones, Foreign Diplomacy in Korea 1866~1894(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35), p.30.

⁴⁸⁾ 禹澈九, 〈清・日戰爭을 前後한 프랑스와 한국〉(《韓佛修交 100年史》), 134쪽.

하였다. 그러나 결국 韓英條約의 체결을 위해 서울에 와 있던 馬建忠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마건충은 딜롱에게 조선에서의 천주교 傳教禁止를 주장함으로써 양국간의 조약체결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였다. 전교금지는 통 킹문제로 야기된 청・불간의 관계악화로 말미암아 청국측이 한・불간의 조약체결을 방해하는 구실로 이용되었다. 49) 마건충의 방해로 고종은 딜롱이 한불조약의 체결을 위해 한국에 온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50)

그 후 1886년 6월에 꼬고르당(George Cogordan)이 전권의 자격으로 조선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고종이 가급 적 청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로서 발돋음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던 시기로서 조선측은 꼬고르당 전권을 맞이하여 김윤식을 전권에 임 명하여 적극적으로 조약체결을 교섭케 하였다.

조약협상과정에서 원세개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김윤식은 金晚植으로 교체되었다. 김윤식은 親淸人物이며 당시 조선의 '감국대신' 노릇을 하던 袁世 凱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그의 교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보아야 할 것이다. 즉 그것은 조선이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함으로서 청국 또는 원세개의 영향력을 배제코자 하는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정부는 4월 16일(음)자로 김만식을 전권대신으로 임명하고 데니(O. N. Denny, 德尼)를 그와 함께 조약체결을 商辦케 하였다.51)

이에 앞서 프랑스 전권 꼬고르당이 한・불 수호통상조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淸總理交涉通商事宜 원세개를 통하여 天主教傳教를 허락하고 敎民을 보호할 것을 요청하여 오자 김윤식은 예부터 禁敎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戚族 閔氏 등은 원세개의 직책이 商務官이므로 商務만을 전념할 뿐 다른 일에 간여할 수 없음을 항의한 적이 있고 이 후 김윤식은 고종에 의해 배척되었다.52)

한불조약은 청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

⁴⁹⁾ Chine, 1882, Correespondance politique No. 90, le 13 juin, 1882. 禹澈九. 위의 글, 135쪽.

⁵⁰⁾ 유흥렬, 《조선천주교회사》(조선천주교회 순교자현양회, 1949), 839쪽.

^{51)《}高宗時代史》二, 4월 16일, 18, 834쪽.

^{52) 《}高宗時代史》 二, 4월 6일, 831~832쪽.

공을 보게된바 1886년 6월 4일 13개조항으로 된 조약이 김만식과 꼬고르당사이에 조인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5월 30일 外務督辦 김윤식과 프랑스全權 꼴랭 드 쁠랑시(Collin de Plancy, 葛林德) 사이에 비준이 교환되었다. 한불조약은 대체로 한・영조약을 모방한 불평등조약으로서 이 역시 치외법권, 영사재판권, 관세자주권의 결여, 최혜국조관 등을 빠짐없이 규정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측은 조약 9조 2항의 '敎誨'라는 말을 천주교 포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전교의 권리를 주장하였고 한국정부도 결국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53)

5) 기타 유럽국가들과의 조약체결

한국은 이태리와 1884년 6월 26일 13개 조항으로 된 韓伊修好通商條約과 부속통상장정, 세칙 및 세칙장정을 조인하였다. 조선측 전권은 金炳始 외무 독판이었으며 이태리 전권은 페르지난드 데 루카(Ferd. de Luca)였고 비준은 1886년 7월 24일 교환되었다.54) 그리고 1885년 7월 10일 외무독판 김윤식과 이태리 전권으로 水師總兵 엔리코 아치우니(Enrico Acciuni) 사이에 한・이수호통상조약 속약이 체결되었다.55)

한국과 오스트리아간에는 1892년 6월 23일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韓・墺 修好通商條約, 附續通商章程, 稅則, 稅則章程 및 附續約款이 일본 동경에서 조인되었다. 한국측 전권은 駐日公使署理 權在衡, 오스트리아 전권은 비에게 레벤(Roger de Biegeleben)이었으며 비준교환은 1893년 10월 6일(음 9월 8일)에 이루어졌다.56) 照會도 전례와 같이 手交되었다.

한국과 벨지움간에는 1901년 3월 23일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韓·白 修好通商條約, 附續通商章程, 稅則 및 稅則章程이 한국 전권인 外務大臣 朴齊純과 벨지움 전권 레옹 벵까르(Léon Vincart, 方意)와의 사이에 서울에서 조인되

^{53)《}舊韓末條約彙纂》下. 87\.

^{54)《}舊韓末條約彙纂》中, 432\.

^{55)《}舊韓末條約彙纂》中, 489쪽,

^{56)《}舊韓末條約彙纂》下, 152~153쪽.

었고. 10월 17일 비준이 교환되었다.57)

한국과 덴마크 사이에는 1902년 7월 15일 外務大臣 臨時署理 兪箕煥과 덴마크 대표로 러시아 특명전권공사 파브로프(A. Pavlov) 사이에 서울에서 조인되고 이듬해 8월 11일 비준·교환되었다. 한·벨지움수호통상조약과 한·덴마크수호통상조약은 청일전쟁 이후 청국이 한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한 뒤에체결되었기 때문에 조회는 수교되지 않았다.58)

〈禹澈九〉

5. 개항의 역사적 의의

바야흐로 21세기를 맞이한 오늘의 상황은 단순히 연대기상으로 세기말의전환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인류사회의 모습이 크게 바뀌어지는 전환기라할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1980년대 후반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해체로 냉전체제가 종식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세계화'로 표방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가 전지구화하고 계층별 국가별 격차가 커지는 등 세계사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른바 '세계화시대'의 도래로 개인과 집단,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역사전개 과정이 단순히 개인과 개인, 집단과 민족 내부 성원간의 관계로 한정되지 않고 전지구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사회현상은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출현하였을까. 역사학에서 시대구분을 할 때 현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시기를 '근대'라고 명명하는데, 근대사회의 일반적 특징으로 자본주의적생산양식 및 시장경제의 확립, 발전된 과학기술과 합리적 사고방식 및 원칙, 새로운 사회세력인 시민 혹은 계급의 형성 등을 들고 있다.1) 즉, 인류는

^{57)《}舊韓末條約彙纂》下, 206쪽.

⁵⁸⁾ 李普珩, 앞의 글, 239쪽.

¹⁾ 김동춘, 〈사상의 전개를 통해 본 한국의 '근대'모습〉(《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역사비평사, 1996), 274쪽.

산업혁명 이후 분업과 협업,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적 생산양식을 보편적으로 수용하였고,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과 보급에 힘입어 지구 전체를 하나의 시장,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어낼 수 있었던 것 이다.

이처럼 전근대사회의 국가간 교류가 대체적으로 지역적으로는 문명권을 단위로 하였고, 교류의 내용 또한 제한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산업혁명 이후 형성된 근대사회의 국제관계는 전지구를 단일시장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 체제 위에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대사회에서 민족과 국가간의 접촉과 결합은 단위국 내 부의 요인이나 지역으로 제한되었던 문명권 내의 요인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서구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봉건사회 내부에서 싹튼 반봉건적인 여러 요소들을 토대로 자본주의를 자생적으로 발달시킨 반면 비서구 국가들은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자립적인 변혁을 수행하기 이전 단계에서 선진자본주의 열강의 시장권에 강제로 편입되었다. 즉, 비서구 국가들이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은 외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에의해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형성과정과 밀접하게 맞물리면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 학계의 연구는 한국사의 전개과정에서 근대사회 출현의 출발점으로 강화도조약을 전후한 시기 한국사회의 변화에 비중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²⁾ 한국사회에서도 조선후기 이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맹아들이 자체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편입되면서 그 발전이 왜곡되기 시작하였다.

이 글에서는 강화도조약과 개항의 의의에 대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편입과 조선사회의 대응과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근대사와 일본근대사의 연구성과들은 이른바 '서양의 충격'에 대한 수동

²⁾ 김경태, 〈한국근대사의 기점과 시기구분문제〉(《국사관논총 50》, 국사편찬위 원회, 1993); 《근대한국의 민족운동과 그 사상》, 이대출판부, 1994, 13~30쪽 재수록.

적인 대응의 역사로 이해해 왔던 종래 아시아 근현대사에 대한 관점을 비판하고, "아시아사의 내적 구조와 역사적 전개의 논리, 아시아 전근대사와 근대사의 연속성을 검토"함으로써 아시아의 입장에서 아시아 근현대사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3) 이러한 관점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를 한국근대사에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하기에는 한국근대사의 개별 사실에 대한 세계사적 차원에서의 분석이 충분하지 않고, 중국사와 일본사와의 차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1) 강화도조약과 자본주의 세계체제

'西勢東漸'은 역사적으로 서구의 동양진출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서세의 동점현상은 16세기 이래 선교사를 비롯한 종교의 전파를 시작으로, 상인의 진출에 의한 시장권의 확보 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서세의 동아시아 진출과 그 성격은 전근대사회의 그것과 판이한 것이었다. 19세기 후반 서구열강의 동아시아 진출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체와 계기, 그리고 외압의 질적인 차이점이라 할 것이다.

18세기 중반부터 산업혁명을 거쳐 면업 중심의 산업 근대화를 급속하게 추진하였던 영국은 19세기에 접어들어 중상주의 국가에 의한 독점무역의 폐지와 자유무역 등을 주장하면서 본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그 결과 세계무역시장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높아져 1800년 경에는 세계무역의 33%를 차지함으로써 이른바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1830년대 이후 프랑스·독일을 비롯하여 미국과 러시아 등 후발자본주의 국가들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척되면서 해외에서의 시장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서구의 산업은 석탄과 철에 기초한 산업에서 철강·석유·화학·전기에 기초한 산업으로 재편

³⁾ 溝口雄三・濱下武志 外編,《アジアから考える》全7卷(東京大出版部, 1993~1994).

濱下武志、〈アジアの〈近代〉〉(《世界歷史》20, 岩波書店, 1999), 3~65쪽.

되었고, 새로운 산업의 기초는 비서구지역으로부터 원료와 에너지원을 끊임없이 공급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때문에 비서구지역에 대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었고, 1873년 이후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직면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서구 자본주의 열강의 무역정책 기조도 자유무역에서 보호주의 혹은 신중상주의 정책으로 변화하면서 경쟁과 갈등은 더욱치열해졌다.

이같은 경제부문의 변화는 그 질과 양이 증폭되면서 이른바 신제국주의 현상이 등장하였다. 신제국주의는 19세기 전반기의 자유무역에 근거한 제국주의와는 현저하게 다른 성격을 지닌 것이었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호무역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영토확장이 전 세계적 규모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자본주의 국가들내의 지배엘리트, 군부, 그리고 제국주의적 단체들 사이에 국가자원의 조직화 등을 강조하는 세계관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재편과 변동의 시기에 영국의 대응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였고, 독일·미국 등 후발자본주의 국가들이 두각을 나타냈으며, 19세기 후반기에 들어 일본이 이들 국가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4) 19세기 중후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서구의 진출은 이와 같은 서구자본주의 국가들간의 경쟁을 배경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19세기 중후반 서구세력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개방 압력은 그 시기와 계기, 그리고 주체에 따라 상이하게 가해졌고, 이러한 차이는 결국 조선·청국·일본 3국이 각기 다른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선 영국정부는 1757년 이래 朝貢貿易의 원칙과 방식에 입각한 제한무역의 형태로 실시되어 왔던 이른바 중국과의 廣東무역체제를 청산하기위해 1832년 동인도회사의 대중국무역 독점권을 폐지하고 중국시장의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영국은 압도적인 군사적 우세를 바탕으로 아편전쟁(1839~42)에서 승리하였고, 그 결과 南京條約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내용에는 홍콩의 할양, 광동·上海 등 5항구 개항, 公行의 독점무역 폐지 등이 들어 있었고, 이어 협정관세제, 영사재판권, 최혜국조관, 개항장의 군함정박권

⁴⁾ 김기정, <19세기 후반기제국주의와 동아시아〉(《1894년 농민전쟁연구 3》, 역사 비평사, 1993), 11~15쪽.

등이 추가되었다. 한마디로 이 조약은 중국의 관세자주권과 사법권을 박탈하고, 중국에 대한 특권을 균점할 뿐 아니라 군함을 임의로 파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한 전형적인 불평등조약이었다. 이러한 불평등조약은 미국·프랑스·스웨덴·러시아 등과도 잇따라 체결되었다.

그러나 남경조약 체결 이후에도 기대했던 것만큼 중국에 대한 수출이 증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은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방·확대시키기 위해 또다시 砲艦外交를 강행하였다. 1856년에 애로우(Arrow)호사건을 빌미로 영·불 연합군은 廣州와 天津을 점령하고 천진조약을 맺었으며, 1860년에는 이조약의 비준을 중국이 거절하자 급기야 北京을 침략하여 북경조약을 체결하였다. 두 조약을 통해 서구 열강은 개항장을 증가시켰고, 아편무역을 공인토록 하였으며, 九龍반도를 할양받는 등 그 이전에 미처 확보할 수 없었던 각종 특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의 주요 지역이 서구 열강에 개방됨으로써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급속하게 편입되었다.

한편 일본에 대한 개방 압력은 1848년 스페인으로부터 캘리포니아를 할양받아 태평안 연안 국가로 등장하였던 미국에 의해 시도되었다. 특히 미국의일본진출은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개발되고, 아메리카 서해안으로부터 중국을 연결하는 태평양 정기항로 개척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구체화되었다. 미국은 1853년 페리(M. C. Perry) 파견하여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개항을 요구하는 국서를 제시한 후, 다음해 1월 9척의 군함을 동원하여 조약체결을 요구하였고 3월 조약체결에 성공하였다. 이 조약에는 시모다(下田)·하코다테(箱館) 2항구의 개항, 음식료·땔감 등의 공급, 조난선원의 구제 등이 규정되었고,나아가 일방적인 최혜국조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조약이 영국·러시아·네덜란드 등과도 체결되었다.

1858년에는 양국간에 본격적인 통상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미일통상조약이 조인되었다. 이 조약을 맺게 된 직접적인 배경에는 영·불 연합군의 천진 점령을 내세워 일본에게도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이 깔려 있었다. 이 조약은 요코하마(橫浜)·나가사키(長崎) 등 4개 항구의 추가 개항,에도(江戶)·오사카(大坂)의 개시, 협정관세제, 영사재판권, 거류지 설치 등이 규정된 불평등조약이었으며, 관세율만 달랐을 뿐 같은 해 체결된 천진

조약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로써 일본도 중국에 이어 자본 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 에서 조선만이 유일하게 서구 열강에 의해 개방되지 않은 나라로 남게 되 었다.

영국의 상선 로드 앰허스트호가 조선에 대하여 통상을 요구하였던 1832년 이라는 시점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영국정부가 동인도회사의 대중국무역 독점권을 폐지하고 중국시장의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던 시기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영국산업자본주의 세력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전개하였던 시장개방 압력의 대상에 조선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조선에 대한 자본주의 열강의 개방 요구는 중국 및 일본시장에 대한 개방 요구와 동일한 시기에 시도된 것이었다.

그러나 청국과 일본이 영국과 미국의 무력행사에 굴복하여 각기 1842년과 1854년 불평등조약을 체결,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었지만 조선은 이들 국가와 다른 경로를 밟았다. 인접국가인 청국·일본과는 달리 조선에 대한 서양의 개방 압력은 시기적으로 20여년이 지난 1866년(병인양요)과 1871년(신미양요)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가해졌다. 군사력을 앞세운 개방 요구는 후발자본주의 국가들이었던 미국과 프랑스의 무력도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선은 1860년대 이후 두 차례의 양요를 치르면서 서구 열강의 우월한 군사력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척화비를 세우는 등 쇄국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당시 서구 열강은 거대 시장인 중국의 개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데다가 국내문제로 말미암아 조선의 개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이 틈을 타서 메이지유신(明治維新)으로 국가권력의 집중화를 시도하던 일본이 서구 열강의 직간접적인 지지를 받아 조선의 개항에 앞장섰다. 쇄국을 견지했던 대원군정권이 붕괴하고 고종이 친정체제를 출범시킨 후 일본에 대한 유화정책을 펼치자 일본은 이른바 '征韓'으로 내부의모순을 외부로 돌리는 동시에 국권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1875년 운요호(雲揚號)사건을 일으킨 뒤 다음해 서구 열강의 포함외교를 모델로 불평등조약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조일수호조규에 뒤이어 조인된 각종 문서에는 부산ㆍ원산ㆍ인천 등 3항구

의 개항, 영사재판권, 연안측량권, 일본화폐 유통, 미곡의 자유로운 수출, 최혜국조관, 그리고 무관세무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9세기에 접어들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원료공급지, 상품판매시장, 그리고 자본투하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갈등을 연출하면서 전지구적으로 확대되었던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조선의 개항에 의해 비로소 전지구적인 연결망 구축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선은 강화도조약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었으나 실제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직접적으로 개방되었던 것은 강화도조약 이후 6년이 지난 뒤 시도되었던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과 1883년 조영수호조약을 통해서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국·일본과 달리 조선이 자본주의 시장체제에 편입되었던 19세기 후반은 1780년대에 이미 자국의 산업혁명을 일단락지었던 영국과 1830, 40년대에 산업혁명을 수행했던 후발자본주의 국가들이 동아시아지역에서 그들의 세력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던 시기였다. 조선에 대해 개항과 통상을 요구하였던 세력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로 이지역에서 세계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영국이 아니라, 1830년대 내지 1840년대 국내 산업혁명을 경험하였던 후발자본주의 국가 프랑스와 미국이었으며, 실제로 조선을 자본주의 시장체제에 강제적으로 편입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세력은 동일문명권내의 인접국 일본이었다.

그 결과 1876년 당시 조선이 직면했던 외압의 규모와 성격은 1840, 50년대 초반 열강들간의 견제나 간섭이 없는 가운데 영국과 미국에 의해 개항된 청국・일본이 외부로부터 받았던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특히 개항의 직접적계기가 자본주의 열강과 불평등조약 체계 아래 있었던 같은 문명권의 일본에 의해 주어졌다는 사실이 이후 조선이 새로운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였다.

개항 이후 조선의 국제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華夷질서가 무력을 앞세운 서양열강의 침략으로 해체되어 서구 중심의 萬國公法的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 조선과 청국. 조선과 일본의 관계

와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해 다양하게 분석을 시도하여 야 할 것이다.

2) 불평등조약체제의 수립과 그 영향

개항 직전의 조선사회는 농업·광업·수공업 등 산업 전부문에 걸쳐 자본 주의적 요소들이 나타나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萌芽的 형태에 머물렀을 뿐 지배적인 생산양식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세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개항은 외국 자본제 상품의 대량유입과 미곡을 비롯한 국내 1차 산품의 대량유출을 가져와 국내산업 전반에 심각한위기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개항 이후는 외국상품의 침투에 대응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육성책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열강과 맺은 불평등조약체제 하에서 조선정부는 효율적인 국내산업 보호육성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

더욱이 조선은 자본주의적 성장이 미숙하였던 일본에 의하여 개항을 맞이하였고, 직접적으로 외압을 가하는 주체가 청·일 양국이었다는 점 때문에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들 양국은 서구열강에 의하여 제국주의적침략을 받으며 근대로 급속한 이행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국내의 사회적 모순을 조선사회로 전가시킴으로써 자국 자본주의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하였다. 따라서 조선에 대한 경제적 외압에는 순수한 경제적 침략보다는 주로 정치적·군사적 방식을 통한 폭력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 결과 조선은 서구 제국주의를 배경으로 한 청·일 양국의원시적 축적형 외압에 직면하여 이른바 '이중의 외압'을 받게 되었다.5

강화도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같은 해 8월 조인된 조일수호조규부록·조일통상장정과 함께 전형적인 불평등조약이었다. 세 항구의 개방·영사재판권에 의한 치외법권·일본화폐 유통권을 비롯하여 근대적 관세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무관세 무역까지 용인함으로써

⁵⁾ 梶村秀樹,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帝國主義體制로의 移行〉(《開發途上經濟の研究》, 世界社, 1981); 《韓國近代經濟史研究》(사계절, 1983, 번역 수록).

일본의 무제한적 침탈을 보장해 주었다. 이후 조선은 일본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청국 李鴻章의 권유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잇따라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들 조약은 내용상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그 성격은 한결같이 불평등조약으로 최혜국조관을 매개로 하나의 연결된 체제를 이루면서 조선을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시키는 한편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탈을촉진하였다.

1882년 체결된 조미수호조약은 무역에서 관세자주권과 수입10%, 수출5% 의 관세율을 규정하고 조선의 곡물수출 금지권을 인정함으로써 일본과의 조약에 비해 조선에게 다소 유리한 측면도 있었지만, 강화도조약에는 없던 최혜국조관이 규정되는 등 여전히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최혜국조관은 타국과의 조약에서 체결된 조약상의 특혜를 균점할 수 있는 권리로 이후 조선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모든 조약에 이 조문이 첨가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모든 국가가 조선에서의 특권을 공유하게 하였다.

한편 임오군란으로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킨 청국은 정치적·군사적 압력을 가하며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하 조청장정)을 일방적으로 체결하였다. 서문에 조선이 청국의 속국이라 규정한 이 장정을 통하여 청은 최초로 한성·양화진에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와 여행권(護照)을 소지한 경우 개항장밖으로 통상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조선 연안에서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권리까지 얻게 되었다. 아울러 조선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해 이장정의 내용을 타국이 균점할 수 없다고 선언했지만, 청의 일방적인 선언과관계없이 조일통상조약 개정과 조영조약의 비준에 악영향을 미쳐 불평등조약체계의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6)

1883년에는 일본과 종래의 통상장정을 개정한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였다. 이 장정에서 조미조약에서 인정되었던 관세자주권이 부정되고, 수출 5%, 수입 8%를 기본으로 하는 협정관세로 전환되었다. 또한 조청수륙무역장정에서 인정되고, 조미조약에서는 수출품에 한하여 인정되었던 개항장 밖 과세는 일체 부정되었다. 또한 통상장정에 변칙적으로 최혜국조관을 삽입하여 조미조

⁶⁾ 李炳天,〈開港期 外國商人의 侵入과 韓國商人의 對應〉(서울大 박사학위논문, 1985), 28~30쪽.

약과 조청장정에서 각각 승인된 연안해운 • 연안무역권을 획득하였다.

영국과는 이미 1882년에 조영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청장정의 체결을 지켜본 영국은 조약 비준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조청장정에서 청이획득한 것 이상의 특권을 요구하여 마침내 1883년 개정된 조영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을 통해 조선에서의 불평등조약체계는 그 형태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 수출 5%, 수입 7.5%의 관세율을 기본으로 하는 협정관세 및 일체의 개항장 밖 과세의 부정, 연안무역권과 연안해운권, 최혜국 조항 등이 승인되었다. 이밖에도 영국은 거류지 밖 4km까지 외국인의 토지·가옥의 임차·구매권과 공장 등의 설립 자유와 조청장정에서 청의 독점으로 규정되었던 한성·양화진의 개방 및 개항장 밖 통상권을 획득했다. 특히 조청장정에서 조선산 상품 구매를 위해 독점적으로 규정되었던 개항장 밖 통상권은 구매·판매에 모두 적용되어 개항장 밖 40km까지 여행권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문들은 그뒤 최혜국조관에 의해 열강에게 균점됨으로써 조선시장은 한성에서 벽촌에 이르기까지 외국상인에게 개방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조선의 조약체계는 청과 일본이 서구열강과 맺은 조약에 비하더라도 한층 더 불평등한 것이었다. 청국은 서구 열강에게 자유무역을 기초로 한 통상항의 개방과 거류지의 설치, 영사재판권, 협정관세, 최혜국 조항, 개항장 밖 통상권, 연안무역권·연안해운권, 해관관리권을 모두 인정해 주었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관세율, 개항장 밖 통상권의 불인정, 연안무역권·연안해운권의 제한, 해관관리권을 확보하여 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조선은 청이 각국과 맺은 불평등한 조항을 포함하여 개항장· 개시장에서의 외국인의 토지·가옥소유 허가, 공장의 건설과 수도의 개시장 화로 청보다 더 불리한 입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청·일을 비롯한 열강이 정 치·군사적 압력을 동원해 조약문을 자국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함으 로써 경제적 침투를 더욱 강화해갔다.7)

⁷⁾ 河元鎬, 《한국근대경제사연구》(신서원, 1997), 18~19쪽.

조선정부의 적절한 국내산업 보호육성책이 없는 가운데 불평등조약체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무역이 조선사회에 미친 파장은 클 수밖에 없었다. 우선 조선산 쌀·콩 등 곡물이 주로 수출되고 자본제 면제품이 수입되는 수출입 무역구조가 점차 형성되어갔다. 미곡의 대량유출은 조선사회 내부에 식량부족으로 인한 미가등귀를 가져와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의 발생은 직접적 원인인 관료들의 부패 이외에도 흉작과 미곡의 대일수출로 인한 식량부족에도 한 원인이 있었다.8)

둘째로, 조선의 재래적 상품유통망이 해체되고 점차 개항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유통구조가 형성되어 갔다. 조선의 재래적 상품유통망은 지리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크게 경상도 동해안과 강원도 영동지방·함경도를 연결하는 동해안 유통권과 전라도·경상도에서 한양·개성과 황해도·평안도를 연결하는 서해안 유통권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부산에 이어 원산(1880), 인천(1883) 등 각지에 개항장이 설치되면서 재래의 상품유통망은 해체되고 개항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유통망이 형성되었다.

셋째로, 외국무역의 확대에 따른 유통량의 증가에 따라 점차 상품생산구조도 변화되어 갔다. 조선의 주된 수출품은 쌀과 콩 등의 곡물류였고 이들 물품은 대일수출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결과 조선의 농업생산기반은 쌀과 콩의 단작화로 협소화되는 과정을 밟게되었다. 또한 자본제 면제품의 대량수입은 조선의 자급적 의료생산체계를 붕괴시켜 나갔다. 조선의 면포생산의 기본형태는 부녀자에 의한 농가부업적 가내수공업이었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면작・비면업 지대를 배경으로 경상도・전라도의 면업 선진지역에서는 부농이 임노동자들을 선대제적으로 지배하여 면포를 대량생산하는 경영형태가 지배적이었고, 일부에서는 공장제 수공업적 경영형태도 출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외국산 자본제 면제품의 대량유입은 자본주의적 성장을 하고 있었던 농촌수공업의 발전 전망을 흐리게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경상도의 면포생산지역에서는 면작의 대두작으로의 전환이 광범위하게 나타났고, 전라도 지역은 紡絲와 織布과정은 생략

⁸⁾ 彭澤周, 《明治初期日韓淸關係の研究》(塙書房, 1969), 291~292\.

된 채 농업생산물인 면화를 일본에 수출하여 일본방적공장의 원료를 공급하는 위치로 전략하게 되었다. 요컨대 무역의 확대는 조선의 생산구조 자체의 변동을 가져와 조선을 일본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식량원료 공급지, 자본제 상품의 소비시장으로 자리잡게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경제침탈에 대응하여 상권을 수호하려는 객주·여각 등 국내상인들에 의해 상회사가 설립되었고, 관료·상인자본이 중심이 되어 근대적 공장이 설립되기도 했지만, 정부의 체계적인 보호육성책과 금융기관이 부재한 가운데 불평등조약상의 제특권을 기반으로 하여 자국의 각종 금융지원까지 얻어 침탈해 들어오는 외국자본의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3) 초기 개화정책의 추진배경과 그 성격

개항 초기 정부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악화된 대일 관계를 개선하려했지만 여전히 청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일본과의 구교를 회복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서구 국가들에 대한 개항은 고려되지 않았고, 서구의 선진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려는 태도 역시 갖춰져 있지 않았다.

강화도조약 체결 직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최대의 정치·외교적인 현안은 강화도조약에 포함된 조항들을 매듭짓는 문제였다. 일본정부로서는 운요호사건이라는 최후 수단을 사용하여 청국의 종주권을 부인하면서 쇄국을 고집하던 조선을 개항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조약에 포함된 조항들 예를 들면 통상장정의 체결, 공사의 서울주둔문제와 부산 이외 2개 항구의 개방 등이 실현되어야 조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들은 메이지유신 이후 조·일 외교의 전개과정을 통해 볼 때 쉽사리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강화도조약 체결 직후 일본의 대조선정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적극적으로 관료들을 일본에 초청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조선정부 또한 개항 이전과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일본의 정책을 수용하거나, 조선정부 독

자적으로 외교사절을 파견하였다. 강화도조약 체결 후 전권대신 신헌의 보고에 대해 고종은 다음과 같이 당면한 개혁정책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신헌이 아뢰기를 '저들이 말하기를 지금 천하의 각국이 군사를 쓰는 때를 당하여 귀국의 산천이 매우 험한것으로는 싸우고 지키기에 넉넉하나 군비가 매우 허술하다 하며, 부국강병의 방법을 누누이 말하였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은 교린하는 성심에서 나온 듯하다. 우리 나라는 군사의 수효가 매우 모자라다'하였다(《高宗實錄》권 13. 고종 13년 2월 6일).

고종은 조약체결 후 일본의 사절 파견 요청을 즉각적으로 수용하여 金綺秀를 修信使에 임명하여 도일하게 하였다. 수신사 파견을 결정한 조선정부의 목적은 개항을 강요하였던 일본에 대한 전반적인 정세파악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군사력 부분에 관한 것이 최대의관심이었다. 이러한 조선정부의 관심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항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일차적 원인이 일본의 무력시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정부의 수신사파견이 결정되자 일본은 수신사의 선편을 주선하는 외에 정부 부처사이에 협의를 거쳐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적인 개혁의성과물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를 선정하여 수신사의 일정을 마련하였다. 수신사의 일정은 일본정부시설에 대한 의례적인 방문 이외에 박물관 등 근대적인 제반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주요 대상은 군수산업관련 시설과 육·해군의 군사훈련 상황을 보여주는 시설들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수신사 김기수는 조선측의 사정을 들어 일본측의 방문일정 대부분을기피하였지만, 군사훈련만은 직접 참관하였다. 귀국 후 김기수가 고종에게복명하는 과정에서도 양자의 대화 내용 중 상당부분이 일본의 군수산업과군비증강 정책의 실상에 관한 것이었다.9)

이와 같이 조선정부의 개항 이후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의 입안에 필요한 정보 유입의 통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에 파견되었던 외교사절들의 보

⁹⁾ 최덕수, 〈개화기 일본의 조선인 유학정책의 성격〉(《國史館論叢》 72, 1996).

고였다. 개항 이후 조선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던 중요한 전기는 1880년에 파견되었던 수신사 김홍집의 보고에서 마련되었다.

김기수의 파견이 신조약 체결을 기념하기 위한 儀禮的인 것이었던 것과는 달리 1880년 수신사 金弘集의 파견은 당시 한일간의 외교적 현안이었던 인천개항 및 무관세조항개정과 상주 공사관 설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수신사 김홍집과 그 수행원 일행은 김기수 사절단과 달리 일본 체재 중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김홍집은 東京에 있는 동안 주일청국공사 何如璋, 참찬관 黃遵憲 등과의 회담을 통해 세계의 대세와 조선외교의 진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때 황준헌은 〈朝鮮策略〉을 통하여 조선외교의 방향으로 '親中國・結日本・聯美國'의 세력균형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선의 대일, 대미개방정책을 부추켰다. 아울러 그는 조선이자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수호・통상하여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역절하였다.

김홍집이 귀국하여 국왕 고종에게 바친 황준헌의 〈조선책략〉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고종은 재야 유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양 국가들 —특히 미국 — 과의 수교를 결심하는 한편 개화·자강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제개혁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1880년 12월에는 서양 국가들과의외교·통상에 대비하여 대외정책을 담당함과 동시에 국가의 재정·군사업무를 맡아볼 중추기구로서 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이 기구는 청국의 總理各國事務衙門을 본딴 것이지만, 정부가 대외 개방을 통해 서구의문화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도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과다름없었다.

통리기무아문의 설치로 대변되는 이 시기 조선정부의 대내외개혁 정책의 기본목적과 성격은 산하 12개 司의 기능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이들 아문으로는 사대·교린·군무·변정·통상·군물·기계·선함·이용·전선·기연·어학사 등이 있었는데 이 중 사대사와 교린사는 각각 중국과 일본에 대한외교를 담당하였고, 어학사와 전선사는 외교업무를 지원하였다. 또한 통상사와 이용사는 통상과 재정사무를, 그리고 변정·군무·군물·기계·선함·기연사 등은 국방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무비자강을 위한 무기구입과 관리

군사양성 등을 담당하는 기구였던 것이다.10)

실제로 통리기무아문은 종래의 5영을 무위영과 장어영 2영으로 개편· 강화하였으며,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고 일본인 교관을 초빙하여 근 대식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전·채광·홍삼 등을 관리함으로써 재정확보책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할 사실은 1881년 통리 기무아문에서 일본과 청국에 조사시찰단과 영선사를 각각 파견했다는 점 이다.11)

事大使를 통한 대중국외교의 결실이 영선사 파견이었는데 주지하다시피 영선사는 무기제조학습을 위한 것이었고, 수신사 김홍집의 도일은 전후하여 조선정부가 일본으로부터 군함 구입등을 추진했다는 사실 등을 미루어볼 때, 이 시기 조선정부의 초기 개화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외교상황의 변 화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개편과 군사력증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군사 력 증강정책이 그 핵심이었다.

이처럼 통리기무아문을 중심으로 개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조미조약을 통해 서양 국가들과의 외교·통상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기 시작할 때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청국은 조미조약의 체결을 통해조선에 대한 열강간의 세력균형을 도모하려던 정책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청국은 무력으로 군란을 진압한 데 이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의 종속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조선의 내외정에 직접 간섭하였다.

이러한 상황 아래 高宗은 개화정책의 추진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기구의 개편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임오군란 당시 폐지되었던 통리기무아문의 체제를 이어받아 임시로 淸國의 軍機處를 모방한 機務處를 설치하였다가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과 統理軍國事務衙門으로 개편함으로써 정부조직은 기존의 의정부・6조체제와 신설된 양아문으로 이

¹⁰⁾ 전해종, 〈통리기무아문 설치의 경위에 대하여〉(《역사학보》17·18, 1962). 이광린, 〈통리기무아문의 조직과 기능〉(《학술원논문집》26, 1987).

¹¹⁾ 정옥자, 〈신사유람단고〉(《歷史學報》27, 1965). 허동현, 〈1881년 조선조사 일본시찰단에 관한 일연구〉(《韓國史研究》52, 1986).

원화되었다. 이와 같이 청국식 제도의 형식을 본뜬 정치기구의 개편은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고종과 개화·자강정책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했던개화파, 그리고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려던 청국의 의도가 맞아들어 이뤄진 것이었다.12)

특히 통리군국사무아문은 통리기무아문과 마찬가지로 국정전반의 주요사안을 통괄함과 아울러 개화·자강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였다. 무엇보다 이 아문 산하에 '부국강병' 내지 '裕國利民'에 관계되는 기기국·전환국·蠶桑公司·農桑局 등이 설치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통리군국사무아문은 적극적으로 근대적 제도와 문물을 설립·수용하는 데까지이르지 못한 채 당면한 재정·군사문제를 처리하는 데 머무르고 말았다. 더욱이 이 아문은 점차 민씨척족세력이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조성하는 중추적 정치기구로 변모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김옥균·박영효 등은 집권층인 민씨척족세력의 무능과 부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갑신정변을 단행하였다. 정변당시 그들이 통리군국사무아문을 폐지하고 오히려 전통적인 의정부의 권한을 재강화시켜 급진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것은 이 아문이 민씨척족에 의해 전횡되었기 때문이었다. 갑신정변은 비록 3일 천하로 막을 내렸지만, 청국과의 종속관계를 청산하려 했다는 점, 국왕의 전제와 민씨척족의 국정간섭을 막고 내각제도에 의한 국정운영을 모색하였다는 점, 문벌 폐지와인민평등권을 제정하여 평등사회를 지향했다는 점, 그리고 지조법 개정과 국가재정기반의 확립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려 했다는 점 등으로인해 인민평등권을 지향한 최초 정치개혁운동으로 평가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항을 계기로 조선은 쇄국정책에서 점차 벗어나 개국 혹은 개화정책을 펼쳐나갔다. 조선정부는 초기에 서구 열강이 아니라 청국과 일본, 특히 일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서구의 선진제도와 문물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수용하려 했다

¹²⁾ 전미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관한 연구〉(《梨大史苑》24·25, 1990). 韓哲昊, 〈통리군국사무아문(1882~1884)의 조직과 운영〉(《이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하, 일조각, 1994).

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사회체제의 개혁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개화정책을 담당했던 정부의 관리역시 국제정세와 제도 전반에 대해 철저한 이해와 이를 추진할 만한 능력이부족했기 때문에 초기 개화정책은 정권을 유지하는 차원에 머물고 말았다. 더욱이 조선에 대한 청·일 양국의 외압은 개화정책의 추진을 제한 혹은 좌절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崔德壽〉

찾 아 보 기

[7]

가경통보 嘉慶通寶 163 가와모토 큐자에몬 川本九左衛門 222 간사재판 幹事裁判 221 갑신정변 甲申政變 332 갑오개혁 甲午改革 159 《강도실기》 《江都實記》 200 강로 姜港 228, 229 강수관 講修官 $258 \sim 260$ 강위 姜瑋 282 강화도조약 江華島條約 9,12,21,74, 75, 85, 116, 118, 219, 220, 245, 253, 254, 257, 271, 275, 289, 318, 323~325, 328, 329 개국외교 開國外交 79 개벽사상 開闢思想 139 개항개시양국왕래자유 開港開市兩國往 來自由 226 개항론자 開港論者 219 개항반대론자(세력) 開港反對論者(勢力) 246, 253, 254 개항장(지) 開港場(地) 1, 251, 254, 259 개화당 開化黨 115 개화사상 開化思想 92, 96, 101, 103~ 105, 108, 112~119, 121 개화정책 開化政策 257, 232, 283, 331 ~333 개화파 開化派 10, 115 거중조정 居中調停 290, 307 건백서 建白書 208 게랭 De Guerin 188

게리에르호 Guerriere號 190 견미사절(단) 遣美使節(團) 209, 313 견한사절파견 遣韓使節派遣 210 결두전 結頭錢 163 경복궁 景福宮 $6,162 \sim 164,185$ 경복궁 중건 景福宮 重建 162~164, 168, 169, 171 경제봉쇄령 經濟封鎖令 209 곡물수출 금지권 穀物輸出 禁止權 325 공리공론 空理空論 67 공장 工匠 164 공친왕 恭親王 59 공행 公行 320 관서해방책 關西海防策 108,117 관세규칙 關稅規則 288 관세자주권 關稅自主權 321.325 관세조항 關稅條項 260, 261 관왜 館倭 208 광동무역 廣東貿易(體制) $33,36 \sim 39,$ 44, 53, 54, 62, 71, 73, 320 광동 십삼행 廣東 十三行 광양란 光陽亂 176, 177 광제창생 廣濟蒼生 127, 130, 139 교린관계 交隣關係 204, 246, 268 교린정책 交隣政策 206 교섭공법 交涉公法 293 구교운동 仇教運動 194 63 구로다함대 黑田艦隊 구미공례 歐美公例 288 〈국부론〉 〈國富論〉 42 국서수리교섭 國書受理交涉 207, 282 국왕위원 國王委員 281 국태공 國太公 144

군기처 軍機處 331 군역제 軍役制 167 군포계 軍布契 166 권당 捲堂 228 권재형 權在衡 316 그랑몽 Jean-Joseph de Grammont 180 그로와르호 La Gloire號 6 근대적인 외교관계 近代的인 外交關係 근대적인 조약체결 近代的인 條約締結 246 근대화정책 近代化政策 254, 258 《근세조선정감》 《近世朝鮮政鑑》 106. 186, 187 금교 禁敎 315 《금석과안록》 《金石過眼錄》 93 금석학 金石學 95 금수 규정 禁輸 規定 296 금연령 禁烟令 40 기병작전 奇兵作戰 192 기선 琦善 48, 49 기영 耆英 50, 53, 54 기유약조 己酉約條 21 기정진 奇正鎭 6, 107 기해사옥 己亥邪獄 122, 180 김기두 金箕斗 106 김기명 金沂明 192 김기수 金綺秀 80, 258, 329, 330 김대건 金大建 122, 180 김만식 金晩植 80, 315, 316 김면호 金勉浩 74, 181, 183 김문근 金汶根 157 김병국 金炳國 151, 155, 157, 231, 235, 238, 240 김병기 金炳冀 154, 165 김병시 金炳始 76, 82, 307, 313, 316 김병학 金炳學 151, 155, 156, 184, 202, 234, 239

김석준 金錫準

158

김옥균 金玉均 97, 120, 306, 332 김유연 金有淵 75, 180 김윤식 金允植 8, 12, 80, 102, 106, 107, $120, 285 \sim 290, 293 \sim 297, 302, 313, 315,$ 316 김정희 金正喜 $93 \sim 95, 100, 145$ 김조순 金祖淳 146, 152 김좌근 金左根 $151 \sim 154, 156, 157$ 김홍집 金弘集 10, 12, 84, 85, 120, 275 \sim 280, 282, 297 \sim 300, 302, 305, 309, 311, 330, 331 김흥근 金興根 150, 152, 154 깔래 Calais 74, 186, 188 꼬고르당 F. G. Cogordan 80, 315, 316

[ㄴ]

나가사키무역제도 長崎貿易制度 71, 73 나풍록 羅豊錄 285 난학자 蘭學者 62, 67 남경조약 南京條約 $1, 2, 32, 50 \sim 55$. 89, 98, 123, 307, 320, 321 남연군 구 南延君 球 144 남연군묘 南延君墓 308 남연군묘(소)도굴사건 南延君墓(所)盜掘 事件 7,203 남종삼 南鐘三 $182 \sim 186$ 내강항행 內江航行 196 내지포교 內地布敎 1 내치우선론 內治優先論 227 내탕금 內帑金 162, 166 노륙지전 孥戮之典 186 노예무역 奴隷貿易 52 〈논학문〉 〈論學文〉 124 농성전 籠城戰 200 농촌수공업 農村手工業 327 니꼴라이 이구나체프 Nikkolai Ignatiev 60

[ㄷ]

226

단교론 斷交論

단일제국 單一帝國 17 당백전 當百錢 163 대동미 大同米 147 대륙보장정책 大陸保障政策 308 대륙봉쇄령 大陸封鎖令 32 대마도(주) 對馬島(主) 22, 23, 204~ 208 대미불교섭 對美不交涉 203 대미수교 對美修交 $280 \sim 282$ 대수대차사 大修大差使 205, 221, 223, 225, 대완구 大碗口 200 대원군 大院君 7, 73, 79, 106, 108, 110, $113, 118, 144, 145, 149 \sim 162, 164, 165,$ $167 \sim 170, 172, 173, 179, 181 \sim 184, 189,$ $194, 202, 203, 209 \sim 213, 220, 229, 232,$ 233, 241, 280, 283, 286 대원군 정권 大院君 政權 162, 165~ 168, 171, 174, 213, 322 대원군 집정기 大院君 執政期 172, 175, 177 대원위대감 大院位大監 144 대일수출 對日輸出 327 대일외교자세 對日外交姿勢 225 대중국무역독점권 對中國貿易獨占權 219, 320 대중국외교 對中國外交 331 대차사 大差使 22 대청교섭선행론 對淸交涉先行論 226 대한수교 對韓修交 303 대한종주권 對韓宗主權 204, 310 대항해 大航海 great voyages 27. 70 덕진돈대 德津墩臺 194 덕진진 德津鎭 199 데니 O. N. Denny 315

데라시마 무네노리 寺島宗則 233 도서의 환납 圖書의 還納 232 도해역관 渡海譯官 22. 동광통보 同光通寶 163 동래훈도 東萊訓導 241 동방무역 東方貿易 $34 \sim 36, 39, 42, 70$ 동방진출 東方進出 17, 34, 70 동서무역 東西貿易 71 동양무역 東洋貿易 83 동인도회사 東印度會社 32, 35, 36, 39, $41 \sim 43, 219, 320, 322$ 동지사(절) 冬至使(節) 19, 100, 104, 193, 273, 286 동치통보 同治通寶 동포제 洞布制 166, 167 동학 東學 $4, 121 \sim 125, 127, 131, 132,$ 134~138, 148 동학농민전쟁 東學農民戰爭 177, 178 동학사상 東學思想 136, 139 딜롱 Dillon 79, 300, 305, 314

[ㄹ]

라이프찌히호 Leipzig號 310 러토전쟁 露土戰爭 271 레옹 뱅카르 Léon Vincart 方葛 316 로오드 앰허스트호 Lord Amherst號 5, 219 로우 F. F. Low 196, 197, 198 로즈 Roze $74, 78, 108, 189 \sim 192, 194,$ 314 리델 Ridel 74, 79, 186, 188, 190

[口]

마건충 馬建忠 12, 79, 82, 293, 296~ 301, 305, 309, 310, 315 마루야마 丸山作樂 208 마테오 릿치 Matteo ricci 29 만국공법적 국제질서 萬國公法的 國際

秩序 323 만동묘 萬東廟 161, 228 만청려 萬靑藜 95, 111, 209 망하조약 望厦條約 2, 52, 53, 63, 65 매카트니(사절단) Sir George Macartney (使節團) 38, 39, 43 메도우즈상사 Meadows商社 195 메이지유신 明治維新 $205 \sim 207, 217$. 220, 224, 255, 257, 322 메이지정부 明治政府 220, 227, 254 명예혁명 名譽革命 36 모리 아리노리 森有禮 236 모리야마 시게루 森山茂 207, 208, 225, 230, 232, 233, 236 묄렌도르프 Möllendorff 穆麟德 76, 312, 313 묘당(회의) 廟堂(會議) 153, 240, 268 무가통치 武家統治 26 무관세무역(규칙) 無關稅貿易(規則) 261, 323 무관세조항개정 無關稅條項改定 330 무로마치막부 室町幕府 무부 武府 170 무역 은전론 貿易 恩典論 52 무진전쟁 戊辰戰爭 221, 225 문답장계 問答狀啓 255 문빙(신임장) 文憑(信任狀) 295 문위역관 問慰譯官 22 문의관 問議官 295, 296 문체반정 文體反正 147 문호개방 門戶開放 218 문화차이론 文化差異論 52 물정상탐 物情詳探 257 미국국서 美國國書 276 미리견 彌利堅 202 미불공동원정 美佛共同遠征 194 미일 (수호)통상조약 美日 (修好)通商條 約 69,90,321 미일 화친조약 美日 和親條約 64 민간측량회사 民間測量會社 250

민규호 閔奎鎬 268 민란 民亂 91, 126, 168, 173~175, 177, 212 민소 民所 174 민숭호 閔升鎬 268 민영목 閔泳穆 82, 306, 310 민영익 閔泳翊 158, 278, 302, 306, 312, 313 민족주의 民族主義 135, 139 민치상 閔致庠 209 민회 民會 148 민회행 閔晦行 176

[日]

바스코 다 가마 Vasco da Gama 박규수 朴珪壽 $3, 8, 92, 102 \sim 105, 107,$ 113, 114, 117, 118, 120, 195, 229, 235, 239, 240 박영교 朴泳敎 97, 120 박영효 朴泳孝 104, 121, 306, 332 박정양 朴定陽 박제가 朴齊家 93, 95, 100, 147 박제경 朴齊絅 187 박제순 朴齊純 316 박지원 朴趾源 102, 104 방아책 防俄策 179, 182, 183, 278 〈방아책 건의문〉 〈防我策 建議文〉 181, 182 배외감정 排外感情 194, 202 배일감정 排日感情 268 백골징포 白骨徵布 167 백낙서 白樂瑞 158 백낙필 白樂弼 158 백운동서원 白雲洞書院 160 범월입국 전도죄 犯越入國 傳道罪 185 범월죄인 犯越罪人 179 베르뇌 Berneux $74,183 \sim 185$ 벨로네 Henri de Bellonet 伯洛內

변경(방)무역 邊境(方)貿易 53 변란 變亂 175~177, 212 변원규 卞元圭 281, 286, 287, 302 별차왜 別差倭 22 병인박해 丙寅迫害 74, 78 병인별비곡 丙寅別備穀 166 병인사옥 丙寅邪獄 $6,183,185\sim187,$ 193, 194, 196 병인양요 丙寅洋擾 $6,105 \sim 108,113,$ 117~119, 161, 166, 170, 171, 174, 177, 188, 203, 205, 212, 219, 311, 322 병자호란 丙子胡亂 18, 128, 135 보국안민 輔國安民 124, 125, 127, 130, 139 보빙사 報聘使 13 보스토크호 Vostok號 73 보정부 保定府 286, 294 보호무역 정책 保護貿易 政策 320 본햄 Sir George Bonham 54 부대부인 府大夫人 180, 182 부동항획득 不凍港獲得 311 부세운영의 금납화 賦稅運營의 金納化 부속약관 附續約款 316 부속통상장정 附續通商章程 307, 310, 313, 316 북경조약 北京條約 1, 2, 52, 73, 90, 100, 123, 124, 178, 311, 321 북경침공 北京侵攻 북촌 北村 117, 119 북학파 실학자 北學派 實學者 95, 103 불랑기 佛狼機 200 불평등조약(체제) 不平等條約(體制) 12, $51, 60, 70, 73, 77, 90, 219 \sim 221, 227, 307,$ $308, 316, 321, 322, 324 \sim 328$ 브란트 Von Brandt 208, 308 비에게레벤 Roger de Biegeleben 316 비질란트호 The Virgilant號 305

78, 110, 188, 189, 193, 194, 314

빅토리외즈호 Victorieuse號 77 빙햄 John A. Bingham 84, 276, 280 폐루주 Jean Francois Galaupedela Pérouse 4 뿌짜젠 Efim V. Putvatin 65

[시]

사결작업 査結作業 165 사교 邪敎 185 사다 모토이치로 佐田素一郎 207 사다 하쿠보 佐田白茅 225 사단칠정론 四端七情論 147 사대교린 事大交隣 149, 204 사대사 事大使 331 사도세자 思悼世子 144 사수 社首 166 사액서원 賜額書院 160, 161 사역원 司譯院 92 〈사의조선책략〉 〈私擬朝鮮策略〉 85, 311 사이고 다카모리 西鄕隆盛 사인여천 事人如天 사절상주권 使節常駐權 59 〈사창절목〉 〈社倉節目〉 166 166, 212 사창제 社倉制 사회진화론 社會進化論 52 산업혁명 産業革命 35, 37, 38, 61, 72, 219, 318, 319, 323 산죠 사네도미 三條實美 227 3국동맹안 三國同盟案 183 《삼반예식》 《三班禮式》 170 삼정리정청 三政釐正廳 148, 165 삼정의 문란 三政의 紊亂 91, 126 상관 商館 32 상무관 商務官 315 상평통보 常平通寶 163 상품유통망 商品流通網 327 상품화폐경제 商品貨幣經濟 145, 146, 167, 168

서계개수 書契改修 207 세칙장정 선후속약 3관 稅則章程 善後 서계거부 書契拒否 225 續約 三款 307 서계수리문제 書契(受理)問題 208, 세포이 반란 Sepoy 叛亂 56 209, 224, 233, 255 〈세한도〉 〈歲寒圖〉 94 서광범 徐光範 120 소도회 小刀會 57 서구 자본주의 국가 西歐 資本主義 國 소돈우의 素敦友誼 245 家 320 소수서원 紹修書院 160 소에지마 副島種臣 209, 227 서당보 徐堂輔 108 서민지주 庶民地主 146 소 요시아키라 宗義達 207, 225 서상우 徐相雨 298 소중화 小中華 25 서세동점 西勢東漸 26,149,319 속방조관 屬邦條款 288~292 서원 書院 160.161 속방조회(문) 屬邦照會(文) 12.291. 서원전 書院田 160,161 $296 \sim 301$ 손돌목(돈대) 孫乭項(墩臺) 198, 200, 서원철폐 書院撤廢 161,162 서은로 徐殷老 158 201 서학 西學 4,122~125,127,129,132, 송시열 宋時烈 161 133, 135, 184 쇄국(양이)정책 鎖國(攘夷)政策 7,10, 서화학 書畵學 95 60, 64, 66, 118, 149, 183, 194, 202, 204, 선교사 宣敎師 30, 181, 183, 188, 191 213, 328, 332 선교사학살 宣敎師虐殺 190,194 수도서왜 受圖書倭 21 선원보 璿源譜 157 수렴청정 垂簾聽政 144,151 선진자본주의 (국가) 先進資本主義 (國 수뢰포 水雷砲 172 家) 218, 219, 318, 323 수방직 手紡織 41 선파유생응제 璿派儒生應製 157 수신사 修信使 80, 85, 257, 258, 275, 선파인 璿派人 157 294, 306, 329, 330 선후속약 善後續約 310,313 〈수역별단〉 〈首譯別單〉 178 설복성 薛福成 270 수직왜 受職倭 21 섭명침 葉名琛 55,56 수출입세 輸出入稅 260 《성교일정》 《聖敎日程》 186 수호조구 修好條規 258, 261 성근묵 成近默 6 수호조규부록(안) 修好條規附錄(案) 258, 세견미 歲遣米 206 259, 261 수호통상교섭 修好通商交涉 308 세견선 歲遣船 248 수호통상장정 修好通商章程 세도정권(기) 勢道政權(期) 149,157, 282 165, 170 수호통상조약 修好通商條約 220, 301, 세도정치 勢道政治 146, 147, 152, 159, 307, 312, 315 170 숭명반청 崇明反淸 19 세사미 歲賜米 206 슈펠트 Robert W. Shufeldt 11~13, 83, 84, 195, 275 ~ 277, 283 ~ 285, 287 ~ 세실 Cécille 77 세자 책봉문제 世子 册封問題 268 $296, 298 \sim 301, 304, 309$ 세칙장정 稅則章程 313,316 스윙거호 Swinger號 80

스터링 Sir James Stirling 아병 牙兵 171 《승정원일기》 《承政院日記》 아시카가막부 足利幕府 151, 60 237, 240, 242, 244, 253, 255, 257 아시카가 요시미츠 足利義滿 20 시모다조약 下田條約 68 아이훈조약 愛琿, Aigun條約 2 시천주(사상) 侍天主(思想) 아편금지규정 阿片禁止規定 136, 137 82 식년시 式年試 92 아편(밀)무역 阿片(密)貿易 $40 \sim 43$ 식민주의적 침략전쟁 植民主義的 侵略 220, 321 戰爭 202 아편수입금지 阿片輸入禁止 306 신미양요 辛未洋擾 아편전매권 阿片專賣權 7, 103, 113, 114, 118, 166, 194, 208, 209, 219, 322 아편전쟁 阿片戰爭 1, 2, 51, 52, 63, 64, 신사유람단 紳士遊覽團 285 70, 72, 89, 90, 98, 307, 320 신사척사운동 辛巳斥邪運動 11.283 아편판매 阿片販賣 신식군대 新式軍隊 안기영사건 安驥泳事件 331 11, 283, 286 신앙의 자유 信仰의 自由 181 안동준 安東晙 208, 222, 223, 225, 229 신유사옥 辛酉邪獄 180 〈안심가〉 〈安心歌〉 136 신제국주의 新帝國主義 안필주 安弼周 320 158 신조약(체결안) 新條約(締結案) 애로우호 사건(전쟁) 240, Arrow號 事件(戰 爭) 2, 55, 72, 89, 123, 181, 321 246 신중상주의 新重商主義 약외조회 約外照會 320 299 양명학 陽明學 신채호 申采浩 104 147 신토 神道 21, 25, 29, 61 《양수기제조법》 《揚水機製造法》 신해진산사건 辛亥珍山事件 180 양어・양문 해독자 洋語・洋文 解讀者 신헌 申櫶 8, 12, 169, 172, 173, 237, 24 294, 295 $3 \sim 255, 297, 298, 329$ 양이론자 攘夷論者 64 실비아호 Sylvia號 양적 洋賊 202 80 실사구시 實事求是 147 양전(사업) 量田(事業) 165 실학사상 實學思想 92, 104 양추 洋醜 202, 208 심검 審檢 250 양포 洋砲 242 심도포량미 沁都砲糧米 172 양행 洋行 32 심동신 沈東臣 84, 276 양헌수 梁憲洙 169, 192, 193 양화진 楊花津 심보정 沈葆楨 272 190 심의면 沈宜冕 어윤중 魚允中 154 12, 285, 286, 295, 296, 심이택 沈履澤 154 302 십승지 十勝地 어융방략 禦戎方略 192 147 쓰시마번(주) 對馬蕃(主) 220, 221, 어재연 魚在淵 200 223, 225, 249 어학관 語學館 67 엔리코 아치우니 Enrico Acciuni 316 [0] 여휴 余瓗 84, 277 연례사 年例使 22 아더 Arthur, Chester A. 301 연미국 聯美國 85, 278, 330, 311

연미론 聯美論 276, 278, 297 요시다 쇼인 吉田松陰 67, 90 연안무역권 沿岸貿易權 326 요시오카 吉岡弘毅 208 연안(해)측량(권) 沿岸(海)測量(權) 82, 용기 龍旗 278, 280 250, 323 《용담유사》 《龍潭遺詞》 128, 131. 연안해운권 沿岸海運權 326 136 연행사절 燕行使節 2, 179, 204 용담정 龍潭亭 130 열하이궁 熱河離宮 39, 59 우라세 浦瀨最助 208 우세영 禹世英 영건도감 營建都監 162, 164, 169 186 영국상관 英國商館 우피무역 牛皮貿易 45, 46 305 영국상선 英國商船 운요호 雲揚號 233, 235, 303 46 운요호사건 雲揚號事件 영사재판(권) 領事裁判(權) 51, 53, 69, 8, 219, 220, 292, 321, 323, 324, 326 236, 240, 246, 253, 254, 269, 271, 322, 328 영선사 領選使 $11, 258, 284 \sim 286, 331$ 운현궁 雲峴宮 158, 165, 183 영・일조약 英・日條約 82 울프호 Wolf號 309 영토침략행위 領土侵略行為 199 원납전 願納錢 $162 \sim 164, 171$ 《영환지략》 《瀛環志略》 3, 101, 102 원납전 怨納錢 164 오가작통법 五家作統法 원세개 袁世凱 185 315 오경석 吳慶錫 $3, 8, 92 \sim 98, 100, 101,$ 《월비기략》《粤匪紀略》 98 웨베르 K. I. Waeber $103 \sim 105, 108 \sim 114, 116 \sim 121$ 76, 313 오시마 토모노죠 大島友之允 207 웨이드 Sir Thomas Wade 273, 304, 오장경 吳長慶 310 305 오쿠보 도시미치 大久保利通 227 위문사 慰問使 102 오페르트 Ernst Iacob Oppert 7, 303, 위정척사(론) 衛正斥邪(論) 106, 107, 308 122, 204, 280 온건개화파 穩健開化派 302 위정척사사상 衛正斥邪思想 115, 119, 올리비에 Ollivier 135, 213 〈왕복문서〉 〈往復文書〉 245 위정척사운동 衛正斥邪運動 86 왕정복고 王政復古 $205 \sim 207, 221$ 위정척사과 衛正斥邪派 180 윌리엄 그래드스톤 William E. Gladstone 왕정양 王庭楊 159 왜관(무역) 倭館(貿易) 22, 223, 234, 윌리엄 엠허스트경 Sir William Amherst 239, 248, 303 왜양동류 倭洋同類 208 43 왜양일체(론) 倭洋一體(論) 209 윌스 George Ormumanev Willes 79, 왜학훈도 倭學訓導 $206,222 \sim 225,$ 82, 300, 305, 314 230 윌스조약 Willes條約 307, 309 외교사절 外交使節 248 유곤일 劉坤一 277 외국무역 外國貿易 유국이민 裕國利民 327 332 외국인 거주권 外國人 居住權 유기환 兪箕煥 317 220 외국인 세무사 外國人 稅務司 57 유길준 兪吉濬 120 외규장각 外奎章閣 193 유배분 劉培棻 110, 111

유지개 游知開 269, 273, 286	이원희 李元熈 169		
ポペパ <i>研</i> れ間 209, 273, 200 유통 儒通 161	이유원 李裕元 9,81,85,178,179,210,		
ㅠㅎ m地 101 유형원 柳馨遠 147	229, 234, 239, 240, 268~270, 272~274,		
유홍기(대치) 劉鴻基(大致) 3,10,92,	278. 280		
97, 100, 101, 105, 114, 117, 119, 121, 278	기원, 200 이유일 李惟一 181		
유후조 柳厚祚 108	이응준 李應浚 11, 284~298, 300, 302		
유광석 尹光錫 158	이이제이(책) 以夷制夷(策) 85, 181		
윤자승 尹滋承 84,255	이익 李瀷 147		
은자의 나라 隱者의 나라 60	이장렴 李章濂 157, 169, 170		
음양오행설 陰陽五行說 132	이조연 李祖淵 309		
의정왕 議政王 179	이종승 李鍾承 157		
이경순 李景純 157	이주철 李周喆 157, 169, 170		
이경하 李景夏 157, 169, 170, 192	이최응 李最應 85, 235, 239, 240, 253,		
이계환 李繼煥 158	295~298		
이광사 李匡師 147	이충익 李忠翊 147		
이국선 異國船 61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 227		
이규철 李圭徹 157, 170	이필제의 난 李弼濟의 亂 176,177		
이남식 李南軾 157	이하응 李昰應 144, 268, 280		
이노우에 카오루 井上馨 83,84,236	이항로 李恒老 6,9,107		
이능화 李能和 137, 187	이현익 李玄益 195		
이대흥 李大興 192	이현직 李顯稷 169		
이도중 李蕖重 165	이홍장 李鴻章 9~13,75,76,79,81,		
이돈영 李敦榮 165	$85, 209, 268 \sim 275, 277, 278, 281 \sim 296,$		
이동인 李東仁 10, 11, 81, 85, 278~	298, 300, 305, 309, 310, 313, 314, 325		
280, 302	이화양행 怡和洋行 Merrs. Jardine,		
이동인초고 李東仁草稿 288	Matheson & Co. 304		
이렴 李濂 192	이황 李滉 160		
이리국경분쟁 伊梨國境紛爭 86	인시천사상 人是天思想 137,138		
이민화 李敏化 158	인족침징 隣族侵徵 167		
이봉의 李鳳儀 157	인천개항 仁川開港 282		
이상적 李尙迪 93~95, 100, 178	인천행관 仁川行館 297, 299		
이선창 李先昌 75	일본개항 日本開港 203		
이세보 李世輔 150	일본공관 日本公館 248		
이승훈 李承薰 77, 180	일본 국서의 수리 日本 國書의 受理		
이양선 異樣船 5,6,122,149	268		
이와쿠라 토모미 岩倉具視 227	일본력 日本曆 249		
이용숙 李容肅 10, 11, 273, 275, 281~	일본사행 日本使行 311		
283, 288	《일본서기》 《日本書紀》 26		
이용후생 利用厚生 147	〈일본의 조선침공계획설〉 〈日本의 朝		
이용희 李容熙 169, 192	鮮侵攻計劃說〉 205		

일본화폐유통(권) 日本貨幣流通(權) 261, 323, 324 일선수호조규의 이행운영에 관한 상신의 건 日鮮修好條規의 移行運營에 關한 上申의 件 260 《일성록》《日省錄》 151 일항무역 一港貿易 61 임술민란 壬戌民亂 148, 149, 165, 173 \sim 175, 177, 211, 212 임오군란 壬午軍亂 13, 312, 327 임유희 林維喜 47 임응준 任應準 283 임진왜란 壬辰倭亂 21, 128, 160, 162 임칙서 林則徐 $42,45 \sim 47,49$ 임태영 任泰瑛 169 입약교섭 立約交涉 194 입약 통상(론) 立約 通商(論) 273, 274, 278

[ㅈ]

자본주의 세계(체제) 資本主義 世界(體 254, 318 자본주의 시장체제 資本主義 市場體制 218 자본주의 열강 資本主義 列强 217. 219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資本主義的 生産 樣式 317 자유무역(론) 自由貿易(論) 52, 73, 220 자유무역운동 自由貿易運動 72 자유무역제도 自由貿易制度 53 자유방임론 自由放任論 자페 Zappe 310 잠도작전 潛渡作戰 192 잠상공사 蠶桑公司 332 《잠연당전서》《潛研堂全書》 97 장수성 張樹聲 301, 309 장순규 張淳奎 158, 164

장주기 張周基 186 장혁진 張赫晋 176 장호근 張皓根 241 재야유림 在野儒林 241 전교금지 傳敎禁止 315 전교활동 傳敎活動 314 전권대신 全權大臣 244, 256, 306, 308, 309, 310, 315 전권대표단 全權代表團 236 전령서 傳令書 209 전매제도 專賣制度 40 전장운 全長雲 186 접견대관 接見大官 237, 243, 297, 298 접소 接所 134 접주제 接主制 134 정감록 鄭鑑錄 $147,175 \sim 177$ 정교금령 政敎禁令 20, 272 정묘호란 丁卯胡亂 18 정복왕조 征服王朝 18 정약용 丁若鏞 147 정여창 丁汝昌 82, 296, 309 《정유고략》 《貞蕤稿略》 《정유시초》《貞蕤詩抄》 93 정의배 丁義培 185, 186 정일창 丁日昌 273 정제두 鄭齊斗 147 정조경 程祖慶 97 정조여 鄭藻如 $281,283 \sim 287$ 정족산성 鼎足山城 192,193 정지용 鄭志鎔 187 정한론 征韓論 90, 188, 190, 207, 210, 225, 227 정현덕 鄭顯德 207, 229 제국주의적 침략전쟁 帝國主義的 侵略 戰爭 202 제국주의적 침략(탈) 帝國主義的 侵略 (奪) 324, 325 제너럴셔먼호 General Sherman號 118, 195, 314

장신영 張信永

158

제너럴셔먼호사건 General Sherman號 〈조선여각국통상약장〉 〈朝鮮與各國通商 事件 105, 106, 108, 194, 205 288 約章〉 제2차 산업혁명 第二次 産業革命 〈조선여미국의립화약사준접〉 〈朝鮮與美 319 제2차 수신사 第二次 修信使 275 國議立和約事竣摺〉 301 제2테이묘호 第二丁卯號 233 조선원정 朝鮮遠征 190, 197, 203 제해권 制海權 28 조선주차공사 朝鮮駐剳公使 젠킨스 F.B. Jenkins 7,308 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 朝鮮中國商 젬브시 Zembsch 310 民水陸貿易章程 13 조공무역(체제) 朝貢貿易(體制) 33, 〈조선책략〉 〈朝鮮策略〉 10, 14, 85, 86, 278, 279, 283, 330 71, 320 조공사 朝貢使 19 조성하 趙成夏 144 조공체제(제도) 朝貢體制(制度) 18. **조약**초고 條約草稿 287, 299 조영수호(통상)조약 朝英修好(通商)條約 53, 272 조기진 趙基晉 182 13, 323, 326, 301 조난선원구조협정 遭難船員救助協定 조영하 趙寧夏 144, 268, 305, 309 조오조약 朝墺條約 조대비 趙大妃 184, 185, 229 14 조용호 趙龍鎬 조독조약 朝獨條約 284 13 조두순 趙斗淳 184 조의 朝議 279 조・러(수호통상)조약 朝・露(修好通商) 조이조약 朝伊條約 14 조인희 趙寅熙 條約 14, 76 $258 \sim 260$ 조미수호(통상)조규(약) 朝美修好(通商) 〈조일무역규칙(조일통상장정)〉 〈朝日 條規(約) 258, 283, 284, 323, 325 貿易規則(朝日通商章程)〉 245, 324 조미조약체결 朝美條約締結 283, 284, 조일수호조규부록 朝日修好條規附錄 262 조백・조정조약 朝白・朝丁條約 조일수호조규(약) 朝日修好條規(約) 9. 14 조병식 趙秉式 313 79, 219, 245, 246, 253, 254, 261, 322 조병호 趙秉鎬 294 조종의 유법 祖宗의 遺法 조불조약 朝佛條約 14,191 조준영 趙準永 297, 309 조사시찰단 朝士視察團 12, 285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朝淸(商民)水陸 조선개국년기 朝鮮開國年紀 貿易章程 325 조선국왕폐립선언 朝鮮國王廢立宣言 189 존왕양이 尊王攘夷 220 조선국의정제항일본인민무역규칙 朝鮮國 종과 宗科 157 議定諸港日本人民貿易規則 265 종번관계 宗藩關係 272, 280 《조선기독교급외교사》《朝鮮基督敎及外 종부시 宗簿寺 157 交史》 187 종주국 宗主國 18 조선내지 여행의 자유 朝鮮內地 旅行의 종척집사 宗戚執事 150 종친부 宗親府 自由 259 157, 164 조선년공사 朝鮮年貢使 286 종친 선파인 宗親 璿派人 151 조선동지사 朝鮮冬至使 283 죠지 로빈슨 George Robinson 44 조선력 朝鮮曆 249 죤 F. 데이비스 John F. Davis 44

주교사 舟橋司 169, 170 주복 周馥 289, 294 주세붕 周世鵬 160 주전론 主戰論 58 〈주지조선외교의〉 〈主持朝鮮外交議〉 279, 284, 288, 294 주청사 奏請使 19, 108, 268, 269 주화론 主和論 7 준천사 濬川司 169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 〈中國朝鮮 商民水陸貿易章程〉 302 〈중로소문답가〉〈中老少問答歌〉 148 중상주의 重商主義 52.72 《중서견문록》《中西見聞錄》 102 중영 무역 中英 貿易 《중외신문》 《中外新聞》 205 중화사상 中華思想 29, 39 중화제국 中華帝國 71 중희당 重熙堂 279 《지구전요》 《地毬典要》 3 지기일원론 至氣一元論 136 지방무역(업자) 地方貿易(業者) 40. 43 《지봉유설》 《芝峯類說》 308 지상천국사상 地上天國思想 138, 139 지켈 Giquel, Prosper Marie 272 248 진문 眞文 〈진흥왕순수비〉 〈眞興王巡狩碑〉 93

[ㅊ]

차이나호 China號 308 찰주소 札駐所 200 창덕궁 昌德宮 164 책봉사 册封使 19 챨스 엘리어트 Charles Elliot 44 척사(화)론 斥邪(和)論 6, 8 〈척사기적비〉 〈斥邪紀績碑〉 187 척사운동 斥邪運動 285,287 척왜정책 斥倭政策 209, 210

척화비 斥和碑 7, 204, 217, 322 천계령 遷界令 32 천도관 天道觀 135 《천도교창건사》《天道教創建史》 137 천도학 天道學 133 〈천비초약〉 〈川鼻草約〉 49 천일합일론 天一合一論 136 천주교 天主敎 4, 29, 60, 66, 77, 110, 133, 147, 181, 184~187, 191, 213 천주교박해 天主教迫害 194 천주교전교 天主教傳教 315 천주교조선교구 天主教朝鮮教區 77 천진교안 天津敎案 194 천진조약 天津條約 1,2,58,59,69,89, 123, 321 천진회담 天津會談 277 천하장안 天下長安 158 천황의 친정 天皇의 親政 26 158 천희연 千喜然 철도부설권 鐵道敷設權 221 철선 鐵船 172 철종조위사 哲宗弔慰使 205 청국 중심의 국제질서 淸國 中心의 國 際秩序 246 청불전쟁 淸佛戰爭 14 〈청시절략〉 〈請示節略〉 282 청일(수호)조규(약) 淸日(修好)條規(約) 209, 245, 246 청전 淸錢 163 청총리교섭통상사의 淸總理交涉通商事 宜 315 초량 왜관 草梁 倭館 204, 206 초상국 招商局 296 《초정소고》《楚亭小稿》 초지진 草芝鎭 199, 200, 235, 236 총리아문 總理衙門 258, 268, 269, 272, 273, 277, 279, 280, 284, 291 최봉주 崔鳳周 176 최수학 崔壽學 179 최시형 崔時亨 134, 137

최옥 崔鋈 128 최익현 崔益鉉 9, 210, 228, 229, 241, 242 최제우 崔濟愚 4, 122, 124~136, 138, 139, 148 최진립 崔震立 128 최한기 崔漢綺 최형 崔炯 186 최혜국대우 最惠國待遇 51, 53, 65, 66, 69, 76 최혜국조관(항) 最惠國條款(項) 307, 320, 321, 323, 325 춘추제향 春秋祭享 160 치외법권 治外法權 12, 13, 76, 305, 307 친선사절단 親善使節團 205 칠원민란 柒原民亂 174, 175

[7]

카나가와조약 神奈川條約 64 카시니 Cassini 카트카트 Cathcart 38 코미사 Commissar 75 콘도마스케 近藤眞鋤 84, 276 콘윌리스호 Cornwallis號 50 콜럼버스 Christopher Columbus 27 콜로라도호 Colorado號 198 쿠로다 기요타카 黑田淸隆 236, 254, 클레오파트르호 Cléopatre號 77 킴벌리 L. A. Kimberly 199, 201

[E]

타운센드 해리스 Townsend Harris 68 타이콘데로가호 Ticonderoga號 275 탁정식 卓挺埴 85, 278, 284, 302 태서학문 泰西學問 273 태평천국의 난 太平天國의 亂 55, 57 토요토미 히데요시 豊臣秀吉 208 토쿠가와 나리아키 德川齊昭 64 토쿠가와막부 徳川幕府 21, 22, 33, 60, 204, 205, 220 토쿠가와 시대 徳川 時代 22, 66, 68 톨더실래스 조약 Tordesillas 條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統理交涉通商事 務衙門 331 통리군국사무아문 統理軍國事務衙門 331, 332 통리기무아문 統理機務衙門 10, 258, 282, 284, 330~332 통상개항장 通商開港場 통상권 通商權 통상무역 通商貿易 90 통상장정 通商章程 80, 254, 258, 260 통신사 通信使 21, 204

[표]

파리외방전교회원 **과**리外邦傳教會員 77 파브로프 A. Pavlov 317 파크스 H. Parkes 80~82, 303, 306, 307 판적봉환 版籍奉還 225 팔도사도 八道四都 185 페리 M. C. Perry 64, 90, 203, 321 포경선 捕鯨船 62,63 포교의 자유 布敎의 自由 181 포군 砲軍 171 포함외교 砲艦外交 2, 51, 80, 195, 197, 321 풍천민란 豊川民亂 173, 174 프랑스극동함대 France極東艦隊 74 프랑스 선교사 France 宣敎師 77, 78 프랑스(의) 조선원정 France(의) 朝鮮遠 188, 194 征 프랑스 함대의 조선원정계획 France 艦 隊의 朝鮮遠征計劃 189

프로비덴스 Providence號 4,303 프리모개호 Primauguet號 190 피셔 Fisher, C.L. 283, 284

[ㅎ]

하계청 河桂淸 59 하나부사 요시다다 花房義質 209. 297, 300 하여장 何如璋 11,85,276~279,282, 284, 294, 330 하정일 河靖一 158 한강봉쇄령 漢江封鎖令 190, 191 한경원 韓敬源 85, 273 하계원 韓啓源 228, 229 한・덴마크 수호통상조약 韓・Denmark 修好通商條約 317 한・독 수호(통상)조약 韓・獨 修好(通 306, 309, 310 商)條約 한・러 (수호)통상조약 韓・露 (修好)通 商條約 80.312.313 한러육로통상장정 韓露陸路通商章程 313 한・미 (수호통상)조약 韓・美 (修好通 79, 82, 305, 307, 313 商)條約 한반도침략 韓半島侵略 181 한・백 수호통상조약 韓・白 修好通商 條約 316, 한・불 (수호통상)조약 韓・佛 (修好通 商)條約 80, 315, 316 〈한・영・불 3국동맹안〉 〈韓・英・佛 三國同盟案〉 182 한・영 (수호통상)조약 韓・英 (修好通 商)條約 82, 305~310, 313, 315 む・오수호통상조약 韓・墺修好通商條 約 316 한 · 이수호통상조약 韓・伊修好通商條 約 316 항세 港稅 260 해관업무 海關業務 57 《해국도지》 《海國圖志》 3, 98, 101 ~

103, 106 해금(정책) 海禁(政策) 31, 285, 286 해도작성권 海圖作成權 82 해랑적 海浪賊 202, 203 〈해문방수타국선신물과〉 〈海門防守他 國船愼勿過〉 203 해상무역 海上貿易 28 향신 鄕紬 42, 45, 71 향신료무역 香辛料貿易 27 향전 鄕戰 174 향현사 鄕賢祠 160, 161 허계 許棨 169 허내제 許乃濟 허류 환곡 虛留 還穀 166 헤르타호 Hertha號 308 헨리 포틴저 Sir Henry Pottinger 49 현석운 玄昔運 230, 233, 236 협정관세 協定關稅 321, 326 호조 護照 188, 325 호조별비곡 戶曹別備穀 166 호포법(제) 戶布法(制) 167, 168, 212 혹세무민 惑世誣民 134 홀콤 Holcombe, Chester 290, 291 홍경래 洪景來 148 홍경래란 洪景來亂 91 홍대용 洪大容 147 홍봉주 洪鳳周 $74, 181 \sim 183, 185, 186$ 홍수전 洪秀全 89, 98, 123 홍순목 洪淳穆 228, 229, 234, 239 홍영식 洪英植 120 화공작전 火攻作戰 195 화란 동인도회사 和蘭 東印度會社 33 화란상관 和蘭商館 64,203 화륜선 火輪船 118, 255 화사납 花沙納 57.58 화승총 火繩銃 200 화양서원 華陽書院 161 화이관 華夷觀 6 화이론적 대미인식 華夷論的 對美認識

202, 204 화이사상 華夷思想 25,71 화이질서 華夷秩序 17 화태우선해결론 樺太優先解決論 227 회동관 會同館 19 화평론 和平論 49.58 화폐교환규정 貨幣交換規定 환곡포흠 還穀逋欠 162 환정 還政 166, 212 황구첨정 黃口簽丁 167 황사 皇使 226 황상기 黃上基 174,175 황석두 黃錫斗 186 황작자 黃爵滋 42

220

황준헌 黃遵憲 10,85,276,278,279, 311, 330 황포조약 黃埔條約 1,53,77 회사품 回賜品 19,22 회함 回函 269 후천개벽사상 後天開闢思想 138,148 흥도비류 兇徒匪類 184 흑고자 黑鼓子 202 흠차대신 欽差大臣 42, 45, 50, 53, 59 흥인문 興仁門 171 희망봉 希望峰 27,34 히로츠 히로유키 廣津弘信 226, 236

집 필 자

개 요송병기
I. 구미세력의 침투
1. 19세기 중반기의 동아시아 정세 ······ 김기혁 2. 구미 열강의 통상요구 ····· 우철구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1. 개화사상의 형성신용하 2. 동학의 창도와 동학사상신용하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1. 홍선대원군의 집권성대경
2. 대원군의 내정 개혁성대경
3. 대원군의 대외정책 김원모
4. 대원군 정치의 성격과 의의 성대경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1.	강화도조약과 개항	최덕수
2.	개항 초기의 조청관계	송병기
3.	조미조약의 체결	송병기
4.	유럽 각국의 조약체결	우철구
5.	개항의 역사적 의의	최덕수

한 국 사

37

서세 동점과 문호 개방

2000년 12월 20일 인쇄 2000년 12월 23일 발행

발 행 국 사 편 찬 위 원 회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전화 02-500-8282

인 쇄 탐 구 당 문 화 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158

전화 02-3785-2213

판매처 프레스센터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전화 02-734-6818